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제2026-13호 2026년 2월 20일(금)	시 여수시 보	시 정 지 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6-4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26-50호	2027년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참여업체 모집공고
○ 여수시 고시	제2026-51호	여수 죽림1지구 A6블록 주택건설사업 감리자(건축) 모집공고
○ 여수시 고시	제2026-52호	여수 죽림1지구 A6블록 주택건설사업 감리자(소방) 모집공고
○ 여수시 고시	제2026-53호	여수 죽림1지구 A6블록 주택건설사업 감리자(전기) 모집공고
○ 여수시 고시	제2026-5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소라면 봉두~상봉 시도25호선(3구간) 개설」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6-504호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상암동 읍동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여수시 공고	제2026-530호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551호	2026년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55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56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567호	보상계획 열람(변경) 공고(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공사)
○ 여수시 공고	제2026-582호	여수시 자원순환가게 자원순환활동가(기간제) 모집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584호	2026년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숲가꾸기패트롤)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2차)
○ 여수시 공고	제2026-585호	보상계획 열람공고(주삼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중부민원출장소

○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 고시	제2026-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26-51. 52, 53호 사업개요 총사업비 예정공정표 첨부 파일 게재

회람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시 고시 제2026 - 4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신고)하고 고시합니다.

승인 (신고) 번호	실시계획 승인 (신고)수리일	시 행 자		사업기간	점용 · 사용 장 소	사업내용
		주 소	성 명			
2026-07 ('26. 2. 10.)	'26. 2. 13.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귀포시장 (해양수산과)	'26.2.19. ~ '26. 2. 26. (해당기간 중 2일)	여수시 화정면 월호리 449-7번지 지선 공유수면	공유수면 내 잘피 채취

2026. 2. 13.

여 수 시 장

공고번호- 여수시 고시 제2026-50호

2027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참여업체 모집공고

『2027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에 참여할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설치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2. 20.

여수시·녹색에너지연구원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7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 목　　적: 2027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참여업체 컨소시엄 선정

❍ 사업내용: 주택, 상업·공공 건물 등이 혼재된 특정지역 및 마을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설비를 설치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7. 12. 31.

* 실 사업기간은 당해연도 국비 집행을 감안하여 선정 후, 계약시 별도로 정함.

❍ 모집대상

구 분	대상지역	에너지원	비 고
여수시	여수시 관내 전 지역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 융·복합 모델대상	

* 컨소시엄 선정 후 사업대상 수요조사 진행

2. 신청자격

○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업체와 모니터링업체, 설계·감리업체 등으로 참여업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태양광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

○ 시공업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26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2026년 보급사업 참여기업이 우선 자격대상이며, 참여기업 미선정 업체는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적격여부 결정

* '26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기업 미 발표시 '25년 선정실적 대체

○ 모니터링업체: 한국에너지공단 인증을 받은 RTU 제조업체

○ 설계·감리업체: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 및 감리업(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공　　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2. 20.(금) ~ 3. 6.(금) 12:00까지

○ 공고장소: 여수시・녹색에너지연구원 홈페이지

○ 접수장소: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성과확산실(전남 목포시 삼향천로 177, 2층)

※ **접수 담당자**: 이승주 책임연구원 061)288-1061, 이금호 선임연구원 061)288-1062

○ 접수방법: 직접제출(우편, FAX, E-mail 접수 불가)

○ 제출서류

1. **제출공문,** 사업신청서 및 서약서 등 별첨자료 각 1부.
2. 컨소시엄 참여업체 별 서류평가 증빙자료 각 2부.(칼라원본 1부 포함)
3. 기술제안서(한글, MS-워드 등)10부 및 비계량평가 발표용 PPT 자료 10부(칼라원본 1부 포함)
4. 발표자료 저장용 USB 2개

4. 평가절차

○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붙임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참조)

- 최고점수를 획득한 컨소시엄으로 선정(최저 합격점수 : 70점)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계량점수”가 높은 컨소시엄으로 선정
- 최고 점수를 득한 컨소시엄이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 컨소시엄 선정

○ 평가일시/장소 : 2026. 3. 13.(금) 10:00 / 녹색에너지연구원 세미나실

*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하며 상세일정은 추후 통지 예정

5. 최종 선정결과 통보

○ 선정결과 통보: 2026. 3월 중 *공문 통보 예정

○ 선정결과 공고: 여수시・녹색에너지연구원 홈페이지(고시/공고)

6. 추진절차

공모계획 수립 (2월)	➡	**참여업체 모집공고** (2~3월)	➡	**참여업체 심사 및 선정** (3월)	➡	
여수시·녹색에너지연구원		여수시·녹색에너지연구원		녹색에너지연구원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3 ~ 6월)	➡	**공개평가** (7월)	➡	**심층평가** (8월)	➡	
녹에연(컨소시엄) ⇒ 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평가위원회)		한국에너지공단		
선정결과 가내시 및 최종확정 (9월 / 12월)	➡	**2027년 예산반영** (12월)	➡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27. 1. ~ 12월)		
한국에너지공단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녹에연(컨소시엄)		

7. 기타(특기) 사항

○ 2027년도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 내용에 따름(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본 공고 전 참여 참여업체 컨소시엄 선정)

○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특히 여수시와 녹색에너지연구원 여건과 사정에 의하여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본 컨소시엄 참여업체 선정은 2027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것으로 미 선정시 컨소시엄은 자동으로 파기됨.

○ 참여업체는 태양광 관련업체가 주관기관으로 하여 해당 컨소시엄을 구성·신청하여야 함

○ 참여업체 선정은 컨소시엄 1개 접수 시에도 평가 진행함(최저합격점수 : 70점)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제출을 위한 일체의 비용은 컨소시엄 업체가 부담

○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컨소시엄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으며, 차순위가 컨소시엄 대상자로 승계함

○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원본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서는 추가제출, 수정, 변경, 보완이 불가함

○ 선정된 컨소시엄 참여업체에 대해선 필요시 기 제출서류 등의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 또는 관련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태양광 시공업체는 사업 예정지역 내 관할 한전에 계통연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붙임 1. 융복합 지원사업 참여업체 평가지표 1부
2. 융복합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여수시 컨소시엄 참여업체 선정 평가지표 및 세부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계량(50)	시공능력* (47)	보급 참여기업	-	15	'26년('25년) 참여기업의 경우 만점(15점) 부여
		비 참여기업	기술인력	5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근무경력
			시공실적	10	최근 3년간 신재생 설비 설치용량 및 설치개소
		신용도		5	컨소시엄 참여업체 신용등급
		컨소시엄 소재지		8	여수 소재지 지역업체 참여 여부
		융복합지원사업 참여도		7	컨소시엄 시공업체의 융복합지원사업 참여실적
		연도별 자체 사후관리 수행		5	'23년~'25년 에공단 융복합 사후관리 수행 실적
		A/S 전담업체 지정여부		7	A/S 전담업체 지정여부(한국에너지공단)
	모니터링능력 (3)	REMS 연동률(%)		3	모니터링업체의 통합모니터링(REMS) 연동률(%)
비계량(50)	인프라 (10)	사업 필요성		6	지역특성 및 융복합지원사업 필요성
		민원, 인·허가사항		4	민원 및 관련법규 저촉 여부, 처리방안의 적정성
	참여기관 (기업) (10)	참여기관(기업) 적정성		5	전체 참여기관 구성의 적정성
		참여기관(기업)별 역할, 계획		5	전체 참여기관별 사업추진 역할, 사업추진계획
	사업추진 (16)	에너지원 및 용량 구성		3	지역특성을 감안한 에너지원 및 용량 구성 적정성
		에너지원별 시공계획		3	에너지원별 시공계획의 적정성
		사업대상지 밀집도 및 컨소시엄 차별성		6	지역특성을 감안한 사업대상지 밀집도 및 컨소시엄만의 차별화된 사업추진 계획
		당해년도 사업 완료 추진계획		4	당해연도 사업 완료를 위한 추진계획의 적정성
	사후관리 및 기대효과 (14)	사후관리(모니터링) 계획		8	향후 점검계획, 점검방법 및 주기, A/S 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의 구체성
		수행중 안전관리		4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
		사업완료 시 기대효과		2	에너지 생산량 및 화석에너지 대체량(toe/년), 지자체활성화 관련 기대효과 등
합 계				100	

* 본 평가는 2027년 한국에너지공단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컨소시엄 모집공고 이며, 공모사업에 탈락시 컨소시엄은 그 효력이 소멸 됨.

* 공모 탈락시 대상 지자체, (재)녹색에너지연구원은 사업대상지의 사전 전수조사등 사업공모 준비기간에 발생한 일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

❑ 컨소시엄(전체) 평가 세부기준

○ 본 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6년('25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기준' 준용

* A기업이 태양광, 태양열 등 2개 이상의 에너지원에 신청한 경우 각각 에너지원별로 점수 산정

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 여부(15점)

구분	참여기업 선정	비 고
배점	15	

* '26년 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 발표 시 '26년 선정 증빙자료 제출. 제출기한 내 미 발표 시 '25년 선정 증빙자료 제출

② 기술인력(총점 5점, 비 참여기업)

○ 기술인력 보유현황(3점) *설계·감리, 모니터링업체는 평가 제외

구분	국가 기술자격 보유인력	배 점		
		태양광	태양열	기 타
3점 한도	가. 산업기사 이상(또는 중급기술자) 이상			
	① 7인 이상	3.0	3.0	3.0
	② 6인	1.7	1.8	2.0
	③ 5인	1.3	1.7	1.8
	④ 4인	1.0	1.5	1.7
	⑤ 3인	0.7	1.0	1.5
	⑥ 2인	0.5	0.7	1.0
	⑦ 1인 이하	0	0	0
	나. 기능사(또는 초급기술자) 이상			
	① 7인 이상	1.2	1.2	1.2
	② 6인	1.0	1.0	1.0
	③ 5인	0.8	1.0	1.0
	④ 4인	0.7	0.8	1.0
	⑤ 3인	0.5	0.7	0.8
	⑥ 2인	0.3	0.5	0.7
	⑦ 1인 이하	0	0	0

※ 산업기사 이상 및 기능사 기술인력 보유현황 배점의 합계는 최대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술인력 근무경력(2점) * 설계·감리, 모니터링업체는 평가 제외

구분	태 양 광	기 타	배 점
2점 한도	가. 산업기사(또는 중급기술자) 이상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가. 산업기사이상(또는 중급기술자)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① 800개월 이상	① 700개월 이상	2.0
	② 600개월 이상 ~ 800개월 미만	② 500개월 이상 ~ 700개월 미만	1.7
	③ 400개월 이상 ~ 600개월 미만	③ 300개월 이상 ~ 500개월 미만	1.3
	④ 200개월 이상 ~ 400개월 미만	④ 100개월 이상 ~ 300개월 미만	1.0
	④ 200개월 미만	④ 100개월 미만	0.7
	나. 기능사(또는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나. 기능사(또는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① 700개월 이상	① 600개월 이상	0.8
	② 500개월 이상 ~ 700개월 미만	② 400개월 이상 ~ 600개월 미만	0.7
	③ 200개월 이상 ~ 500개월 미만	③ 200개월 이상 ~ 400개월 미만	0.5
	④ 200개월 미만	③ 200개월 미만	0.3

※ 산업기사 및 기능사 근무경력 배점의 합계는 최대 2점을 초과할 수 없음

<기술인력 배점관련 안내사항>

1. 기술인력 배점은 컨소시엄 업체 내의 기술인력 보유현황과 기술인력의 근무경력을 합계하여 평균으로 산정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 근무경력은 총 5점 만점으로 함
3.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예) A업체가 태양광, 태양열, 지열분야 겸업인 경우, A업체의 소속 B씨는 한 분야(신청분야)의 기술인력으로만 인정
4. 에너지원별 기술인력이 해당분야의 (산업)기사 2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한 후 탈락 조치
5. 참여업체 모집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하여 인정
6.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해당분야의 기술자 중에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는 기사로 인정하고, 초급기술자는 기능사로 인정
7. 동일인이 복수자격을 가질 경우는 상위자격만 인정
8. <u>기술인력보유 현황은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국가기술자격증(또는 경력수첩) 사본 1부,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 사본 1부</u>를 제출하여야 하며, 육안상 확인이 불가하거나 미제출시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중 1개 보험 가입서류(화면인쇄 불인정)

* 경력수첩 제출시는 해당분야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확인 불가시는 불인정

9. 기술인력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에 대한 인정은 해당 업체에서 제출한 4대 사회보험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함

10. 기술인력의 근무경력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근무경력의 월단위 합계이며, 기술인력별 1개월(30일)이 되지 않은 잔여일수는 합산하지 않음

예) 홍길동(20개월 20일), 홍길순(3개월 10일)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합계는 23개월(홍길동 20개월 + 홍길순 3개월)

11. 기술인력의 근무경력은 해당 신청업체에서 근무한 근무경력을 모두 합한 근무경력을 인정하며, 다른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예) 홍길동이 한국업체㈜에 입사하여 24개월 근무후 퇴사를 한 다음 다른 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국업체㈜에 재입사하여 12개월 근무했을 경우 홍길동의 근무경력은 36개월이 됨

12. 투입인력 기술인력은 전기, 토목, 기계 신재생에너지 관련 자격증 및 경력만 인정

13. 재직중에 취득한 자격증 기술인력 근무경력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③ 시공실적(총점 10점, 비참여기업) * 설계·감리, 모니터링업체는 평가 제외

○ 설치용량(6점)

태양광(kW)	태양열(㎡)	지열(kW)	수열(kW)	기타(kW, ㎡)	배 점
3,000이상	6,000이상	6,000이상	2,000이상	100이상	6
2,000~3,000미만	4,000~6,000미만	4,000~6,000미만	1,500~2,000미만	50~100미만	5
1,000~2,000미만	2,000~4,000미만	2,000~4,000미만	1,000~1,500미만	20~50미만	4
500~1,000미만	1,000~2,000미만	1,000~2,000미만	500~1,000미만	10~20미만	3
500미만	1,000미만	1,000미만	100~500미만	10미만	0

○ 설치개소(4점)

태양광	태양열	지 열	수 열	기 타	배 점
300 이상	200이상	50이상	4이상	100이상	4
100~300미만	100~200미만	30~50미만	3	50~100미만	3
50~100미만	50~100미만	10~30미만	2	20~50미만	2
50 미만	50미만	10미만	1	20미만	0

<시공실적 배점관련 안내사항>

1. 시공실적 배점은 각 컨소시엄 내 배점을 합계하여 평균으로 산정
2.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시공실적증명서나 시공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공고일까지 발행한 서류만 인정함)
   * 발주자 또는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센터 사업의 경우 설치확인서로 제출 가능(설치확인서의 경우 리스트로 작성 첨부 가능)
3. 시공실적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25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업(태양광 대여사업 실적은 제외), 발전차액지원사업, 공공기관 자체사업, 민간자체사업을 인정하며 물품납품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4. 시공실적증명서 또는 시공실적확인서는 발주자 또는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사업분야, 시공용량, 시공개소, 시공금액, 발주처 확인 담당자, 전화번호 표기). 단,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불인정
   -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설치의무화사업에 실적이 있는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발급한 설치확인서로 증빙자료 제출 가능
     * 설치확인서의 개소가 많을 경우 리스트로 작성 첨부 가능하며, 발주자 성명, 주소 및 설치확인서 발급날짜, 관리번호 기입을 필수로 함
   - 공고일 이전에 설치확인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시공실적 확인서를 통해 인정 가능(발주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재)
5. 민간자체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현장 확인이 가능한 사진 등의 입증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필요시 현장 확인)
6.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공동도급비율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비율대로 실적을 인정
7.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시공실적증명서 기준)
8. 태양광 설비가 2kW/개소 미만인 경우 설치용량 및 설치개소는 아래와 같이 따름

* 시공실적 설치개소는 3kW당 1개소로 인정, 설치용량은 30%만 실적 인정

* 태양광 0.3kW 설비 12개소 시공한 경우, 실적개소 1개소(0.3kW x 12개소/3kW)인정 및 설치용량 1kW(0.3kW x 12개소 x 0.3)적용(소수점아래 버림)

④ 신용도(5점) ※ 컨소시엄 참여업체별 점수의 평균으로 함

구분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등급기준	배 점
5점 한도	업체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5
	업체신용평가등급 BBB+, BBB0, BBB-,	4
	업체신용평가등급 BB+, BB0, BB-	3
	업체신용평가등급 B+, B0, B-	2
	업체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미제출	0

<업체신용도 배점관련 안내사항>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
   -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기재된 등급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참여신청서 접수일 이후인 것에 한함
2. 하기의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아닌 경우 불인정(0점처리)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 가능한 신용정보업자(금융감독원 공통업무자료 게재(www.fss.or.kr)
   - NICE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⑤ 컨소시엄 소재지(8점) * 컨소시엄 전체 참여기업 평가함

구분	참여업체 중 3개 이상이 여수시에 본점을 두고 있음	참여업체 중 2개 이상이 여수시에 본점을 두고 있음	참여업체 모두가 전남에 본점을 두고 있음	참여업체 일부가 전남에 본점을 두고 있음
배점	8	6	4	1

※ 모집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점 소재지를 뜻함

*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제출(공고일이전 기준)

⑥ 융복합지원사업 참여도(7점) * 설계·감리, 모니터링업체는 평가 제외

구 분	5회 참여	3회 이상 참여	1회 이상 참여	미참여
태 양 광	4	3	2	0
기타발전원	3	2	1	0

※ 적용기간: 최근 5년(2022년 ~ 2026년)

※ 융복합지원사업 참여도 합계의 한도는 최대 7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증빙서류 : 융복합지원사업 협약서

⑦ 연도별 자체 사후관리 수행(5점) * 설계·감리, 모니터링업체는 평가 제외

배점	0	5
A/S 관리대장 (접수·처리 등)	미 제출	제출

※ 에공단 센터 의무사후관리 수행과는 별도로 별 자체 관리현황 자료 평가

※ 최근 3개년('23~'25년) 융복합 사업 대상지 A/S 접수·이행 관리현황 실적(신규는 평균점수 적용)

※ 별도 양식은 없으며, 컨소시엄 자체 관리현황 자료 제출(全 대상지 설치 여부 및 A/S 현황 등)

※ 신청 시공업체 전체가 제출되어야 5점 부여

⑧ A/S 전담업체 지정 여부(7점) * 설계·감리, 모니터링업체는 평가 제외

구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설비 A/S 전담업체(2개) 지정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설비 A/S 전담업체(1개) 지정	없음
배점	7	5	0

※ 2026년 지정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설비 A/S 전담업체 지정서 첨부

→ 공고일 기준 2026년 미 발표 시 2025년 지정서로 갈음함

⑨ 모니터링업체의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동률(3점)

구분	98.0% 이상	98.0% 미만~95.0%	95.0% 미만 ~ 90.0%	90.0% 미만
배점	3.0	2.5	2.0	1.5

※ 연동률은 REMS 홈페이지(https://rems.energy.or.kr – 게시판 – 연동률) 게시

※ 연동률은 '25. 1월부터 접수 전월까지 각 월말 기준 수치의 평균값 적용

※ REMS 연동률(%)은 최소 50개소 이상 연동 모니터링업체에 대해 산정

※ <u>신규업체는 제안서 제출 모니터링 인증업체의 평균점수 부여</u>

- 신규업체를 제외한 제안서 제출 인증업체의 평균점수를 구한 후 전체 평균점수가 2.9점일 경우 2.9점 부여, 2.8점일 경우 2.8점 부여

  * 신규업체 기준: 접수마감일 기준 연동 개소수 50개소 미만 또는 인증 1년 이하 업체

  * 평가를 위해 非보급사업 등을 REMS에 연결할 경우 향후 사업참여 제한 시공

❑ 비계량평가 배점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기준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합계		50				
비계량평가	인프라 (10)	사업 필요성	6	5	3	1
		민원, 인・허가사항	4	3	2	1
	참여기관 (기업) (10)	참여기관(기업) 적정성	5	4	3	2
		참여기관(기업)별 역할, 계획	5	4	3	2
	사업추진 (16)	에너지원 및 용량 구성	3	2	1	0
		에너지원별 시공계획	3	2	1	0
		사업대상지 밀집도 및 컨소시엄 차별성	6	5	4	3
		당해연도 사업 완료 추진계획	4	3	2	1
	사후관리 및 기대효과 (14)	사후관리(모니터링) 계획	8	6	4	2
		수행중 안전관리	4	3	2	1
		사업완료 시 기대효과	2	1	0	

□ 제출서류 작성 기준

1. 제출서류 구성 및 내용

1-1. 제출서류의 구성

가. <u>제출공문,</u> 사업신청서 및 서약서 등 별첨자료 각 1부. 나. 컨소시엄 참여업체별 서류평가 증빙자료 각 2부.(칼라 원본 포함) - 기업 신용평가등급, 소재지, 융복합지원사업 참여도 등 계량 평가 해당 항목 일체 * <u>`26년(`25년) 보급사업 비 참여기업의 경우 기술인력·시공실적 반드시 포함</u> 다. 기술제안서 및 발표 평가PPT(제출부수 각 10권, 칼라원본 1권 포함) 라. 발표자료 저장용 USB 2개

※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작성

1-2. 제안서 내용(제출부수 각 10부)

1장 인프라(사업 필요성 및 민원 인허가사항) 2장 참여기관(참여기관 적정성 및 기관별 역할, 계획) 3장 사업추진(에너지원 용량구성에너지원별 시공계획, 대상지 밀집도 및 컨소시엄 차별성, 당해연도 완료계획) 4장 사후관리 모니터링 계획 및 수행중 안전관리, 완료 시 기대효과 5장 기타 제안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제안

2. 제안서 형식

2-1 기술 제안서

가. 구성형식(활자크기 : 12포인트 이상)

장 : 제Ⅰ장, 제Ⅱ장, 제Ⅲ장 → (16포인트/휴먼명조/진하게) 절 : 1.1, 2.1, 3.1 → (15포인트/휴먼명조/진하게) 항목 : 1.1.1 → (14포인트/휴먼명조/진하게) 1) → (이하, 12포인트/휴먼명조) 가) ---------- (1) ---------- (가) ---------- ① ----------

나. 기술제안서의 본문내용은 50쪽 이내로 작성하여 책자로 제출하되, 쪽 번호 형식 (-1-, -2-), 대항목별로 간지(분홍색 색지)를 삽입하여 구별한다.

※ 목차 및 간지는 쪽에서 제외하고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2-2 비계량평가 발표자료(PPT) 작성방법

가. 목　　적 : 발표평가 시 심사위원이 그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함.

나. 작성방법 : 파워포인트(필수) 20매 이내

다. 작성내용 : 제안서 목차 내용

라. 시간분량 : 15분 이내

2-3 제안서의 인쇄/제본형식

가. 인쇄형식

1) 제안서 규격 : A4용지(210mm x 297mm), A3용지(297mm x 420mm)
2) 표 지 지 질 : 백색 레자크지(200g/㎡, 무광택, 코팅금지)
3) 본 문 지 질 : 백상지, 80g/㎡
4) 간 지 지 질 : 분홍색 색지(견출지 부착 안됨, 대항목만 적용)
5) 인 쇄 방 법 : 컴퓨터 조판 인쇄(국문)(기술제안서는 양면인쇄)
6) 제 본 방 법 : 무선철에 의한 제본(좌철)

나. 원본을 제외한 모든 제안서의 내용에는 칼라인쇄 및 칼라용지 삽입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 모든 제안서는 한글 및 MS-워드 등(기술제안서) 파워포인트(비계량평가)로 작성 가능하며, 부득이 외래어로 된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용어를 해설하고, 괄호 안에 원어를 기입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방법, 형식에 따라 누락 분야 없이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제시할 내용이 없는 것은 "미제안" 또는 "해당사항 없음"과 같이 기술하여야 함. 또한 세부 기술적 사항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번호를 달아 해당 페이지 하단에 약어표와 용어해설 및 추가설명을 기술한다.
※ 기술제안서 작성분량(50쪽)을 초과하는 분량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나. 제안서의 원본과 사본 내용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원본은 관리번호를 1/11로 기재하며, 사본은 2/11~11/11로 기재하여야 함.

다. 제안자현황 평가서의 원본은 인감 날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원본대조필"표시와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매쪽마다 원본대조필은 생략하되 책자의 앞면에 원본대조필 및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 인감 날인이 필요한 부분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및 등록서류로 인정하지 아니함.

라.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마.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성능,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바.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사. 전문용어는 한글로 용어 해설을 하고, 사용언어에 있어서 '~을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 '~가 가능할 것이다' , '~라고 생각 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내용은 수치화, 계량화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아. 제안자는 제안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문에 대해 책임한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자.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차.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소유로 귀속한다.

카. 제안서의 내용에는 제안자의 내용만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상대 업체를 인식 또는 상대 업체와 비교하여서는 안 된다.

[붙임 2] 신청서식

여수시 2027년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참여업체 신청서

참여업체 (　　)	회 사 명		대 표	(인)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이메일	
참여업체 (　　)	회 사 명		대 표	(인)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이메일	
참여업체 (　　)	회 사 명		대 표	(인)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이메일	
참여업체 (　　)	회 사 명		대 표	(인)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이메일	
참여업체 (　　)	회 사 명		대 표	(인)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이메일	

상기 회사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과 관련 컨소시엄 참여업체로 선정되고자 신청하며, 선정기관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 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3. 사업신청과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참여업체 대표　　(인)
참여업체 대표　　(인)
참여업체 대표　　(인)
참여업체 대표　　(인)
참여업체 대표　　(인)

별첨 1. 서약서 및 확인서 각 1부.
2. 평가지표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분야별 면허증 사본 각 1부.

(재)녹색에너지연구원장 귀하

※ 주관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반드시 '(대표)주관기관'과 '주관기관'을 구분하여 작성
※ 주관기관이 1개인 경우은 '(대표)주관기관'에만 작성

[별 첨]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2027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구성 참여업체 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원이 결정한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재)녹색에너지연구원장 귀하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2027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구성 참여업체 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녹색에너지연구원장 귀하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2027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참여기업' 모집 신청 등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재)녹색에너지연구원장 귀하

※ 지참서류 : 인감증명서 1부.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2027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구성 참여기업』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재)녹색에너지연구원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연 락 처	
근무부서			

상기인을 2027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구성 참여기업 발표자로 지정함을 확인합니다.

붙임 : 발표자 재직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참여기업(주관기업)　대표자 :　　(인)

[컨소시엄 기업 항목별 계량평가 자체점수]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컨소시엄 자체점수	비 고
합 계				

※ 각 항목별 자체 평가점수 기입 요망

□ 평가 항목 증빙자료

※ 작성시 주의사항

- ○ 사업공고문의 "평가항목"을 반드시 확인 후, 정확히 작성할 것
- ○ 1개의 참여기관이 2개 이상의 에너지원을 설치하는 경우, **에너지원별로 분리하여 각각 작성**할 것 (예. 태양광 증빙자료(1~3번), 태양열 증빙자료(1~3번))
- ○ 시공실적 증빙서류중 보급사업(주택지원/건물지원/융복합지원/지역지원/설치의무화) 증빙은 설치내용란에 신청자(소유자)명, 증빙서류1에 설치확인 신청번호를 기입할것
- ○ 상기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증빙자료 식별 불가시, 서류평가에 불이익이 작용할 수 있음

□ 주관기업명 : 예시)에너지시청

참여기관명	설치담당 에너지원	'26년 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 유무 (단, 설치예정인 에너지원에 대한 선정 유무임)
예시) 한국솔라	*태양광*	O 또는 X
예시) 메가태양열	*태양열*	O 또는 X

* '26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기업 미 발표시 '25년 선정실적 대체

예시) □ 한국솔라 증빙자료

1. 기술인력 보유현황

가. 총괄표 (근무경력 합계 : 산업기사이상 __명, ___월, 기능사 __명, ___월)

자격증	번호	성명	자격종목	자격증번호	근무경력(개월)
산업기사 이상	1				
	2				
	3				
	4				
	5				
	6				
	7				
	8				
	합계				
기능사	9				
	10				
	11				
	12				
	13				
	14				
	합계				

나. 증빙서류 (총괄표에 기재된 성명 순서대로 작성)

번호	성 명	자격증 사본(이미지파일)	경력증명 사본(이미지파일)
1		사본은 본인 및 자격내용 확인 가능한 사이즈로 조정 할것	사본은 본인 및 자격내용 확인 가능한 사이즈로 조정 할것
2		사본은 본인 및 자격내용 확인 가능한 사이즈로 조정 할것	사본은 본인 및 자격내용 확인 가능한 사이즈로 조정 할것

2. 시공실적

가. 총괄표

번호	설치내용	설치완료일	설치용량	설치개소
1	*예시)2023 행복시 융복합사업*	*2023.12.10.*	*90kW*	*30*
2	*예시)2023 대한시 지역지원사업*	*2023.11.30.*	*50kW*	*2*
3				
합계				

나. 증빙서류 (총괄표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

번호	설치내용	증빙서류1(이미지파일)	증빙서류2(이미지파일)
1			
2			

3 기업신용도

가. 신용도 등급 : _____

나. 증빙서류(이미지파일)

4. 융복합지원사업 참여 실적

가. 총괄표

구 분(사업명)	내용	비 고
OO년도 □□사업 (OO년도)	△△시○○구축	
OO년도 □□사업 (OO년도)	△△시○○구축	
OO년도 □□사업 (OO년도)	△△시○○구축	

나. 증빙서류

여수시 공고 제2026-51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 〔이하 "감리자지정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19.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2. 19. ~ 2026. 3. 2.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 여수 죽림1지구 A6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비오엠건설(주) 대표이사 이경민 (☎055)268-6611)

다. 시 공 자 : 덕진토건(주) 대표이사 정철채 (☎055)268-6100)

라. 설 계 자 : (주)나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오형종 (☎02)2202-4600)

마.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죽림1지구 A6블럭

○ 대지면적 : 29,198.4000㎡

○ 연 면 적 : 90,890.6985㎡

○ 규 모 : 공동주택(아파트) 9개동(지하2층, 지상20층) 및 부대 · 복리 · 근린생활시설

○ 세 대 수 : 공동주택(아파트) 626세대

○ 공사기간 : 2026. 06. 01. ~ 2029. 04. 30.(35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23. 03. 30.

바. 사 업 비

○ 총사업비 : 173,513,898천원

○ 대 지 비 : 42,718,477천원

○ 총공사비 : 96,229,000천원(일반관리비, 이윤, 발코니 확장 공사비 포함 / 부가가치세 미포함)

1) 건축감리 대상 공사비 : 85,763,361천원

2)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 : 10,465,639천원

※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공사의 비용임.

※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는 별도 첨부자료 참조

사. 감리대가 : 2,012,951,846원(건축공사비의 2.3471% 적용, 부가가치세 미포함)

※ 기초금액 : 1,952,563,291원(감리대가기준의 97%)

※ 소수점 이하(원단위 미만) 절사

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공사 예정 공정표 (건축)

[공사명] 여수 죽림1지구 A6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공사기간] 2026년 06월 01일 ~ 2029년 04월 30일 (35개월)
[공사규모] 아파트 9개동 / 626세대 / 지하 2층, 지상 20층
[공사 착공 예정일] 2026년 06월 01일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비 고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전체공정	(06월01일)																																(04월30일)			26년06월01일 ~ 29년04월30일 (35개월)
건축공사	(06월01일)																																(04월30일)			26년06월01일 ~ 29년04월30일 (35개월)
구조체공사									(02월01일)												(03월31일)															27년02월01일 ~ 28년03월31일 (14개월)
토목공사	(06월01일)										(05월31일)													(05월01일)									(04월30일)			26년06월01일 ~ 27년05월31일, 28년05월01일~29년04월30일 (24개월)
기계,설비공사								(01월01일)																									(04월30일)			27년01월01일 ~ 29년04월30일 (28개월)

1 페이지

※ 상기 배치계획은 실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 3. 3.(화) 09:00 ~ 2026. 3. 5.(목) 12: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방법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8.)

라.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자 지정신청서 미제출자는 실격 처리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은 '감리대가' 의 97±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6. 3. 5.(목) 14:00부터,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한 순위이며,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평점 8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개찰결과 상위 3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 우리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http://https://www.yeosu.go.kr/, 열린시정>여수소식>고시공고)에 결과가 게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절 받지 않음.

6. 사실 확인 서류 제출 기간(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 3. 6.(금) 09:00 ~ 2026. 3. 10.(화)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 공동주택허가팀(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다.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 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 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원본대조필 날인 필)**

※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기간내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 사실확인 서류 제출 후, 사실확인 서류를 PDF로 요청할 수 있음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3. 11.(수) 09:00 ~ 2026. 3. 13.(금)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 공동주택허가팀(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다.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항

1)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1) 감리자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상기 기간 내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절 받지 않음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따라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합니다.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다. 비상주감리원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2)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유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3) 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함.

※ 비상주감리원은 다른 공사용역에 비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가 가능하나, 당해 공사를 포함하여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면 실격 처리됨.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바. 지역가점 : 해당없음

8-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① 사업주체 “비오엠건설㈜”의 행정처분 이력

- 사업계획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계획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② 시공자 “덕진토건㈜”의 행정처분 이력

- 사업계획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계획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건설업체 정보조회 결과

나.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합산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없음

9.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류첨부) ⇒ 개찰 ⇒ 우선순위(예비1~3순위) 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세부평가 실시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통보)

나. 감리자 지정 방법

1)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제10조에 따릅니다.

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상기 2)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를 기한 내 1회에 한해 감리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 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6) 예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됩니다.

※ 감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7)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자 지정기준 제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10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하며,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음.

10. 재무상태 평가

가. 평 가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등급으로 평가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함.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평가대상 감리원은 명단 기입 /비평가 대상 감리원, 신규 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기입)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서식]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 신청서 제출시에는 세부평가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서(별첨5)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 [별지 제1호 서식]감리원 명단(비실명인 경우 직무분야 및 등급표기)과 배치계획이 상이한 경우 감리원 배치계획 평가시 부적합 처리(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오니 비평가대상 및 가점을 위한 추가 배치감리원의 경우 반드시 직무분야 및 등급을 표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1)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①~⑯까지 사실확인서류 일체를「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2024.10.8.)」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2) 본 공고 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 분야별 세부평가[별지 제2호 서식-1] 및 별첨2, 3, 4

3) 재무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4)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 유의사항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법인 건축사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으로만 인정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를 수행한 개월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 감리업무수행실적에 감리비 미기재 및 미확인된 사항은 감리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에 미리 확인하여 수행실적(연면적 및 감리업무 수행기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5) 행정제재 여부 증명 : 모집공고일을 제외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유의사항

- 감리자(회사) 행정제재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

건축사협회(지회포함) 및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특히 감리회사와 건축사사무소를 겸업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기간 동안 소속된 대표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의 행정제재 유무확인서 필요
- 최근 1년간 소속 대표건축사가 대표이사에서 해임 또는 사임한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이동한 경우 등에도 행정제재 등에 관해 사실조회하여 평가하오니 자기평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상이하게 당해 감리자 소속기간 동안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 허위기재로 보아 실격처리 함.

6) 설계용역 수행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당해 주택건설 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 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 해당업체에 한함.

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빙자료(건설신기술, 특허)

: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 및 본 공고상의 재무검토 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8) 감리원배치계획

: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5) 및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

9) 업무중첩도 관련

: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

10)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 및 감리원이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교체율 및 교체건수(계획공정 만료시점은 사업승인이 변경되어 계획공정이 변경된 경우라도 감리자 모집공고시 제출된 계획공정 만료시점을 말함)

11) 확인서 :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5호서식]

12)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총괄감리원 서명・날인)

: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13) 감리원 관련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학력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행정기관 및 인터넷 증명발급 가능)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교육이수확인서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14) 기타증빙자료

: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또는 감리전문회사등록증(건축사사무소만 등록된 경우 제외), 건축사사무소 등록증(감리전문회사만 등록된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

증명서(감리자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15) 분야별 세부평가서 : 분야별 세부평가서 및 별첨 제출

다. 유의사항

1)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사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 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3) 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건축,토목,기타설비), 비상주감리원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에 따른 평가항목 중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를 평가하므로 평가대상 감리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실격처리 함.

4)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경력·실적서류 허위 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5)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6)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실적과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및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로 평가하고, [별첨 2], [별첨 3], [별첨 4]는 평가의 원활을 위해 임의로 제출받는 것으로 감리자 지정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7)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시 감리업무수행실적, 행정제재여부, 감리자 등의 자격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회사)가 「감리자지정기준」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제1항 각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인 경우 해당 등록증 및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을 모두 제출 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을 포함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4조제1항의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4)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5)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통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입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상의 내용과 증빙자료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리자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우리 청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 후 즉시 폐기처분합니다.

라.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 · 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있고, 감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감리 응모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월수의 적정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하며, 다음 작성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배치 부적정으로 평가합니다.

1)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 공고 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법적 인·월수 및 투입 인·월수를 표시하고(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 및 배치율도 구분 표시), 참여감리원 전원(비평가대상감리원,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2) 비평가대상 감리원 배치기준 : 건축, 건축, 설비, 토목분야 순서로 해당 분야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며, 5번째부터는 구분 없이 배치 가능합니다.「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한 감리인 · 월수를 초과하여 배치하는 경우 비평가대상 감리원 전체 중 마지막 1명은 부분 배치 가능합니다.

(단, 신규감리원 및 비평가대상 비상주감리원은 배치순서에 관계없이 배치 가능함)

3)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및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체 기간 동안(신규·비상주감리원은 건축1인 이상 배치) 배치하여야 하고,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분야별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합니다.

4)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급의 일일임금을 1로 기준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사. 중복배치 여부조회 및 이의 신청접수 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타 기관(감리자지정권자)에서 시행(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 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포함]와 이의 신청에 따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중복배치 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지정기일 이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리자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 처리합니다.

아. 감리원 교육훈련일수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에 해당하는 교육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일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단,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며, 교육기간 만료시점이 공고 당일에 걸치는 경우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의 교육일수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자.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평가 관련

1)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공사종류와 근무형태, 직책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합니다.

2)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함), 최근 3년 이내의 기간 산정은 당해 공사의 착공일·감리수행일(착공일과 감리수행일자가 상이한 경우 착공일 우선 적용)을 기준으로 하며, 수주한 금액은 공사진척률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합니다.

3) 토목분야감리원의 경력 산정 시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 설계, 시공,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감독(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 소속 직원) 업무 및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4) 공무원 등의 경력 인정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공동주택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100%를,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건축건설공사, 토목건설공사 또는 기타설비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80%를 감리원의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차. 감리자소속 감리원 및 참여감리원(최근 1년간)중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를 포함한다)으로 현장 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이 이동되었거나, 감리원 경력확인서상에 감리원의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배치계획 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원) 교체 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합니다.

카.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일 내 감리계약을 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을 취소하며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및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계약당사자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파.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별지 제2호 서식]의 토목·건축·기계설비 분야의 공종에 해당여부, 최초 출원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와 최초출원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공종 해당 여부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하. 응모서류는 감리원배치계획 및「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그 이외에는 제출한 자기평가서에 의해 평가하고 세부평가는 개찰결과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거. 감리자 응모서류 심사, 감리자지정, 감리운영 및 계약 등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있거나 본 공고문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 기준 및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 해석에 따릅니다.

너. 비상주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포함)에 총괄감리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분야별감리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실격 처리 됩니다.

더.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 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러. 감리자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로 지정하고, 감리질서 문란행위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및 부실벌점 등 행정제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지정기준 제14조에 따라 조치 할 수 있습니다.

머. 응모서류 등록 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된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자지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며 부정행위로 통보 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선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버. 당해 감리자지정권자의 필요에 따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해당 지자체 등 타 기관으로 최근 1년간 타 시・군의 감리자지정 및 감리원중복배치 여부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사실조회(최근 1년간 교체여부 포함)하오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감리원 배치기간의 감리업무 중첩도는 모집공고일 이전에 협회에 신고한 사항을 포함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감리원 배치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첩도에 포함합니다.

어. 본 용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총괄, 다. 감리자, (8)적격여부 중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 사항에 해당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르며, 공고내용, 평가표 등이 예전 기준, 자료이거나 현행과 맞지 않는 사항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 최신기준을 적용하며, 현행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우리 시 홈페이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입찰정보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 나라장터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061-659-4095)로 문의바랍니다.

첨부 1.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2.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예정공정표 각 1부. 끝.

접수번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지정신청

(사업명 : 여수죽림1지구 A6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6. . .

[건설기술용역업자(감리회사)명]

[별지 제1호서식]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별지 제1호서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앞 쪽)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층, 동, 세대	㎡		

설 계 자	성 명		상 호	
	주 소			

2. 감리자(감리회사)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개설신고번호	

주 소		용역참여 지 분 율	%	전화번호	
			%		

3. 감리원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총 괄						
분야별						
분야별						
분야별						
비상주						
신규(1)						
신규(2)						
신규(3)						
신규(4)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에 따라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유의사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제3항제9호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을 배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3순위업체 해당)

210㎜×297㎜[백상지(80g/㎡)]

사실확인 서류	감리자(회사)	①재무상태 건실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증명서
		③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④설계용역 수행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⑥감리원배치계획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감리원 추가 배치시 포함)
		⑦업무중첩도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
		⑧교체빈도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⑨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⑪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함)
	감리원	⑫자격증증명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⑬학력증명서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⑭경력증명서	감리원(건축사보, 건설기술자 포함)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⑮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⑯교육이수 확인서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유의사항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상기 구비서류중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별지 제2호서식]

자 기 평 가 서

구분		평 가 항 목		점수 기준	평점 신청자	평점 지정권자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감리자 (감리 회사)		재무상태 건 실 도	신용평가등급	5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		12			예) 100(억원)
		행정제재		9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	2			예) 특허 0건
			기술개발투자실적	2.5			예) 00(%)
			교육훈련	0.5			예) 70시간교육 0명, 35시간교육 0명
		신규감리원배치		2			예) 건축 0명
		교체빈도		7			예) 00(%)
		가점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1)			예) 건축 0명외 0명, 총괄감리원 특급건설기술자
			지역가점	(1)			예) 00도(道), 00개월
			설계용역수행가점	(1)			예) 현상 00(점)
		계		40			
		적격여부	감리원배치계획	적・부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업무중첩도	적・부			예) 중복배치 없음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적・부			예) 건축감리원 0명 추가 배치
감리원	총괄감리원	등급		6			예) 특급건설기술자
		경력 및 실적		18 (15)			예) 00(년)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면접(발표)		(3)			*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3			
		가점	자격가점	(0.2)			예) 건축사, 00기술사
		감점	행정제재	(-2)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27			
	분야별감리원	등급	건축	2			예) 특급건설기술자
			토목	2			예) 고급건설기술자
			기타설비	2			예) 고급건설기술자
		경력 및 실적	건축	7			예) 00(년)
			토목	7			예) 00(년)
			기타설비	7			
		자격가점	건축	(0.1)			예) 건축사, 00기술사
			토목	(0.1)			
			기타설비	(0.1)			
		감점	행정제재 건축	(-1)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행정제재 토목	(-1)			
			행정제재 기타설비	(-1)			
			교체빈도 건축	(-0.5)			예) 00(건)
			교체빈도 토목	(-0.5)			
			교체빈도 기타설비	(-0.5)			
		소 계		27			
	비상주감리원	등급		2			예) 고급건설기술자, 현장배치 0(개소)
		경력 및 실적		4			예) 00(년)
		감점	행정제재	(-1)			예) 업무정지 00(월)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6			
	계			60			
총 계				100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7210㎜×297㎜[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1]

분야별 세부평가(우선순위 상위 3개업체에 대하여만 제출)

※ 산출근거란에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자 평점란에만 기재합니다

가. 감리자(감리회사)

<table>
<tr><th rowspan="2">항 목</th><th rowspan="2">배점</th><th rowspan="2">적 용 기 준</th><th colspan="2">평가점수</th></tr>
<tr><th>신청자</th><th>지정권자</th></tr>
<tr><td>소 계</td><td>40</td><td>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td><td></td><td></td></tr>
<tr><td>(1) 재무상태 건 실 도</td><td>5</td><td>○ 평가 및 산정방법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함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배점기준
<table>
<tr><th>점수</th><th>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th><th>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th><th>기업 신용평가등급</th></tr>
<tr><td rowspan="5">5.0</td><td>AAA</td><td>-</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td></tr>
<tr><td>AA^+, AA^0, AA^-</td><td>A1</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td></tr>
<tr><td>A^+</td><td>$A2^+$</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td></tr>
<tr><td>A^0</td><td>$A2^0$</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td></tr>
<tr><td>A^-</td><td>$A2^-$</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td></tr>
<tr><td rowspan="3">4.2</td><td>BBB^+</td><td>$A3^+$</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td></tr>
<tr><td>BBB^0</td><td>$A3^0$</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td></tr>
<tr><td>BBB^-</td><td>$A3^-$</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td></tr>
<tr><td rowspan="3">3.4</td><td>BB^+, BB^0</td><td>B^+</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td></tr>
<tr><td>BB^-</td><td>B^0</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td></tr>
<tr><td>B^+, B^0, B^-</td><td>B^-</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td></tr>
<tr><td>2.6</td><td>CCC^+ 이하</td><td>C 이하</td><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td></tr>
</table></td><td></td><td></td></tr>
<tr><td>산출근거</td><td colspan="3"></td></tr>
</table>

⑵ 감리업무 수행실적	12	○ **평가 및 산정방법**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 ◦ 준공금액 또는 수행금액(원) = 감리금액(원) × (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소수점이하 절사> 예) 최근 3년간 실적계산 방법 ① 감리용역이 준공된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4년(2009.1.1. 공사착공, 2012.12.31. 준공)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2010.9.1.부터 2012.12.31.까지 금액계상 [2010.9.1.부터 2012.12.31.까지의 해당되는 감리비] * 준공실적(원) = 30억(원)×[{122일+(2년×365일)}÷(4년×365일)] = 1,750,684,931(원) ② 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5년(2011.1.1. 공사착공, 준공예정일 2015.12.31)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중인 경우에는 2011.1.1부터 2013.8.31.까지 금액계상 [2011.1.1.부터 2013.8.3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감리비] * 수행실적(원) = 30억(원) × [{(2년×365일)+243일}÷(5년×365일)] = 1,599,452,054(원) ◦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주택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우에는 80% 인정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감리지정 신청자의 실적인정 범위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함 ◦ 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만 인정 ◦ 법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만 인정함 - 배점기준 (단위 : 억원)		

공사규모	기준금액 및 배점				
1,500세대 이상	350이상	350미만 250이상	250미만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1,5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250이상	250미만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1,000세대 미만 800세대 이상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8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10이상	10미만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300세대 미만	10이상	10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배 점	12	10.8	9.6	8.4	7.2

산출근거	억원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2

⑶ 행정제재	9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 감리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 등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 1점씩 감점 (1월은 30일 기준이며, 30일 미만은 1월로 간주) 예) 업무정지 44일인 경우 감점산정 * 감점(점) = 1(점) × 월수(월) = 1 × 2 = 2(점) ∵ 월수(월) = 44(일) / 30(일) = 1월 + 14일(14일 = 1월 간주) ⇒ 2(월) ◦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1점 이상 1.5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3점 미만 : 1점 감점 ㄷ. 합산벌점이 3점 이상 : 2점 감점 ◦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5점 감점 ◦ 제11조제4항을 위반한 사유가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25점 감점		
산출근거				
⑷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	○ **평가 및 산정방법**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훈련을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실적(2.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수 부여 -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고, 2인 이상의 자가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된 경우에는 그 인원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 건설기술개발실적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등록 결정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경과기간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10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구 분 / 3년미만 / 3년 이상 6년 미만 / 6년 이상 10년 미만) (특 허 / 100% / 80% / 60%) - 건설기술개발실적은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목·건축·기계설비분야의 공종에 해당하는 주택건설기술에 한하여 인정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부여		

- 타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지정, 등록결정을 양수·양도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금액)으로 인정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
- 해당 업체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제출
- 배점기준

구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점수	2.5	2.0	1.5	1.0	0.5

● 교육훈련(0.5점)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점
  ◦ 35시간이상 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점(생략)

산출근거		
	- 건설기술개발실적 : 건 × 점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 %	
	- 교육훈련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 =

(5) 신규감리원 배치 | 2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감리원중 신규감리원을 해당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배치한 경우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 각 분야별 신규감리원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야는 최소 1명 이상 배치 : 건축분야 미배치시 0점
- 평가방법

(단위 : 세대)

구분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0명	2.0점	0점	0점	0점
1명	2.0점	1.5점	1.0점	0점
2명	2.0점	2.0점	1.5점	1.0점
3명	2.0점	2.0점	2.0점	1.5점
4명이상	2.0점	2.0점	2.0점	2.0점

산출근거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 4

(6) 교체빈도	7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포함)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참여한 용역에서의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교체건수로 본다. 다만,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건수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배점기준 $\text{교체빈도율(\%)} = \dfrac{\text{최근 1년간 교체건수}}{\text{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times 100$ 비율: 5%미만 / 5%이상 10%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20%미만 / 20% 이상 배점: 7 / 5 / 3 / 1 / 0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1건,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0.2건으로 각각 산정한다.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수로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1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0.2인으로 각각 산정한다. ※ 교체빈도율(%)은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산출근거		- 교체빈도 : (산출식 기재) = %		
(7) 가점	3	○ **평가 및 산정방법**		
	(1) 감리원 추가 배치, 총괄 감리원 등급 상향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다음 배점 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다만, 같은 표 항목 (8) 적부여부 중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해당하는 감리원은 제외 - 평가방법 구분: 300세대 이상 1,000세대미만 /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 2,000세대 이상 1명: 1.0점 / 0.7점 / 0.5점 2명: 1.0점 / 1.0점 / 0.7점 3명 이상: 1.0점 / 1.0점 / 1.0점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서 총괄감리원을 특급건설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 가산점 1점 부여		
	산출근거			

<table>
<tr><td rowspan="4"></td><td>(1)
지역
가점</td><td>-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모집공고시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 배점기준
<table><tr><td>배점</td><td>주택건설지역</td></tr><tr><td>1</td><td>특별시·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td></tr></table></td><td></td><td></td></tr>
<tr><td>산출
근거</td><td colspan="3"></td></tr>
<tr><td>(1)
설계
용역
수행
가점</td><td>-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자가 감리자로 응모한 경우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7점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2점
※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하고, 2개사 이상이 설계한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책임기술자가 해당 설계용역을 수행한 설계사무소 소속으로써 총괄감리원으로 응모한 경우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3점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1점</td><td></td><td></td></tr>
<tr><td>산출
근거</td><td colspan="3"></td></tr>
<tr><td>(8) 적격여부</td><td>[적·부]
감리원
배치
계획</td><td>○ 평가방법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예정공정표와 감리원 배치계획이 다음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주요공정표(예정공정표)에 따라「감리비 지급기준」제3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공사의 감리인·월수 이상의 감리원(평가감리원·비평가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적격심사(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기간동안에, 해당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배치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 감리원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배치하고 해당 공사의 감리인·월수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비평가 대상감리원을 배치하여 충족되게 하여야 한다.
◦ 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에는 참여감리원(비평가 대상감리원, 신규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td><td></td><td></td></tr>
<tr><td></td><td>산출
근거</td><td colspan="3"></td></tr>
</table>

	[적·부] 업무 중첩도	○ **평가방법**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 용역 등에 종복 참여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분야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 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여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비상주기술자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참여감리원이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당해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감리자지정권자는 배치계획기간의 중복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산출 근거			
	[적·부] 감리원 추가 의무 배치	○ **평가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 1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사업계획승인일이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미경과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영업정치 처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 같은 호 바목 1)부터 4)까지, 같은 호 차목 6)부터 9)까지 및 14)[14)의 경우 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으로서 같은 영 별표6제2호가목6)가), 같은 목 7)부터 12)까지, 16)부터 20)까지 및 같은 호 라목3)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 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합산벌점 3점 이상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평가방법**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마감공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시설공사 중 제1호나목, 라목부터 자목까지, 제7호만 해당한다) 기간 동안 또는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라목 및 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1.10, 1.11, 1.14에 따른 벌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가하는 감리원 중 1명을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평가방법 (구분: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 2,000세대 이상) (추가인원: 1명 / 2명 / 3명)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산출 근거			

나. 감리자(감리회사)

(1) 총괄감리원

<table>
<tr><th rowspan="2">항 목</th><th rowspan="2">배점</th><th rowspan="2">적 용 기 준</th><th colspan="2">평가점수</th></tr>
<tr><th>신청자</th><th>지정권자</th></tr>
<tr><td>소 계</td><td>27</td><td>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7점 이내</td><td></td><td></td></tr>
<tr><td>(가) 등급</td><td>6</td><td>○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은 실격처리함)
◦ 1천세대 이상은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 1천세대 미만은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td><td></td><td></td></tr>
<tr><td>산출근거</td><td colspan="3">등급 :</td></tr>
<tr><td>(나) 경력 및 실적</td><td>18</td><td>○ 평가 및 산정방법
<기본자격요건>
-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 건축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배점기준 적용>
- 건축분야 감리원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배점기준
<table>
<tr><td>배점</td><td>18
(15)</td><td>16.5
(13.5)</td><td>15
(12)</td><td>13.5
(10.5)</td></tr>
<tr><td>1천세대
이상</td><td>12년 이상</td><td>12년미만
10년이상</td><td>10년미만
8년 이상</td><td>8년 미만</td></tr>
<tr><td>1천세대
미만</td><td>10년 이상</td><td>10년미만
8년 이상</td><td>8년 미만
6년 이상</td><td>6년 미만</td></tr>
</table>
※ 면접(발표)은 실시하지 않음(면접 실시 배점 적용 없음)</td><td></td><td></td></tr>
<tr><td>산출근거</td><td colspan="3">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td></tr>
</table>

<table>
<tr><td>(다) 감리업무 수행계획서</td><td>3</td><td>○ 평가 및 산정방법
- 총괄감리원이 해당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다음 작성기준 및 내용에 적정하게 작성 및 제출(서명·날인)한 경우 : 3점
◦ 감점 : 최대 0.5감점
* 쪽수위반은 0.1점 감점, 각 부문의 내용 불일치·오류·모순이 있는 경우 부문별 0.1점 감점
◦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0점
- 작성기준 및 내용
(단위 : 세대)
<table>
<tr><td>구 분</td><td>500 미만</td><td>500 이상
1,500 미만</td><td>1,500 이상
2,500 미만</td><td>2,500 이상</td></tr>
<tr><td>쪽 수</td><td>15쪽 이상</td><td>20쪽 이상</td><td>25쪽 이상</td><td>30쪽 이상</td></tr>
<tr><td>부 문
(내 용)</td><td colspan="4">1. 사업 개요
2.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3. 공정 관리 4. 시공 관리 5. 품질 관리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7. 기타 기술 검토 등</td></tr>
</table>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의 쪽수는 표지, 간지를 제외하며, 표현 방식에 특별한 제한 없음</td><td></td><td></td></tr>
<tr><td colspan="2">산출근거</td><td></td><td></td><td></td></tr>
<tr><td>(라) 자격가점</td><td>(0.2)</td><td>○ 평가 및 산정방법
- 자격배점 : 0.2점
◦ 건축사 및 건축분야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가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td><td></td><td></td></tr>
<tr><td colspan="2">산출근거</td><td></td><td></td><td></td></tr>
<tr><td rowspan="4">(마) 감점</td><td>(-3.0)</td><td>○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td><td></td><td></td></tr>
<tr><td>(-2)
행정
제재</td><td>◦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 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 : 1.0점 감점
ㄷ.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 : 1.5점 감점
ㄹ. 합산벌점이 20점 이상 : 2.0점 감점</td><td></td><td></td></tr>
<tr><td>산출
근거</td><td colspan="3"></td></tr>
<tr><td>(-1)
교체
빈도</td><td>○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td><td></td><td></td></tr>
<tr><td>산출
근거</td><td colspan="3"></td></tr>
</table>

< 비 고 >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 업체수가 40개를 초과하는 경우

ㅇ 업체수(A)가 홀수인 경우 : (A-1)/2에 해당하는 등급배분에 2배를 곱하되, ‘미’ 부분에 1을 추가하여 등급 배분을 결정

ㅇ 업체수(A)가 짝수인 경우 : A/2에 해당하는 등급배분에 2배를 곱하여 등급배분 결정

예) 업체수가 47개인 경우

- 업체수 23개[=(47-1)/2]에 해당하는 아래의 등급배분에,

23	2	5	9	5	2

- 2배를 곱하되, ‘미’부분에 1을 추가하여 ‘47개업체’일 경우의 등급 배분 결정

47	4	10	19	10	2

(2) 분야별감리원

- 주택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야별 감리원 각각 심사

주택건설공사 규모	평가대상 감리원수	분야별 감리원수	비 고
300세대 미만	2명	토목 1명, 설비 1명	등급 · 경력 및 실적은 심사한 후 1.5점을 곱한 값(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으로 평점하며, 가점 · 감점은 배점기준으로 평점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명	건축 1명, 토목 1명, 설비 1명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4명	건축 2명, 토목 1명, 설비 1명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5명	건축 3명, 토목 1명, 설비 1명	
3,000세대 이상	6명	건축 4명, 토목 1명, 설비 1명	

※ 평가대상 분야별 감리원(건축)에 대한 점수는 개인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후 평균점수로 산정(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table>
<tr><th rowspan="2">항 목</th><th rowspan="2">배점</th><th rowspan="2">적 용 기 준</th><th colspan="2">평가점수</th></tr>
<tr><th>신청자</th><th>지정권자</th></tr>
<tr><td>소 계</td><td>9</td><td>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9점 이내</td><td></td><td></td></tr>
<tr><td>(가) 등급</td><td>2</td><td>○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2점)
<table>
<tr><td>공사규모</td><td colspan="3">점 수</td></tr>
<tr><td rowspan="2">1천세대 이상</td><td>특급건설기술자</td><td>고급건설기술자</td><td>중급건설기술자</td></tr>
<tr><td>2</td><td>1.8</td><td>1.6</td></tr>
<tr><td rowspan="2">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td><td colspan="2">고급건설기술자 이상</td><td>중급건설기술자</td></tr>
<tr><td colspan="2">2</td><td>1.8</td></tr>
<tr><td rowspan="2">300세대 미만</td><td colspan="3">중급건설기술자 이상</td></tr>
<tr><td colspan="3">2</td></tr>
</table></td><td></td><td></td></tr>
<tr><td colspan="2">산출근거</td><td>- 건축 등급 :
- 토목 등급 :
- 설비 등급 :</td><td colspan="2"></td></tr>
<tr><td>(나) 경력 및 실적</td><td>7</td><td>○ 평가 및 산정방법(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만 인정)
< 기본자격요건 >
- 주택건설공사의 해당분야 감리 ·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 ·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이란 ①해당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건축분야 감리원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td><td></td><td></td></tr>
</table>

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토목분야 감리원
  - ◦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

- 설비분야 감리원
  - ◦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 및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

- 공무원 등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서 건축·토목·설비공사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 공무원으로서 건축·토목·설비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 등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배점기준

공사규모	점 수			
1천세대 이상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7	6.3	5.6	4.9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6년 이상	6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7	6.3	5.6	
300세대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7	6.3		

산출근거	
	- 건축 :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토목 :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설비 :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다) 자격가점	(0.1)
	○ **평가 및 산정방법** - 자격배점 : 0.1점 ◦ 건축사 및 관련분야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 중 직무분야가 기계, 토목,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산출근거	
	- 건축 : 자격사항 - 토목 : 자격사항 - 설비 : 자격사항

(라) 감점	(-1.5)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1) 행정 제재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0점 감점		
	산출 근거	건축 : 영업정지기간 등: (월), 합산벌점 : (점) 토목 : 영업정지기간 등: (월), 합산벌점 : (점) 설비 : 영업정지기간 등: (월), 합산벌점 : (점)		
	(-0.5) 교체 빈도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라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산출 근거	건축 : 토목 : 설비 :		

(3) 비상주감리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소 계	6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6점 이내		
(가) 등급	2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 ◦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2.0점 ◦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1.5점 ◦ 등급 미만 : 실격처리(감리자 지정평가에서 제외)		
산출근거		- 등급 :		
(나) 경력 및 실적	4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축분야 감리원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		

<table>
<tr><td></td><td></td><td>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소속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공무원으로 주택건설공사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배점기준
<table><tr><td>경 력</td><td>10년 이상</td><td>10년미만
5년이상</td><td>5년 미만</td></tr><tr><td>배 점</td><td>4점</td><td>2.5점</td><td>1점</td></tr></table>※ 건축분야 감리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력 및 실적 점수를 “0” 점으로 평가하여야 함</td><td></td><td></td></tr>
<tr><td colspan="2">산출근거</td><td>-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별첨3</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5">(다) 감점</td><td>(-2)</td><td>○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td><td></td><td></td></tr>
<tr><td>(-1)
행정
제재</td><td>-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점 감점</td><td></td><td></td></tr>
<tr><td>산출
근거</td><td>- 영업정지기간 등 : (월)
- 합산벌점 : (점)</td><td colspan="2"></td></tr>
<tr><td>(-1)
교체
빈도</td><td>-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td><td></td><td></td></tr>
<tr><td>산출
근거</td><td></td><td colspan="2"></td></tr>
</table>

(4)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3호서식]

감리비 입찰서

입찰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입찰자	상 호		등록번호, 개설신고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주택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감리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령에서 정한 감리자로서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5호서식]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5호서식]

확 인 서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 용	위 치			대지면적	㎡
	사 업 내 용	공 사 명		사업승인일	
		규 모	층, 동, 세대	착공(예정)일	
		연 면 적	㎡	준공(예정)일	
		사업승인번호			

2. 감리자(감리회사)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개설신고번호	
주 소					
공동도급 비 율	(%)	※ 공동도급인 경우 용역참여 지분비율 기재			
	(%)				

3. 확인신청 내용

가.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분 야	감리원 등급	비 고

나. 확인요청사항

확인요청 사항	확 인(√)
상기 공사의 착공예정일(년 월 일)부터 2월 이상 착공 지연	
상기 공사의 2월 이상 공사 중지(중지일: 년 월 일)	

4. 확인내용

상기 공사가 ( )사유로 인하여 현재 ( )개월간 착공지연 또는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현장에 배치된 위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 시·군·구)장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210㎜×297㎜[백상지(80g/㎡)]

[별첨 1]

감리자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여수시 공고 제 - 호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 점 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각 협회에 통보하고 실격처리되며,

참여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겠으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첨 2]

○ 감리자 감리업무수행 실적(우선순위 3개업체)

연번	용 역 명	감리기간		수주금액(억원)		적용요율(%)		환산금액 (억원)
		착공일	준공 (예정)일	주택건설 공사	건축공사	환산 비율	공사종류 요율	
합 계								

※ 공사종류 요율은 주택건설공사 “100”% 그외는 “80”%로 기재

※ 환산비율 : 전체감리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수행한 기간에 대한 비율(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별첨 3]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우선순위 3개업체)

구분	경력사항		경력일수	환산비	평가환산일수	등급	평점
	사업명	기간					
총괄감리원							
	소 계				일 년		
분야별감리원(3명) 및 비상주감리원(1명)							
	소 계				일 년		

[별첨 4]

○ 신규감리원의 배치(우선순위 3개업체)

가. 신규감리원의 자격사항

감리원 성 명	분 야	등 급 자 격			신규감리원 자격		평 점
		현재등급	자격명 (학력명)	취득일	해당시점 (감리사보)	해당시점 이후 경력 및 실적	

나. 신규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신규감리원 자격 해당시점 이후)

구 분	경 력 사 항		경 력 일 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비 고
	사 업 명	기 간				
신 규 감 리 원						
	소 계				일 년	

[별첨 5]

<감 리 원 배 치 계 획 표> (예시)

구분	분야	성명	등 급	투 입 기 간			개월	환산비	인월수	비고
				년	년	년				
총괄	건축	○○○								
분야별	건축	○○○								
	토목	○○○								전반기
		○○○								후반기
	설비	○○○								
비상주	건축	○○○								15%이내
	○○	○○○								
신규	건축	○○○								
	○○	○○○								
	○○	○○○								
	○○	○○○								
비평가	건축	○○○								
	설비	○○○								
	토목	○○○								
	○○	○○○								
	○○	○○○								
추가배치	건축	○○○							-	구조체 공사배치
	건축	○○○							-	구조체 공사배치
총배치 인월수										

※ 감리대상공사비 :

- 법 정 인·월 수 : 인·월
- 투 입 인·월 수 : 인·월
- 비상주감리원 인 · 월수(배치율) : 인·월 (%)

※ 상기 서식에 맞추어 감리자(회사)가 작성한 배치계획표 양식으로 제출가능하며, 법정인・월수 산정근거 제시 바람

【참고자료 1】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1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3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4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5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참 고 사 항>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참고자료 2】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

구 분	사업수행능력 배점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배점	산식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300세대 미만	40	60	**60-5×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45	84.95%
500세대 미만	50	50	**5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35	82.95%
1,000세대 미만	60	40	**40-2×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25	80.45%
1,000세대 이상	70	30	**30 -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15	72.95%

여수시 공고 제2026-52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 공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선정을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9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2 (소방청 고시 제2024-45호(2024. 9. 10.)」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소방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19.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2. 19. ~ 2026. 3. 2.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 여수 죽림1지구 A6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비오엠건설(주) 대표이사 이경민 (☎055)268-6611)

다. 시 공 자 : 덕진토건(주) 대표자 정철채 (☎055)268-6100)

라. 설 계 자 : (주)나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오형종 (☎02)2202-4600)

마.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죽림1지구 A6블럭

○ 대지면적 : 29,198.4000㎡

○ 연 면 적 : 90,890.6985㎡

○ 규 모 : 공동주택(아파트) 9개동(지하2층, 지상20층) 및 부대·복리·근린생활시설

○ 세 대 수 : 공동주택(아파트) 626세대

○ 공사기간 : 2026. 06.01. ~ 2029. 04. 30.(35개월)

※ 소방공사기간(예정) : 2027. 1. 1.~2029. 4. 30.(28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23. 03. 30.

바. 사 업 비

○ 총사업비 : 173,513,898천원

○ 대 지 비 : 42,718,477천원

○ 총공사비 : 96,229,000천원(일반관리비, 이윤, 발코니 확장 공사비 포함 / 부가가치세 미포함)

1) 감리 대상 공사비 : 3,649,332천원

2)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 : 92,579,668천원

※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는 건축, 전기, 정보통신 공사의 비용임.

※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는 별도 첨부자료 참조

사. 감리대가 : 1,073,443,194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1,041,239,898원(감리대가기준의 97%)

※ 소수점 이하(원단위 미만) 절사

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공사 예정 공정표 (소방)

[공사명] 여수 죽림1지구 A6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공사기간] 2026년 06월 01일 ~ 2029년 04월 30일 (35개월)
[공사규모] 아파트 9개동 / 626세대 / 지하 2층, 지상 20층
[공사 착공 예정일] 2026년 06월 0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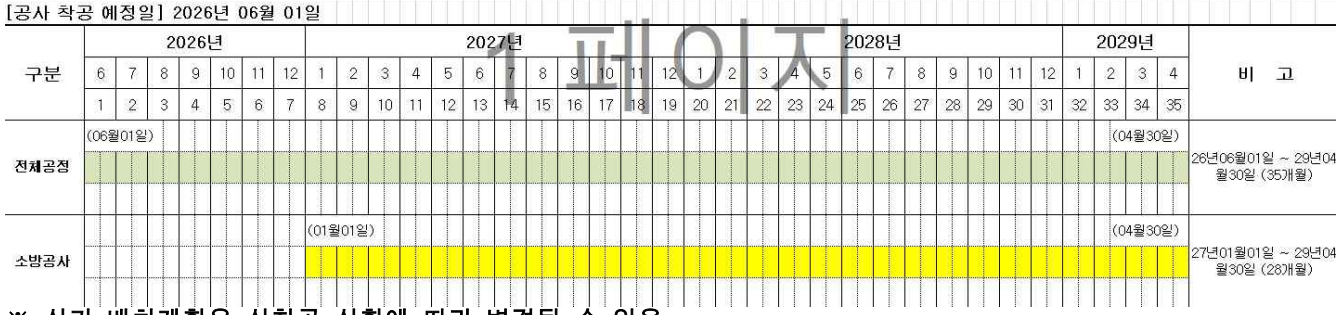

※ 상기 배치계획은 실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 3. 3.(화) 09:00 ~ 2026. 3. 5.(목) 12: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자 지정신청서 미제출자는 실격 처리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은 '감리대가' 의 97±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6. 3. 5.(목) 14:00부터,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됨.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개찰결과 상위 5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 우리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http://https://www.yeosu.go.kr/, 열린시정>여수소식>고시공고)에 결과가 게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절 받지 않음.

6. 사실 확인 서류 제출 기간(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 3. 6.(금) 09:00 ~ 2026. 3. 10.(화)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 공동주택허가팀(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다.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 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 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원본대조필 날인 필)**

※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기간내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 사실확인 서류 제출 후, 사실확인 서류를 PDF로 요청할 수 있음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3. 11.(수) 09:00 ~ 2026. 3. 13.(금)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 공동주택허가팀(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다.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항

1)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 및 사실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2) 자기평가표(별지 제8호 서식) (세부평가내역은 열람불가)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1) 감리자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상기 기간 내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절 받지 않음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따라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합니다.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업자

1) 응모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감리업을 등록한 자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 수행금액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 중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으로 산정함.
- 유사용역의 범위는 공동주택에 한하며 수행실적의 단위는 억원으로 되어있어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자리로 작성함,
- 기성실적은 전체 감리비 중 기성실적으로 받은 금액의 누적금액을 이야기하며, 완공된 경우 기성실적은 100%를 적용함. 환산비율 및 공사종류 요율은 별표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비고를 참조 바랍니다.

나. 감리원

1) 응모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감리업을 등록한 회사 소속인 자.

2) 상주감리인 · 월 산출은 소방시설공사업 및 시행령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함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라.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마. 지역가점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부여

9. 감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선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류 첨부) ⇒ 전자입찰 및 개찰⇒ 우선순위(예비1~5순위) 선정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 지정(통보)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감리자 선정 방법

1) 「소방시설 설계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소방청 고시 제2024-45호 (2024. 9. 10.)」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소방시설 설계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4)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5)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0.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www.bok.or.kr) "기업경영실적분석" 자료에서 전체「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비율 적용.

가.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2.39%

나. 평균 유동비율 : 125.42%

※ 구비서류 중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함. {기술개발투자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선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을 기재하여야 함}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1)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별지 제7호서식] 및 서약서(별첨5)

2) 자기평가서[별지 제8호 서식] - 신청서 제출시에는 세부평가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4) 감리비 입찰서[별지 제10호 서식] - 나라장터 입찰서로 갈음하오니 제출하지 않습니다.

5)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4]

6) 감리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서식 뒷면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 고시 제2024-45호, 2024. 9. 10.)」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1) 자기평가서[별지 제8호 서식]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용

2) 소방공사감리 용역수행사실 확인서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실안임**)

※ 기술개발실적 관련 소방기술에 관한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 업무중첩도

: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배치예정 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업주체의 배치확인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7)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업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8)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9)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감리원 보유증명서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자격증)
- 행정제재 :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감리원 경력 증명서, 감리원 부실벌점 확인서)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증명서)

10) 증빙자료

: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11)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4 서식 참고하여 작성)

12) 그 밖에 1)~11)외에도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별지 제7호서식]와

뒷면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일체를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다. 유의사항

1)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사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건실도, 행정제재현황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2) 각종 확인서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서의 기준일자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함.

3)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이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4)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 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5)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6) 가점으로 인해 100점을 초과하여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점수는 100점을 적용합니다.

7)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유사용역 수행 실적상 '해당 공사감리용역비'는 감리대가기준 금액임.

8) 유사용역 수행 실적 단위는 억원으로 되어 있어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자리로 작성하며, 기성실적은 전체 감리비 중 기성실적으로 받은 금액의 누적금액이며, 완공된 경우 기성실적은 100%를 적용함. 환산비율 및 공사종류 요율은 별첨3 소방공사(감리)용역 수행실적 하단 참조.

9) 참여분야 경력 산정시 일반감리의 수행기간내 다수(일반감리 등) 수행기간이 중첩되는 경우 하나의 경력기간으로 산정함.(산정시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10) 제출된 서류는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응모서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폐기함.

12.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선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4)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나. 응모서류 등록 접수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 된 경우에는 감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업자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함.

다. 상기 사업내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사항으로 사업승인의 취하 또는 취소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세부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1)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2)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에서 소방분야 실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특허 또는 실용신안 소방신기술: 소방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4) 교육: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 감리원경력 및 실적평가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을 재확인 바람.

마.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함.(단, 별첨1,2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바.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구 분 / 과업수행계획			제 출					미제출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	2.7	2.4	2.1	1.8	0
평가기준	내용	수행계획	적합		부적합			
		배치계획	적합		부적합			
	쪽 수 (표지 및 간지 제외)		12쪽 내외	10쪽 미만	5쪽 미만			-

구 분 / 작업기법			제 출					미제출
			수	우	미	양	가	
점 수			2	1.8	1.6	1.4	1.2	0
평가기준	내용	문제점	적합		부적합			-
		조치사항						
		대책방안						
	쪽 수 (표지 및 간지 제외)		3쪽 내외	2쪽 미만	-			-

사.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아.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자.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 또는 재선정 절차로 감리업자 선정함.

차. 감리업자 선정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선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에 감리비를 정산해야 함.

카.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우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선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함.

타. 제출된 응모서류는 반환하거나,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응모서류는 우선순위(1~5순위) 업체의 서류는 우리 시에서 보관하고 그 외의 서류는 즉시 폐기함.

파.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세부평가기준에 따름.**(평가표 등이 예전 자료일 경우 최신기준 적용)**

하. 감리대가 지급은 실착공일 기준으로 지급함.

거. 착공 전 시공사에서 요청하는 서류 및 시행사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바랍니다.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우리 시 홈페이지(열린시정>여수소식>고시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 나라장터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061-659-4095)로 문의바랍니다.

첨부 1.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2.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예정공정표 각 1부. 끝.

분 야	접수번호
소 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선정신청

(사업명 : 여수 죽림1지구 A6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6년 월 일

[회사명 기재]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7호서식]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사업개요	사업명		공고번호	
	사업주체	업체명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치	대지면적 ㎡	착공일
		사업내용 층, 동, 세대	연면적 ㎡	준공일
	설계업자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감리업자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참여감리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급(기계)	등급(전기)	감리원수첩번호
	책 임					
	보 조					
	보 조					
	보 조					
	보 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소방시설 설계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신청안내	
첨부서류	1. 별지 제6호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자기평가서 1부. 3. 별지 제10호서식 감리비 입찰서 1부. 4. 사실확인 서류(제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10㎜×297㎜[백상지(80g/㎡)]

사실확인 서류 (감리업자)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	소방공사감리 용역수행사실 확인서
	② 행정제재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③ 재무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
	⑤ 교체빈도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⑥ 작업계획 및 기법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⑦ 지역	감리업등록증 사본
사실확인 서류 (감리원)	⑧ 소속근무처	감리원 보유증명서
	⑨ 등급 / 경력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 경력증명서
	⑩ 행정제재 / 교육실적	감리원 경력증명서
	⑪ 업무중첩도 · 교체빈도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⑫ 책임감리원 가점	감리원 경력증명서

유의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제24호의3 및 제40조제1항제13호의3	• 감리업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알림사항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소방시설협회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10㎜×297㎜[백상지(80g/㎡)]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8호서식]

자기평가서(상주 공사감리 대상)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신청인	선정권자	비고
참여감리원	50	책임감리원	등급	-			
			소방분야경력	12			
			참여분야경력	12			
				6			
		보조감리원	등급	-			
			소방분야경력	8			
			참여분야경력	8			
				4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		10			
신용도	10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감리업체	4			
			참여감리원	3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1			
			유동비율	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기술개발실적		4			
		기술개발투자실적		4			
		교육실적		2			
업무중첩도	10	책임감리원		7			
		보조감리원		3			
교체빈도	5	감리업체		2.5			
		참여감리원		2.5			
작업계획 및 기법	5	과업수행계획		3			
		작업기법		2			
가점	2	지역		1			
		책임감리원(기술자격)		1			
합계							

신청인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모집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 · 제출하였음을 확인하며 허위 ·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우선순위 5개업체에 한함)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요소</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가. 참여 감리원</td><td>1) 해당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td><td>50</td><td></td></tr>
<tr><td></td><td>가) 책임감리원
(1) 등급</td><td>[30]
(-)</td><td>○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실격 처리</td></tr>
<tr><td></td><td>(2) 소방분야 경력</td><td>(12)</td><td>○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table>
<tr><th>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th><th colspan="5">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th></tr>
<tr><td>100억원 이상</td><td>7 이상</td><td>7 미만
6 이상</td><td>6 미만
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td></tr>
<tr><td>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td><td>6 이상</td><td>6 미만
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td></tr>
<tr><td>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td><td>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
2 이상</td><td>2 미만</td></tr>
<tr><td>3억원 미만</td><td>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
2 이상</td><td>2 미만
1 이상</td><td>1 미만</td></tr>
<tr><td>점 수</td><td>12</td><td>11</td><td>10</td><td>9</td><td>8</td></tr>
</table></td></tr>
<tr><td></td><td>(3) 참여분야 경력</td><td>(12)</td><td>○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table>
<tr><th>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th><th>등 급</th><th colspan="5">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th></tr>
<tr><td rowspan="3">100억원 이상</td><td>특급
(소방 기술사)</td><td>6 이상</td><td>6 미만
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td></tr>
<tr><td>특급</td><td>7 이상</td><td>7 미만
6 이상</td><td>6 미만
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td></tr>
<tr><td>고급</td><td>8 이상</td><td>8 미만
7 이상</td><td>7 미만
6 이상</td><td>6 미만
5 이상</td><td>5 미만</td></tr>
<tr><td rowspan="3">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td><td>특급
(소방 기술사)</td><td>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
2 이상</td><td>2 미만</td></tr>
<tr><td>특급</td><td>6 이상</td><td>6 미만
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td></tr>
<tr><td>고급</td><td>7 이상</td><td>7 미만
6 이상</td><td>6 미만
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td></tr>
<tr><td rowspan="3">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td><td>특급
(소방 기술사)</td><td>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
2 이상</td><td>2 미만
1 이상</td><td>1 미만</td></tr>
<tr><td>특급</td><td>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
2 이상</td><td>2 미만</td></tr>
<tr><td>고급</td><td>6 이상</td><td>6 미만
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td></tr>
<tr><td>3억원 미만</td><td>특급</td><td>4 이상</td><td>4 미만</td><td>3 미만</td><td>2 미만</td><td>1 미만</td></tr>
</table></td></tr>
</table>

			3 이상	2 이상	1 이상	
고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	12	11	10	9	8

(6) ○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등 급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특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고급	8 이상	8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특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고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특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고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3억원 미만	특급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고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		6	5.7	5.4	5.1	4.8

산출근거 **(별첨 1)**	**- 소방분야경력 : 일 (년)** **- 참여분야경력(설계,시공,감리등) : 일 (년)** **- 참여분야경력(감리 및 공사감독등) : 일 (년)**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나) 보조감리원	[20]	
	(1) 등급	(-)	ㅇ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른 국가등의 제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2) 소방분야 경력	(8)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8	7.7	7.4	7.1	6.8

(3) 참여분야 경력	(8)	ㅇ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8.0	7.7	7.4	7.1

	(4)	ㅇ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4.0	3.8	3.6	3.4

산출근거 (별첨 2)	보조	- 소방분야경력 : 일 (년) - 참여분야경력(설계,시공,감리등) : 일 (년) - 참여분야경력(감리 및 공사감독등) : 일 (년)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실적금액	10 [10]	ㅇ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감리대가금액 기준) 대비 누계실적평가

구 분	점 수
100% 이상	10
80% 이상 100% 미만	9
60% 이상 80% 미만	8
40% 이상 60% 미만	7
40% 미만	6

산출근거 (별첨 3)	누계실적금액 : 원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요소</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다.신용도</td><td></td><td>10</td><td></td></tr>
<tr><td></td><td>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td><td>[7]</td><td></td></tr>
<tr><td></td><td>가) 감리업체</td><td>(4)</td><td>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td></tr>
<tr><td></td><td>나) 참여감리원</td><td>(3)</td><td>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td></tr>
<tr><td></td><td>2) 재정상태 건실도</td><td>[3]</td><td>ㅇ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td></tr>
<tr><td></td><td>가) 자본비율</td><td>(1)</td><td>-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예 시>
<table>
<tr><td>구 분</td><td>100% 이상</td><td>100% 미만 75% 이상</td><td>75% 미만 50% 이상</td><td>50% 미만 25% 이상</td><td>25% 미만</td></tr>
<tr><td>점 수</td><td>1.0</td><td>0.85</td><td>0.70</td><td>0.55</td><td>0.4</td></tr>
</table></td></tr>
<tr><td></td><td>나) 유동비율</td><td>(2)</td><td>ㅇ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예 시>
<table>
<tr><td>구 분</td><td>100% 이상</td><td>100% 미만 75% 이상</td><td>75% 미만 50% 이상</td><td>50% 미만 25% 이상</td><td>25% 미만</td></tr>
<tr><td>점 수</td><td>2.0</td><td>1.7</td><td>1.4</td><td>1.1</td><td>0.8</td></tr>
</table></td></tr>
<tr><td colspan="3">산출근거</td><td>입찰참가제한 감리업체 :
참여감리원 :
자본비율 :
유동비율 :</td></tr>
</table>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요소</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td><td></td><td>10</td><td></td></tr>
<tr><td></td><td>1) 기술개발 실적</td><td>(4)</td><td>ㅇ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예 시>
<table>
<tr><th>구 분</th><th>5년 이하</th><th>5년 초과 10년 이하</th><th>10년 초과 20년 이하</th></tr>
<tr><td>특 허</td><td>100%</td><td>80%</td><td>60%</td></tr>
<tr><td>실용신안</td><td>100%</td><td>80%</td><td>-</td></tr>
</table>
ㅇ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ㅇ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td></tr>
<tr><td></td><td>2) 기술개발 투자 실적</td><td>(4)</td><td>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예 시>
<table>
<tr><th>구 분</th><th>3% 이상</th><th>3.0% 미만 2.5% 이상</th><th>2.5% 미만 2.0% 이상</th><th>2.0% 미만 1.5% 이상</th><th>1.5% 미만</th></tr>
<tr><td>점 수</td><td>4</td><td>3.5</td><td>3.0</td><td>2.5</td><td>2.0</td></tr>
</table></td></tr>
<tr><td></td><td>3) 교육 실적</td><td>(2)</td><td>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법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td></tr>
<tr><td colspan="3" rowspan="3">산출근거</td><td>기술개발실적: (산출식 기재)</td></tr>
<tr><td>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td></tr>
<tr><td>교육훈련 : (산출식 기재)</td></tr>
</table>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요소</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마. 업무
중첩도</td><td></td><td>10
(10)</td><td>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table><tr><td>구 분</td><td>책임감리원</td><td>보조감리원</td></tr><tr><td>점 수</td><td>7</td><td>3</td></tr></table>- 상주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중복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 (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td></tr>
<tr><td colspan="3" rowspan="2">산출근거</td><td>책임감리원 :</td></tr>
<tr><td>보조감리원 :</td></tr>
<tr><td>바. 교체빈도</td><td>1) 감리업체</td><td>5
(2.5)</td><td>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예 시>
<table><tr><td>교체빈도
(%)</td><td>10% 미만</td><td>10% 이상
20% 미만</td><td>20% 이상
30% 미만</td><td>30% 이상</td></tr><tr><td>점 수</td><td>2.5</td><td>2</td><td>1.5</td><td>0</td></tr></table></td></tr>
<tr><td></td><td>2) 참여감리원</td><td>(2.5)</td><td>ㅇ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감리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하여, 기록 · 관리가 완료 된 날부터 적용한다.</td></tr>
<tr><td colspan="3">산출근거</td><td></td></tr>
<tr><td>사. 작업계획
및 기법</td><td>1) 과업수행계획</td><td>5
(3)</td><td>ㅇ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 · 품질 · 안전 · 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 제출의 경우: <예 시>
<table><tr><td>구분</td><td>수</td><td>우</td><td>미</td><td>양</td><td>가</td><td>미제출</td></tr><tr><td>점수</td><td>3</td><td>2.7</td><td>2.4</td><td>2.1</td><td>1.8</td><td>0</td></tr></table></td></tr>
<tr><td></td><td>2) 작업기법</td><td>(2)</td><td>ㅇ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 · 제출의 경우: <예 시>
<table><tr><td>구분</td><td>수</td><td>우</td><td>미</td><td>양</td><td>가</td><td>미제출</td></tr><tr><td>점수</td><td>2</td><td>1.8</td><td>1.6</td><td>1.4</td><td>1.2</td><td>0</td></tr></table></td></tr>
<tr><td colspan="3">산출근거</td><td>절대평가 :</td></tr>
</table>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지역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책임감리원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산출근거		지 역 : 책임감리원 : 부 실 벌 점 :

[별첨 1]

감리원 경력확인서(총괄 : 성명)

1) 소방분야 경력

담당업무	시작일	종료일	근무처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2-1) 참여분야 경력 :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사업명	시작일	종료일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2-2) 참여분야 경력 :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사업명	시작일	종료일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같거나 유사한 용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해당하는 실적)
- 업무분야가 전기/기계를 모두 수행한 경력만인정(전기 또는 기계분야 단독경력 불인정)

[별첨 2]

감리원 경력확인서(보조 : 성명)

1) 소방분야 경력

담당업무	시작일	종료일	근무처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2-1) 참여분야 경력 :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사업명	시작일	종료일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2-2) 참여분야 경력 :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사업명	시작일	종료일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같거나 유사한 용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해당하는 실적)
- 업무분야가 전기/기계를 모두 수행한 경력만인정(전기 또는 기계분야 단독경력 불인정)

[별첨 3]

소방공사(감리)용역수행실적

연번	용 역 명	감리기간		수주금액(억원)		적용요율(%)		환산금액 (억원)
		시작일	종료 (예정)일	감리비	기성실적 (비율)	환산 비율	공사종류 요율	
합 계								

※ 준공실적 : 소방시설감리비 x 공동도급 참여비율 x 환산비율

※ 진행중인 실적 : 소방시설감리비 x 공동도급 참여비율 x 기성실적(비율) x 환산비율

※ 환산비율 : 전체감리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수행한 기간에 대한 비율(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 공사종류요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100% 이외 실적 70% 인정(단 복합건축물의 경우 주용도가 공동주택일 경우 100% 인정, 관련서류 증빙)

※ 한국소방시설협회발행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에 등재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별첨 4]

감 리 원 배 치 계 획 표

○ 용 역 명 :

○ 소방공사기간 : 20 . . ~20 . . (개월간)

구분	성명	등급	투입일자																															개월	비고
			연도																																
			월																																
책임	○○○																																		
보조	○○○																																		
	○○○																																		
비상주	○○○																																		

※ 참여감리원의 명단(성명)을 기입하여야 함.

[별첨 5]

감리자 선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여수시 공고 제 - 호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 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의9 및「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당해 감리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 점 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각 협회에 통보하고 실격처리되며,

참여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겠으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6호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대상업체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검토기준	결산서 구분	결산일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	자 기 자 본		총 자 산	
유 동 비 율 (최근년도)	%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매출액순이익율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 매 출 액	
총자본회전율	%	총 매 출 액		총 자 본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	기술개발투자실적(소방부문) 합계금액		총매출액(소방부문) 합계금액	
		3차년 투자액		3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대상업체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가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 ] 공인회계사, [ ] 세무사

등록(인가)번호: 제 호 (서명 또는 인)

상호(명칭):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210㎜×297㎜[백상지 80g/㎡]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10호서식]

감리비 입찰서

입찰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입찰자	회사명		감리업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본인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감리업자로서 성실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참고자료 1】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1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 송신 '(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 시행문 출력 '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3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4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5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참 고 사 항>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참고자료2】

[부표] 주택건설공사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적격심사기준 적용

낙찰하한율 산출표

구 분	사업수행능력 배점	입 찰 가 격			낙찰하한율
		배점	산 식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추정가격 5억미만	30	70	**70 - 3×|(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55	82.95%

구 분	사업수행능력 배점	입 찰 가 격			낙찰하한율
		배점	산 식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추정가격 10억미만 5억이상	50	50	**50 - 3×|(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35	82.95%

구 분	사업수행능력 배점	입 찰 가 격			낙찰하한율
		배점	산 식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추정가격 10억이상	70	30	**30 -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15	72.95%

○ | | 는 절대값 표시임.

여수시 공고 제2026-53호

주택건설공사 전력시설물 감리업자(전기) 모집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전기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19.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2. 19. ~ 2026. 3. 2.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 여수 죽림1지구 A6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비오엠건설(주) 대표이사 이경민 (☎055)268-6611)

다. 시 공 자 : 덕진토건(주) 대표이사 정철채 (☎055)268-6100)

라. 설 계 자 : (주)나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오형종 (☎02)2202-4600)

마.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죽림1지구 A6블럭

○ 대지면적 : 29,198.4000㎡

○ 연 면 적 : 90,890.6985㎡

○ 규 모 : 공동주택(아파트) 9개동(지하2층, 지상20층) 및 부대 · 복리 · 근린생활시설

○ 세 대 수 : 공동주택(아파트) 626세대

○ 공사기간 : 2026. 06. 01. ~ 2029. 04. 30.(35개월)

※ 전기공사기간(예정) : 2027. 1. 1.~ 2029. 4. 30.(28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23. 03. 30.

바. 사 업 비

○ 총사업비 : 173,513,898천원

○ 대 지 비 : 42,718,477천원

○ 총공사비 : 96,229,000천원(일반관리비, 이윤, 발코니 확장 공사비 포함 / 부가가치세 미포함)

1) 감리 대상 공사비 : 4,177,700천원

2)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 : 92,051,300천원

※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는 건축, 정보통신, 소방 공사의 비용임.

※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제14호(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출

사. 감리대가 : 697,224,398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676,307,665원(감리대가기준의 97%)

※ 소수점 이하(원단위 미만) 절사

※ 직접경비 중 현지 차량비와 현장 운영경비는 별도 계상

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공사 예정 공정표 (전기)

[공사명] 여수 죽림1지구 A6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공사기간] 2026년 06월 01일 ~ 2029년 04월 30일 (35개월)
[공사규모] 아파트 9개동 / 626세대 / 지하 2층, 지상 20층
[공사 착공 예정일] 2026년 06월 0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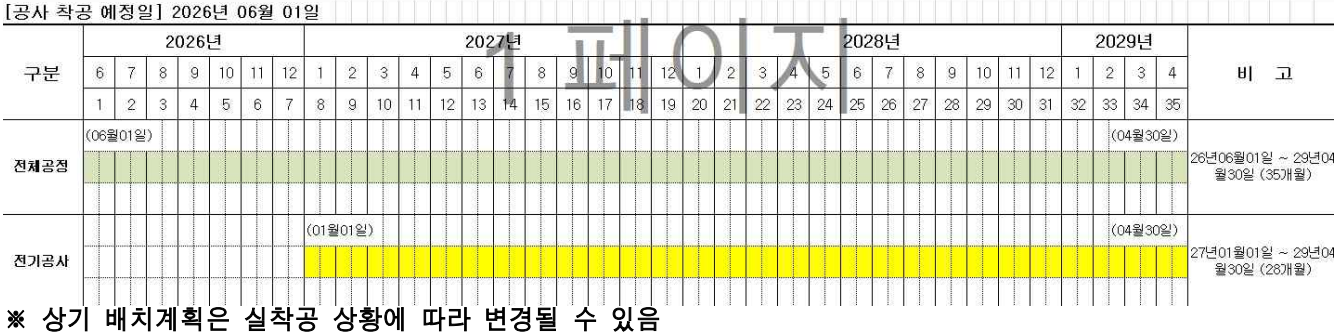

※ 상기 배치계획은 실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 3. 3.(화) 09:00 ~ 2026. 3. 5.(목) 12: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자 지정신청서 미제출자는 실격 처리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은 '감리대가' 의 97±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6. 3. 5.(목) 14:00부터,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됨.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개찰결과 상위 5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 우리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http://https://www.yeosu.go.kr/, 열린시정>여수소식>고시공고)에 결과가 게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절 받지 않음.

6. 사실 확인 서류 제출 기간(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 3. 6.(금) 09:00 ~ 2026. 3. 10.(화)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 공동주택허가팀(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다.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 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 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원본대조필 날인 필)**

※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기간내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 사실확인 서류 제출 후, 사실확인 서류를 PDF로 요청할 수 있음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3. 11.(수) 09:00 ~ 2026. 3. 13.(금)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 공동주택허가팀(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다.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항

1)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1) 감리자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상기 기간 내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절 받지 않음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따라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합니다.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업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 가능[영 별표5 제2호(감리업의 영업범위)]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의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 중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나. 감리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2) 상주감리인 · 월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함(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라.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마. 지역가점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2025. 12. 18.)」 [부표 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별 세부평가방법에 의함.(단, 800세대 이상인 경우 해당 없음)

9.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류 첨부) ⇒ 전자입찰 및 개찰 ⇒ 우선순위(예비1~5순위) 선정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 지정(통보)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감리자 지정 방법

1)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 2023.3.2)」 및 동기준 제3조 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3)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준 제14조(기타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선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하며, 그 밖에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0조의3에 따름.

4)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5)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0.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www.bok.or.kr) "기업경영실적분석" 자료에서 전체「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비율 적용.

가.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2.39%

나. 평균 유동비율 : 125.42%

※ 구비서류 중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함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및 서약서[별첨4](임감날인)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서식](Ⅰ.총괄표, 비고란에 평점산정근거 기재)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9호서식]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4)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별첨3]

5)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 별지 제6호의2 서식 뒷면 사실확인서류 일체를「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12.18.)」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1)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Ⅰ.총괄표+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2)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 업체에 한함)

※ 기술개발실적 관련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 업무중첩도

-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배치예정 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업주체의 배치확인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7)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8)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 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9)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 보유확인서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자격증)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경력확인서)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10) 증빙자료 :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상철하고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다. 유의사항

1)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감리 업무수행실적사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건실도, 행정제재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2) 각종 확인서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함.

3)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가)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참여사업명 및 직무분야, 참여분야와 담당업무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 및 부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 또는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함.

나) 경력 및 실적기간이 중복가능한 설계 및 비상주 감리경력에 대하여는

- 설계경력 : 동일기간에 여러건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1개소(최대80%)만 경력 산정하며 평가서에 날짜를 구분 명기하여야 함.
- 비상주감리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8항에 의하여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부표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1호에 의하여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후 산정된 기간의 20%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중복기간에 최대 5개소의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6개소 이상은 경력 산정에서 제외함.

4)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가) 소방, 정보통신 등 타법에 따라 배치된 비상주 감리원의 현장개소와 전기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개소를 합산하되, 총 9개소 이하로 함.

※ 합산개소가 5개소인 경우 4점, 9개소 이상인 경우 0점

나) 전기 상주감리원(책임, 보조)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이나 타 분야 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다) 타 분야 상주감리원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라) 1개의 현장에 1인이 혼합하여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모두 합산

마) 입찰서류 제출 시 자기평가서에 중복배치여부를 기재하고 허위 기재 시 탈락 처리함.

5)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이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6)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7)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8) [별첨 1] 감리원 업무수행실적, [별첨 2]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대하여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에 있는 경력·실적 중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실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별첨 1, 2]양식에 따라 감리업자가 작성한 실적에 대하여 자기평가서와 비교하여 평가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12.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4)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나. 응모서류 등록 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 된 경우에는 감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업자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며 부정행위로 통보 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선정신청을 할 수 없음.

다. 상기 사업내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사항으로 사업승인의 취하 또는 취소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세부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1)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2)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전기분야 실적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3)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력신기술: 전력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4) 교육: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 감리원경력 및 실적평가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을 재확인 바람.

마.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함(단, 별첨1,2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바.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구 분 / 과업수행계획			제 출					미제출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	2.7	2.4	2.1	1.8	0
평가기준	내용	수행계획	적합		부적합			
		배치계획	적합		부적합			
	쪽 수 (표지및간지 제외)		12쪽 내외	10쪽 미만	5쪽 미만			-

구 분 / 작업기법			제 출					미제출
			수	우	미	양	가	
점 수			2	1.8	1.6	1.4	1.2	0
평가기준	내용	문제점	적합		부적합			-
		조치사항						
		대책방안						
	쪽 수 (표지및간지 제외)		3쪽 내외	2쪽 미만	-			-

사.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아.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자.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 또는 재선정 절차로 감리업자 선정함.

차. 감리업자 선정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선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에 감리비를 정산해야 함.

카.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우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선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함.

타. 제출된 응모서류는 반환하거나,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응모서류는 우선순위(1~5순위) 업체의 서류는 우리구 에서 보관하고 그 외의 서류는 즉시 폐기하오니 감리자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람.

파.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 2023.3.2.)]에 따르며, 공고문의 내용과 위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관련 법령 등을 따른다.

하. 착공 전 시공사에서 요청하는 서류 및 시행사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바랍니다.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우리 시 홈페이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입찰정보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 나라장터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061-659-4095)로 문의바랍니다.

첨부 1.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2.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예정공정표 각 1부. 끝.

분 야	접수번호
전 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선정신청

(사업명 : 여수 죽림1지구 A6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6년 월 일

[회사명 기재]

[별지 제6호의2서식]

(앞 쪽)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1. 사업개요

사업명				공고번호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층, 동, 세대	㎡		
설계업자	대표자		상 호		
	주 소				

2. 감리업자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3. 참여감리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 급	감리원수첩번호
책 임				
보 조				
보 조				
보 조				
비상주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구비서류 : 뒤쪽참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첨부서류

1. 자기평가서 1부.
2. 감리비 입찰서 1부.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감리업자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② 행정제재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③ 재무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또는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 출원인 확인용 서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⑤ 작업계획 및 기법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⑥ 교체빈도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⑦ 지 역	감리업등록증 사본
감리원	① 등급/책임감리원가점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경력확인서
	② 경 력	감리원경력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확인서
	③ 행정제재	감리원경력확인서
	④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감리원의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⑤ 교육실적	감리원경력확인서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협회에서 발행한 것이나 해당 용역의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로 확인할 수 있음

[별지 제7호 서식]

Ⅰ. 총괄표

자 기 평 가 서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요 소		배점	신청인	시·도	비고
1. 참여감리원	50	가. 책임 감리원	(1)등급	-			
			(2)경력 및 실적	25			
		나. 보조 감리원	(1)등급	-			
			(2)경력 및 실적	14			
		다. 비상주 감리원	(1)등급	2			
			(2)경력 및 실적	9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		10			
3. 신 용 도	10	가.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1)감리업체	4			
			(2)참여감리원	3			
		나. 재정상태건실도	(1)자본비율	1.0			
			(2)유동비율	2.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가. 개발실적		4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4			
		다. 교육실적		2			
5. 업무중첩도	10	가. 상주감리원		6			
		나. 비상주감리원		4			
6. 교체빈도	5	가. 감리업체		2.5			
		나. 참여감리원		2.5			
7. 작업계획 및 기법	5	가. 과업수행계획		3			
		나. 작업기법		2			
8. 가점·감점	1.5 1 -5	가. 지 역		1.5			
		나. 책임감리원(기술자격)		1			
		다. 부실벌점		-5			
합 계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자기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이 기준 및 감리업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작성한 점수가 과다 계산된 경우에는 "0" 점 처리, 과소 계산된 경우에는 그 점수(감점의 경우 최대 감점점수)로 처리하고, "허위·거짓 등" 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평점은 당해업체가 기재하고, 평점산정근거를 비고란에 기재할 것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우선순위 5개업체에 한함)

- 평점란은 자기평점을 기재하고 평가란은 공란(기재하지 말 것)

1. 항목별 평가기준

<table>
<tr><th>평가항목</th><th>평가요소</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h colspan="2">평가점수</th></tr>
<tr><th></th><th></th><th></th><th></th><th>신청자</th><th>선정권자</th></tr>
<tr><td colspan="2">소 계</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가. 참여감리원</td><td>50</td><td></td><td></td><td></td></tr>
<tr><td rowspan="4">가. 참 여 감리원</td><td>(1) 책 임 감 리원
㈎등급
㈏경력 및 실적</td><td>[25]
(-)
(25)</td><td>○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배점기준
<table>
<tr><th>규 모</th><th colspan="5">경력년수 및 점수</th></tr>
<tr><td>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td><td>6년이상</td><td>6년미만 5년이상</td><td>5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 3년이상</td><td>3년미만</td></tr>
<tr><td>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td><td>10년이상</td><td>10년미만 8년이상</td><td>8년미만6 년이상</td><td>6년미만4 년이상</td><td>4년미만</td></tr>
<tr><td>1,200세대이상</td><td>15년이상</td><td>15년미만 12년이상</td><td>12년미만 9년이상</td><td>9년미만6 년이상</td><td>6년미만</td></tr>
<tr><td>점 수</td><td>25</td><td>22</td><td>19</td><td>16</td><td>13</td></tr>
</table>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아래 표의 해당 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table>
<tr><td>규 모</td><td>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td><td>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td><td>1,200세대이상</td></tr>
<tr><td>년 수</td><td>2년</td><td>3년</td><td>4년</td></tr>
</table></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산출근거</td><td colspan="3">(1) 등 급 :</td></tr>
<tr><td colspan="3">(2) 경력 및 실적 : 일(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td></tr>
<tr><td rowspan="4"></td><td>(2) 보 조 감 리원
㈎등급
㈏경력 및 실적</td><td>[14]
(-)
(14)</td><td>○ 법 제12조의2제1항,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배점기준
<table>
<tr><th>규 모</th><th colspan="4">경력년수 및 점수</th></tr>
<tr><td rowspan="2">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td><td>3년이상</td><td colspan="2">3년미만 2년이상</td><td>2년미만</td></tr>
<tr><td>14</td><td colspan="2">12</td><td>10</td></tr>
<tr><td>1,200세대이상</td><td>6년이상</td><td>6년미만 5년이상</td><td>5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td></tr>
<tr><td>점 수</td><td>14</td><td>12</td><td>10</td><td>8</td></tr>
</table>
※보조감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여 감리원수 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원은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산출근거</td><td colspan="3">(1) 등 급 :</td></tr>
<tr><td colspan="3">(2) 경력및실적 : 일(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td></tr>
</table>

	⑶ 비 상 주 감리원	[11]			
	㈎등급	(2)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고, 특급감리원 배치시 2점, 고급감리원 배치시 1점으로 처리함		
	㈏경력및 실적	(9)	○ 배점기준		

경 력	10년이상	10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9	7	5	3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산출근거		(1) 등 급 :		
			(2) 경력및실적 : 일(년) ※ 산출근거자료-별첨3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감리 업체 실적	(10)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1)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2)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3) 위 1), 2)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건축물 시설(2)이외에 다른 시설의 참여분야로 구분·기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배점기준		

규 모	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				
1,200세대이상	80이상	80미만 64이상	64미만 48이상	48미만 32이상	32미만
1,2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800세대미만 300세대이상	12이상	12미만 9이상	9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점 수	10	9	8	7	6

	산출근거		○ 연면적 : ㎡ ※ 산출근거자료-별첨4		
다. 신용도		10			
다.신용도	⑴입찰참가 제 한 , 영 업정지	[7]			
	㈎감리 업체	(4)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 감리원	(3)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산출근거		(1) 감리 업체 :		
			(2) 참여감리원 :		

	(2)재정상태 건실도	[3]			
	㈎ 자본 비율	(1.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배점기준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 유동 비율	(2.0)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배점기준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산출근거		(1) 자본비율 : = %		
			(2) 유동비율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 개발 실적	(4)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배점기준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기술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기술 개발 투자 실적	(4)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4	3.5	3.0	2.5	2.0

	(3) 교육 실적	(2)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산출근거	가. 개발실적 : = 건 × 배점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 %			
		다. 교육실적	- 2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점		
			- 1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점		
마. 업무중첩도		**10**			
마. 업무 중첩도	(1) 상주 감리원	(6)	○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배점기준 구 분 /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점 수 / 4 / 2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 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2) 비상주 감리원	(4)	○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구 분 / 6개소미만 / 6개소 / 7개소 / 8개소 / 9개소이상 점 수 / 4 / 3 / 2 / 1 / 0 ※ 업무중첩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산출근거	가. 상주감리원 :			
		나. 비상주감리원 : = 개소			
바. 교체빈도		**5**			
바. 교체 빈도	(1) 감리 업체	(2.5)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 배점기준 교체빈도(%) / 10%미만 / 10%이상 20%미만 / 20%이상 30%미만 / 30%이상 점 수 / 2.5 / 2 / 1.5 / 0		
	(2) 참여 감리원	(2.5)	○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산출근거	가. 감리업체 : = %			
		나. 참여감리원 : = 회 × 배점			

<table>
<tr><td colspan="2">사. 작업계획 및 기법</td><td>5</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사. 작업계획 및 기법</td><td>(1) 과업 수행 계획</td><td>(3)</td><td>ㅇ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table>
<tr><td>구 분</td><td>수</td><td>우</td><td>미</td><td>양</td><td>가</td><td>미제출</td></tr>
<tr><td>점 수</td><td>3</td><td>2.7</td><td>2.4</td><td>2.1</td><td>1.8</td><td>0</td></tr>
</table></td><td></td><td></td></tr>
<tr><td>(2) 작업 기법</td><td>(2)</td><td>ㅇ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table>
<tr><td>구 분</td><td>수</td><td>우</td><td>미</td><td>양</td><td>가</td><td>미제출</td></tr>
<tr><td>점 수</td><td>2</td><td>1.8</td><td>1.6</td><td>1.4</td><td>1.2</td><td>0</td></tr>
</table></td><td></td><td></td></tr>
<tr><td rowspan="2"></td><td rowspan="2">산출근거</td><td colspan="4">가. 과업수행계획 :</td></tr>
<tr><td colspan="4">나. 작 업 기 법 :</td></tr>
</table>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table>
<tr><th rowspan="2">평가항목</th><th rowspan="2">평가요소</th><th rowspan="2">배점</th><th rowspan="2">세 부 평 가 방 법</th><th colspan="2">평가점수</th></tr>
<tr><th>신청자</th><th>선정권자</th></tr>
<tr><td colspan="2">소 계</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가점</td><td>(1) 지 역</td><td>(1.5)</td><td>○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td><td></td><td></td></tr>
<tr><td>(2) 책 임 감리원</td><td>(1)</td><td>ㅇ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td><td></td><td></td></tr>
<tr><td rowspan="2">산출근거</td><td colspan="4">(1) 지 역 :</td></tr>
<tr><td colspan="4">(2) 책임감리원 : (자격명)</td></tr>
<tr><td rowspan="2">감점</td><td>부실 벌점</td><td>(-5)</td><td>ㅇ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td><td></td><td></td></tr>
<tr><td>산출근거</td><td colspan="4">ㅇ 부실벌점 :</td></tr>
</table>

[별지 제8호 서식]

감리비 입찰서

<table>
<tr><td rowspan="2">입
찰
내
용</td><td>건 명
(공고번호)</td><td colspan="4"></td></tr>
<tr><td>금 액</td><td colspan="4">금 원정(₩)</td></tr>
<tr><td rowspan="3">입
찰
자</td><td>회사명</td><td></td><td colspan="2">감리업등록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대표자</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able>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감리업자로서 성실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 설계(감리)업체

상 호		업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사업(법인)등록번호	

2.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A÷B (%)	기술개발투자실적(전기부문)		총매출액(전기부문)	
		합계금액(A)		합계금액(B)	
		3차년	투자액	3차년	총매출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총매출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총매출액

3.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타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별지 제10호 서식]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공사중지 확인서

1. 사업개요

사업명				공고번호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층, 동, 세대	㎡		

2. 감리업자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3. 확인신청 내용

가. 참여감리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 급	비 고
책 임				
보 조				
비상주				

나. 확인사항

사 유	비 고	확인(√)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재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2개월 이상 공사중지	공사 중지일 : 년 월 일 재공사 예정일 : 년 월 일	

위 사업이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따라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2개월 이상 공사중지에 해당함을 확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감리업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위 감리원은 현재 ( )월간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2개월 이상 공사중지 되었으므로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첨 1]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우선순위 5개업체에 한함)

※ 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구분	경력사항		경력일수	환산비	평가환산일수	평점	평가
	사업명	기간					
책임감리원							
	[부표3-1]제1호 가+나+다목 소계				일년		
	[부표3-1]제1호 라목(안전관리경력) 소계				일년		
	합 계				일년		

구분	경력사항		경력일수	환산비	평가환산일수	평점	평가
	사업명	기간					
보조감리원							
	합 계				일년		

구분	경력사항		경력일수	환산비	평가환산일수	평점	평가
	사업명	기간					
비상주감리원							
	[부표3-1]제1호 가+나+다목 소계				일년		
	[부표3-1]제1호 라목(안전관리경력) 소계				일년		
	합 계				일년		

[별첨 2]

○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 실적 (우선순위 5개업체에 한함)

※ 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연번	용 역 명	감리기간	연면적(㎡)		적용요율(%)		환 산 연면적 (㎡)	평 가
			주거시설	주거시설외	환산비율 (감리수행기간/전체감리기간)	이행비율 (도급비율)		
합 계								

※ 수행실적은 건별로 전체 작성

[별첨 3]

감 리 원 배 치 계 획 표

○ 용 역 명 :

○ 전기공사기간 : 20 . . ~20 . . (개월간)

구분	성명	등급	2018년						2019년												2020년						개월	비고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책임	○○○	특급																										
																											21	예시
보조	○○○	-																										
	○○○	-																										
비상주	○○○	-																										

※ 참여감리원의 명단(성명)을 기입하여야 함.

[별첨 4]

감리자 선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여수시 공고 제 - 호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 점 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 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각 협회에 통보하고 실격처리되며,

참여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겠으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참고자료 1】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1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3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4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5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참 고 사 항>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참고자료2】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

구 분	사업수행능력 배점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배점	산식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800세대 미만	30	70	**7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55	82.95%
1,200세대 미만	50	50	**5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35	82.95%
1,200세대 이상	70	30	**30 -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15	72.95%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여수시 고시 제2026 - 5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20일

여수시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시도	25호선	봉두~상봉	소라면 봉두리	38,701㎡	소라면 봉두리 산259-3	소라면 봉두리 산374-1	-	1.727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과 이해관계인 변경 (붙임 참조)

3. 사업내용: 도로 개설 L=1,727m, B=8m(A=38,701㎡)

4. 사업 기간 : 2022. 9. 6. ~ 2026. 12. 31.

5. 사업시행자: 여수시장(도로과)

6. 설계도서 등 관계도서의 열람 : 여수시청 도로과(☏061-659-2992, 사업 시행 기간 내)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 : 붙임 참조(변경)

첨부서류	지형도면

210㎜×297㎜(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붙임 2>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산259-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칭: 소라면 봉두~상봉 시도25호선(3구간) 개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가. 규모: L=1,727m, B=8m

 나. 면적: 38,70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여수시장

 나.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22. 9. 6. ~ 2026.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게재생략 (도로구역결정 세목조서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해당없음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지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비고
1	봉두	1445-1	도	133	133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2	봉두	971-3	잡	75	75	여수시	공				”
3	봉두	971-1	잡	20	20	여수시	공				”
4	봉두	971-2	잡	6	6	여수시	공				”
5	봉두	산378-2	임	458	458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산***-*	유한회사바*개*				기정
	봉두	산378-2	임	458	458	여수시	공				변경
6	봉두	967-2	답	132	132	여수시	공				변경없음
7	봉두	967-3	답	56	56	여수시	공				”
8	봉두	967-4	답	440	440	여수시	공				”
9	봉두	1424-1	천	12	12	국토교통부	국				”
10	봉두	1424-4	천	115	115	국토교통부	국				”
11	봉두	1424-6	천	285	285	국토교통부	국				”
12	봉두	1424-2	천	537	537	국토교통부	국				”
13	봉두	1424-8	천	692	692	국토교통부	국				”
14	봉두	1424-10	천	389	389	국토교통부	국				”
15	봉두	1424-11	천	7	7	국토교통부	국				”
16	봉두	1424-12	천	1	1	국토교통부	국				”
17	봉두	965-4	답	40	40	여수시	공				”
18	봉두	965-5	답	30	30	여수시	공				”
19	봉두	965-7	답	349	349	여수시	공				”
20	봉두	1447-1	도	687	687	국토교통부	국				”
21	봉두	1447-3	도	201	201	국토교통부	국				”
22	봉두	965-8	답	168	168	여수시	공				”
23	봉두	965-6	답	40	40	율촌면 반월리 ***	밀양*씨규정 공파*촌반월 흥자*자종중				기정
	봉두	965-6	답	40	40	여수시	공				변경
24	봉두	963-3	전	1,323	1,323	여수시	공				변경없음
25	봉두	962-3	답	293	293	여수시	공				”
26	봉두	962-2	답	84	84	서울 성북구 길음동 ***-*	박*경				”
27	봉두	961-1	전	47	47	여수시	공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지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비고
28	봉두	산374-2	임	336	336	여수시	공				”
29	봉두	산378-5	임	3,545	3,545	여수시	공				”
30	봉두	1446	도	66	66	국토교통부	국				”
31	봉두	산378-4	임	37	37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산***-*	유한회사바*개*	서울 종로구 연지동 ***-**	서울보*보*주식 회사	근저당권	기정
	봉두	산378-4	임	37	37	여수시	공				변경
32	봉두	산388-13	임	448	24	여수시	공				변경없음
33	봉두	산388-22	임	4,460	4,460	여수시	공				”
34	봉두	산388-1	임	30,863	113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산***-*	유한회사바*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	한국전*공사	지상권	”
35	봉두	963-2	전	18	18	여수시	공				”
36	봉두	960-3	전	428	428	여수시	공				”
37	봉두	958-1	도	18	18	여수시	공				”
38	봉두	928-3	잡	11	11	여수시	공				”
39	봉두	928-4	잡	34	34	여수시	공				”
40	봉두	928-1	도	188	175	여수시	공				”
41	봉두	1428-1	도	140	140	국토교통부	국				”
42	봉두	929-4	전	441	441	여수시	공				”
43	봉두	929-1	도	221	221	여수시	공				”
44	봉두	929-3	전	43	43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산***-*	하*호				기정
						서울특별시강동구고덕로80길99,***동***호(상일동,고덕센트럴아이파크)	하*				
	봉두	929-3	전	43	43	여수시	공				변경
45	봉두	941-1	도	112	112	여수시	공				변경없음
46	봉두	930-3	전	13	13	여수시	공				”
47	봉두	930-4	전	735	735	여수시	공				”
48	봉두	930-1	도	405	405	여수시	공				”
49	봉두	939-1	도	31	31	여수시	공				”
50	봉두	938-1	도	31	31		박*윤				기정
	봉두	938-1	도	31	31		미등기		박*윤	토지대장상소유주	변경
51	봉두	937-1	전	23	23	여수시	공				변경없음
52	봉두	1426-1	도	83	83	국토교통부	국				”
53	봉두	931-4	전	1	1	여수시	공				”
54	봉두	931-1	도	23	7	여수시	공				”
55	봉두	936-1	전	130	130	여수시	공				”
56	봉두	산388-9	도	701	587	여수시	공				”
57	봉두	산388-24	임	197	197	여수시	공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지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비고
58	봉두	932-1	전	364	190	여수시	공				기정
	봉두	932-3	전	196	196	여수시	공				변경
59	봉두	932-2	답	8	8	여수시	공				변경 없음
60	봉두	1425	도	83	83	국토교통부	국				”
61	봉두	933-2	전	86	86	여수시	공				”
62	봉두	933-1	전	77	77	여수시	공				”
63	봉두	922-6	답	161	161	소라면 봉두리 ***	박*래				기정
						여수시 신기동**-*	김*호				
	봉두	922-6	답	161 * (1322/3091)	161 * (1322/3091)	소라면 봉두리 ***	박*래				변경
				161 * (1769/3091)	161 * (1769/3091)	여수시	공				
64	봉두	922-4	잡	103	103	소라면 봉두리 ***	박*래				기정
						여수시 신기동**-*	김*호				
	봉두	922-4	잡	103 * (1322/3091)	103 * (1322/3091)	소라면 봉두리 ***	박*래				변경
				103 * (1769/3091)	103 * (1769/3091)	여수시	공				
65	봉두	922-5	답	456	456	여수시	공				변경 없음
66	봉두	922-1	도	66	66	여수시	공				”
67	봉두	921-4	답	183	183	여수시	공				”
68	봉두	921-1	도	203	203	여수시	공				”
69	봉두	921-3	답	26	26	여수시	공				”
70	봉두	919-2	답	35	35	여수시	공				”
71	봉두	919-3	답	33	33	여수시	공				”
72	봉두	919-1	답	358	358	여수시	공				”
73	봉두	산306-4	임	543	543	여수시	공				”
74	봉두	산306-5	임	959	959	여수시	공				”
75	봉두	960-1	도	110	36	여수시	공				”
76	봉두	958-3	전	199	199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동 266 라온유아파트 ***-****	심*규				기정
	봉두	958-3	전	199	199	여수시	공				변경
77	봉두	958-2	전	84	84	여수시	공				변경 없음
78	봉두	956-1	잡	27	27	여수시	공				”
79	봉두	956-2	잡	123	123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	유한회사바나개발				기정
	봉두	956-2	잡	123	123	여수시	공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지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비고
80	봉두	944-1	전	61	61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산***-*	하*호				기정
						서울특별시강동구고덕로80길99,***동***호(상일동,고덕센트럴아이파크)	하*				
	봉두	944-1	전	61	61	여수시	공				변경
81	봉두	1427-1	도	289	289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82	봉두	943-3	대	72	72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산***-*	하*호				기정
						서울특별시강동구고덕로80길99,***동***호(상일동,고덕센트럴아이파크)	하*				
	봉두	943-3	대	72	72	여수시	공				변경
83	봉두	943-2	대	21	21	여수시	공				변경없음
84	봉두	943-1	도	28	28	여수시	공				"
85	봉두	942-3	대	19	19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운암길 ***-**	유한회사 바*개*				기정
	봉두	942-3	대	19	19	여수시	공				변경
86	봉두	942-2	대	23	23	여수시	공				변경없음
87	봉두	942-1	도	11	11	여수시	공				"
88	봉두	941-2	대	93	93	여수시	공				"
89	봉두	941-3	대	6	6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	박*래				"
90	봉두	941-4	대	16	16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	박*래				"
91	봉두	939-3	전	86	86	경상남도 진해시 태평동 17 미래골든빌 ***	정*				기정
	봉두	939-3	전	86	86	경상남도 진해시 태평동 17 미래골든빌 ***	정*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호	오광기업	가등기권	변경
92	봉두	939-2	전	59	59	여수시	공				변경없음
93	봉두	산388-19	임	27	27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운암길 ***-**	유한회사바*개*				기정
	봉두	산388-19	임	27	27	여수시	공				변경
94	봉두	산388-14	임	20	20	여수시	공				변경없음
95	봉두	938-3	답	92	92	여수시	공				"
96	봉두	938-2	답	33	33	여수시	공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지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비고
97	봉두	937-2	전	85	85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산***-*	하*호				기정
						서울특별시강동구고덕로80길99,***동***호(상일동,고덕센트럴아이파크)	하*				
	봉두	937-2	전	85	85	여수시	공				변경
98	봉두	936	전	138	138	여수시	공				
99	봉두	산388-15	임	295	295	여수시 소호동 424 프레지던트 ***-****	박*훈				기정
	봉두	산388-15	임	295	295	여수시	공				변경
100	봉두	산388-20	임	922	922	여수시	공				변경없음
101	봉두	산388-21	임	36	36	여수시	공				”
102	봉두	935-1	도	21	21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	정*근	광주시 동구 금남로**가 *-**	주식회사광*은*	근저당권	기정
	봉두	935-1	도	21	21	경남 산청군 삼장면 서당길 ***	정*근	서울 종로구 연지동***-**(여수지점)	대*보*보*주식회사	가압류	변경
								광주 동구 금남로*가*-**	주식회사**은행	근저당권	
								여수시 소라면 운암길**	이*기	채무자	
103	봉두	935-5	잡	41	41	여수시	공				변경없음
104	봉두	935-3	전	16	16	여수시	공				”
105	봉두	935-4	전	33	33	여수시	공				”
106	봉두	1419-4	도	680	680	국토교통부	국				”
107	봉두	1419-1	도	153	153	국토교통부	국				”
108	봉두	1419-2	도	98	98	국토교통부	국				”
109	봉두	920-4	답	377	377	여수시	공				”
110	봉두	920-1	도	211	211	여수시	공				”
111	봉두	920-3	답	4	4	여수시	공				”
112	봉두	917-7	대	8	8	여수시	공				”
113	봉두	917-9	대	17	17	화양면 안포리 ***	김*호				기정
	봉두	917-9	대	17	17	여수시	공				변경
114	봉두	산306-2	도	593	232	여수시	공				변경없음
115	봉두	산305-3	임	535	535	여수시	공				”
116	봉두	산305-1	도	1,375	581	여수시	공				”
117	봉두	산305-4	임	1,659	1,659	여수시	공				”
118	봉두	산305-2	임	211	211	여수시	공				”
119	봉두	산259-13	임	1,262	1,262	여수시	공				”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지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비고
120	봉두	산259-2	임	43,932	151	율촌면 신풍리*	사회복지법인 애*원				변경 없음
121	봉두	915-3	임	516	38	율촌면 신풍리*	사회복지법인 애*원				”
122	봉두	산259-4	임	4,023	4,023	여수시	공				”
123	봉두	917-10	목	2	2	여수시	공				”
124	봉두	917-8	목	2	2	여수시	공				”
125	봉두	917-1	도	209	163	여수시	공				”
126	봉두	산259-3	도	3,387	2,416	여수시	공				”
127	봉두	산259-16	임	42	42	여수시	공				”
128	봉두	산259-15	임	455	86	여수시	공				”
129	봉두	산259-14	임	77	77	여수시	공				”

붙임 2] 위치도 및 지형도면(변경없음)

□ 도로구역 위치도

□ 지형도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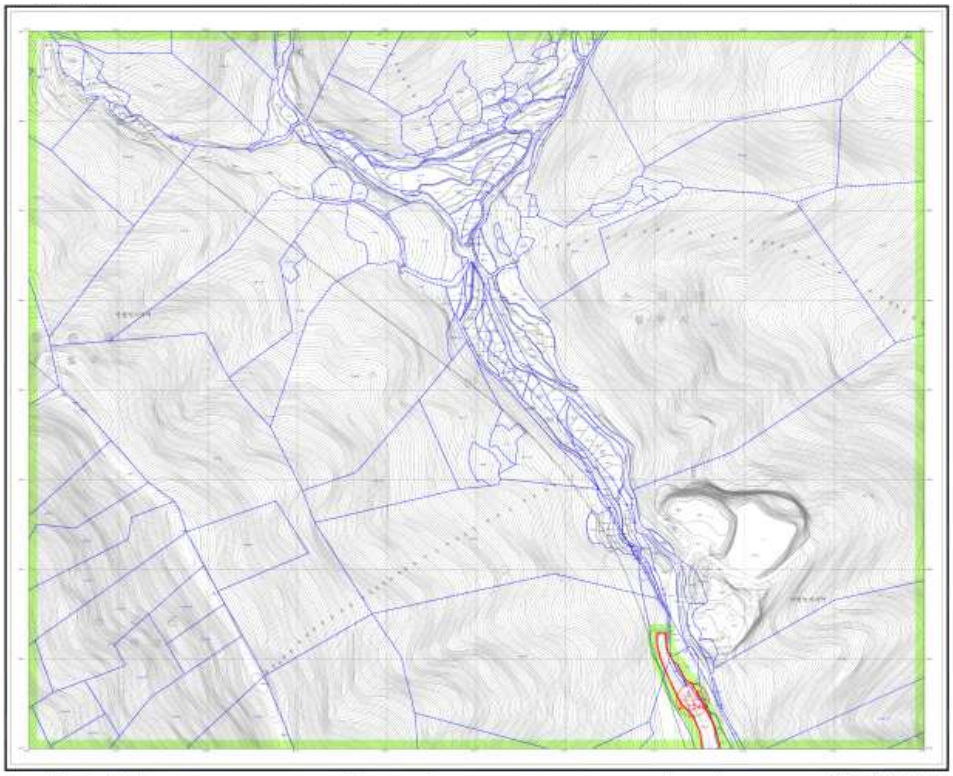

□ 지형도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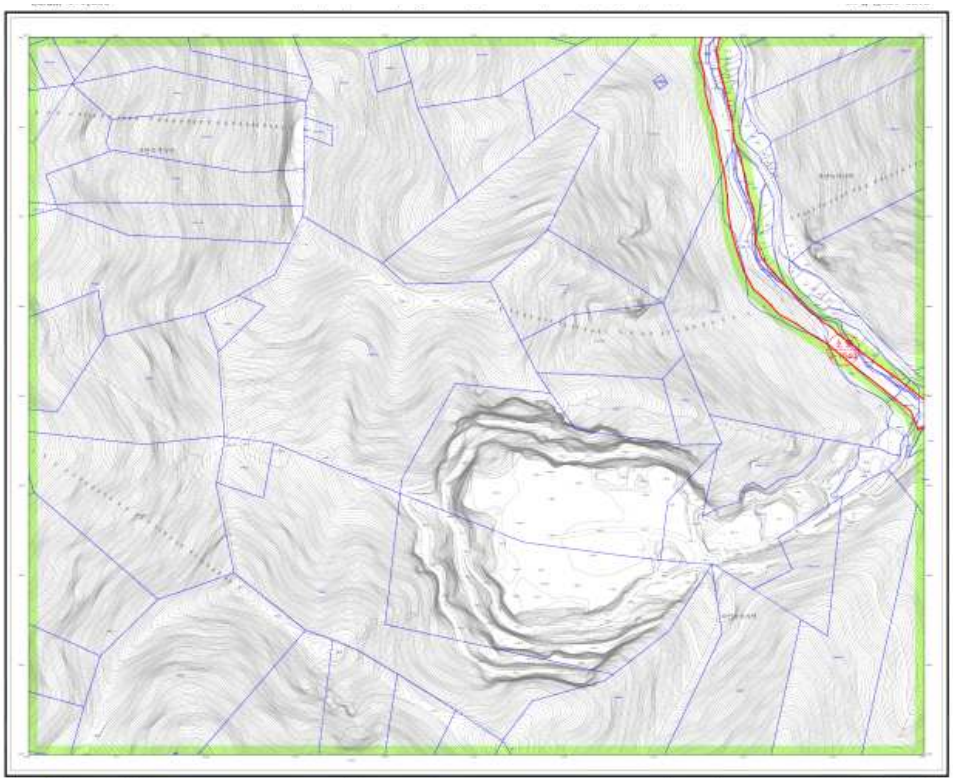

□ 지형도면(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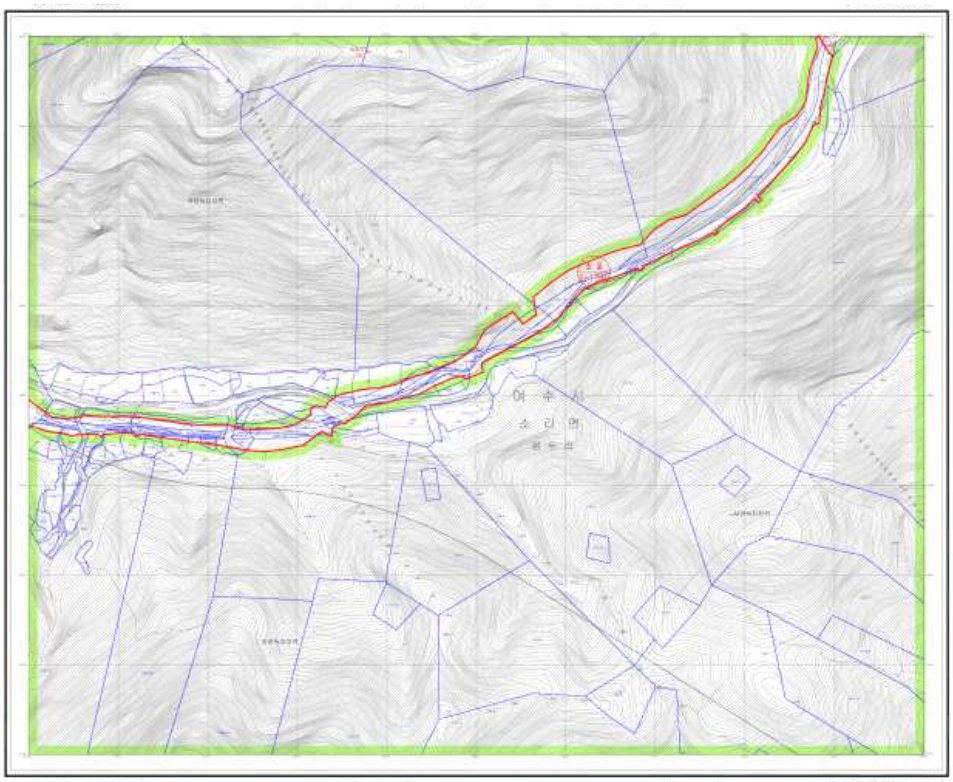

여수시공고 제2026-504호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상암동 읍동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2. 19.

여 수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상암동 읍동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나. 사업의위치: 여수시 상암동 1275-4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자: 여수시장(여수시 시청로 1)
2. 공고내용
   가. 공고내용 : 손실보상협의 요청 공문 송달
   나. 공고일자 : 2026. 2. 19.
   나. 공고기간 : 2026. 2. 19. ~ 3. 5.(15일간)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손실보상협의
   가.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
   나. 협의장소 : 여수시 도로과(여수시 시청동1길 23)
   다. 보상방법 및 절차 :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좌입금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도로과 도로행정팀(☎061-659-4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 내역별첨

○ 토지

소재지	지번 (편입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여수시 상암동	1238-7	도	10*18/341	여천군 삼일읍 상암리 ***	장*문	-	-

여수시 공고 제2026-530호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공고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공고합니다.

2026. 2. 19.

여 수 시 장

1. 사업의 명칭: 액화탄산 제조공장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성명 주소

가. 성 명: 케이앤에이치특수가스(주) 대표 장갑종

나. 주 소: 여수시 여수산단2로 223-84, 금호 TDF연소 제2열병합발전소 주19동 5층(화치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전라남도 여수시 화치동 1293-4번지

나. 면 적: 4,615.9㎡

4. 준공인가연월일: 2026. 2.19.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해당없음

6. 관계도서는 여수시 도시계획과(☎659-401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여수시 공고 제2026-551호

2026년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여 수 시 장

지원개요

1. 융자규모 : 200억 원

※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대출 취급 기관 : 9개 협약 은행(여수시 소재 본점 및 지점)

○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대출 구비서류, 대출금리, 이자불입, 상환방법, 담보 및 보증서 제공 등 대출 취급은 은행별 여신 규정에 따름

3.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수 : (10인 미만)광업·제조·건설·운수업, (5인 미만)도소매·음식점·서비스·숙박 등

– 연 매출액 : (15억 원 미만)음식점·숙박·학원 등, (60억 원 미만)도소매 등

◆ **지원 제외 및 환수 대상**

-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외 대상) 해당 업체【별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 기존 추천업체로서 상환종료일 기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사업장을 휴.폐업 또는 여수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업체로 관리 중인 경우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사업자 및 업체에 한함)
- 그밖에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에서 요청한 증빙자료 및 관련 서류제출 등 의무 사항 포함)

4. 지원내용

○ 융자추천 한도 :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연 4% 지원(2년간)

5. 융자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연중(매 분기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 1분기: 3월4일(수)~, 2분기: 5월6일(수)~
  3분기: 8월4일(화)~, 4분기: 11월3일(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처 :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 주 소 :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내
- 연락처 :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
  ☎ (061)659-3607, FAX (061)659-5816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 (061)659-5765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구 분	서 류 명	취급기관
작성서류	① **【서식1】이차보전 지원 신청서** **【서식2】사업계획서** **【서식3】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경제일자리과 비치, 여수시 홈페이지(고시공고)
구비서류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방문) 세무서, 시청 민원지적과, 읍면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 정부24 또는 국세청 홈택스
	③ **매출 증빙서류(2023년 ~ 2025년)**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간이과세자) 제외	
	④ **국세·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⑤ **상시 근로자수 증빙서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인 사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세무서 (온라인)국세청 홈택스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 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신청절차

대출 및 보증서 발급여부 상담 (업체→금융기관, 전남신용보증재단) ⇒ 신청서 제출 (업체→시) ⇒ 서류심사 및 지원결정 (시→업체) ⇒

융자 추천 (시→금융기관) ⇒ 대출 실행 (금융기관, 업체) ⇒ 대출실행 통보 (금융기관 → 시) ⇒ 이차보전금 지급 사후관리 (시, 금융기관)

6. 지원기업 선정

○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선정

○ 융자추천 : 신청 후 15일 이내 추천

※ 기 지원업체의 경우 상환종료일로부터 1년간 선정 제외
- 지원종료 1년 후 신청 가능(단, 신청 시점 예산 상황에 따라)

7. 대출취급 기한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보증) 절차 진행 중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변경 승인을 득한 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8. 기타사항

○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및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지원자금을 회수함

○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자금대출 승인 후 기한연장,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변경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금 변경신고 신청서【서식 4】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지원중지 및 환수

○ 신청서는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음

※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 분야별 정보 ➡ 기업경제 ➡ 기업정보/지원정책 ➡ 자금지원

○ 기타 사항은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061-659-3607),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061-659-5765)로 문의

【별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제4조 관련)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표준산업분류	업 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서식 1】 접수번호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

상 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핸드폰)		전화번호(사업장)	
개업연월일		상시근로자	명
업태		종목	
사업장 소재지			

융자금 대 출 (신청)현황	신청금액	
	(희망)금융기관	
	대출 담보내용	□ 보증서 □ 부동산 □ 신용
	이차보전 중복지원 여부	□ 전남신용보증재단(기금) □ 기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없음
	자금용도	□ 경영개선자금(운전자금) □ 시설개선자금(기계·설비 설치, 인테리어 등) □ 기타( )

□ **환수조치 확인** : 본인은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내용 및 증빙자료 일체가 사실이며, 부정 수급이 확인되어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절차)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여수시장 귀하

구비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1부 3. 국세·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4. 상시 근로자수 증빙서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인 사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상 호		
사 업 기 간		
자 금 용 도		□ 경영개선자금(운전자금) □ 시설개선자금(기계·설비 설치, 인테리어 등) □ 기타( )
자금 사용 계획	계	
	운전자금	
	기계설비	
	인테리어	
	물품구입	
	기타	
자금 조달 방법	자기자본	
	시 융자	
	기타	
융자금 상환계획		2년거치 일시상환
기타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본인확인,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지원 추천, 각종 확인서, 각종 지급금 송금 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제출 후 준영구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또한 삭제 요청시 여수시는 개인의 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본인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사업자등록, 주소, 체납여부 확인동의 등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제출 후 준영구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여수센터, 전남신용보증재단여수지점, 신용보증기금 여수지점, 협약체결 금융기관, 여수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신청업체의 중복지원여부 조회 및 이차보전 추천서 통보, 이차보전 지원기간 동안 자격여부 조회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사업장주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 제출 후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상 호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년 월 일

※ 본인은 업체 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여수시장, 전남신용보증재단(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기관 귀하

【서식 4】

소상공인 지원자금 변경신고(승인) 신청서

상　　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핸드폰)		전화번호(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변경사유	* 상세하게 기재		

변　경　전	변　경　후

위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 자금 변경신고(승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여수시장 귀하

※ 첨부서류 : (변경된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각 1부

【서식 5】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대출실행 통지서

1. 추천업체

자 금 명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상 호		성명(대표자)	
추천일자		추천금액	

2. 대출 실행내용

대 출 일	
대출금액	
대출기간	부터 까지
적용금리	% (이차보전 적용 후 금리)
담보내용	□ 보증서 □ 부동산 □ 신용 □ 기타

위와 같이 대출이 실행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명 (인)

(대출 담당자 성명 / 연락처 / 내선)

※ 대출 실행일에 FAX 전송요청(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전화 061-656-3607, 팩스 061-659-5816)

여수시장 귀하

여수시 공고 제2026 - 555호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 2. 12.

여 수 시 장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	사용기간
여수시청 (섬발전지원과)	여수시 남면 안도리 936-1번지 일원 공유수면	여객선 접안시설 보수공사	823㎡	허가일로부터 30년

2. 공람장소, 공람기간
   -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 공람기간: 2026. 2. 12. ~ 2026. 2. 27.(15일간)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 제출기간: 2026. 2. 12. ~ 2026. 2. 27.(15일간)
   -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 제 출 처: 등기우편(여수시 신월로 648, 4층 해양정책과)
     전자우편(beagywns@korea.kr)
   - ❍ 담 당 자: 공유수면관리팀 행정8급 배효준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659-397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남산바위
안도해수욕장길
안도해수욕장길
안도남쪽
바다펜션
안도일번지
펜션민박
여수남면우체국
안도출장소
안도펜션민박
안도리복지관
안도안길
해변민박식당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의견	
	기타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여수시장(해양정책과)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여수시 공고 제2026 - 560호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 2. 12.

여 수 시 장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	사용기간
여수시청 (섬발전지원과)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827-8번지 일원 공유수면	부두 및 공동작업장 확충	3,720㎡ 배수관 24EA (500㎜ 3EA, 450㎜ 1EA, 300㎜ 4EA, 100㎜ 16EA)	허가일로부터 30년

2. 공람장소, 공람기간
   -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 공람기간: 2026. 2. 12. ~ 2026. 2. 27.(15일간)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 제출기간: 2026. 2. 12. ~ 2026. 2. 27.(15일간)
   -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 제 출 처: 등기우편(여수시 신월로 648, 4층 해양정책과)
     전자우편(beagywns@korea.kr)
   - ❍ 담 당 자: 공유수면관리팀 행정8급 배효준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659-397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의견	
	기타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여수시장(해양정책과)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여수시 공고 제2026-567호

보상계획 열람(변경) 공고

여수시에서 시행하는「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실시하고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손실보상계획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2. 13.

여 수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공사
- 사업시행자: 여수시장
- 사 업 규 모: L=5.14km, B=16~21m(146,203.3㎡)
- 사 업 기 간: 2020. 9. 21. ~ 2028. 12. 31.

2. 열람공고기간: 2026. 2. 23. ~ 3. 10.(16일간)

3. 열람방법: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여수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우리 시 도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여수시 홈페이지 주소: www.yeosu.go.kr 게재

4. 보상계획 변경사유: 지적재조사 및 분할 결과를 반영한 면적 및 일부 선형 변경

5. 보상시기: 추후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

6.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은 현금보상이며,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보상금을 계좌 입금합니다.
-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시·도지사 및 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2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 추천 감정평가업자

○ 상　　호 :

○ 주　　소 :

토지 소재지	편입 지번	편입면적 (㎡)	소 유 자		인 (서명)	연락처 (휴대전화 번호 등)	비고
			주 소	성 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할 예정입니다.

7. 기　　타

-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나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규정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도로과(☎061-659-4066)로 문의바랍니다.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공사 편입 토지 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	편입(분할 후)		지목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번	면적 (㎡)			주소	성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82필지												
1	율촌면 산수리	115-1	288	115-9	18중 1/2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유*조(류*조)				
2	율촌면 산수리	1487	2241	1487-1	63	도로	도로	일부 무상귀속 대상 52㎡	국토교통부				
3	율촌면 산수리	1487	2241	1487-3	648	도로	도로	일부 무상귀속 대상 608㎡	국토교통부				
4	율촌면 산수리	1487	2241	1487-7	47	도로	도로	일부 무상귀속 대상 41㎡	국토교통부				
5	율촌면 산수리	1487	2241	1487-9	23	도로	도로	유상매입 대상	국토교통부				
6	율촌면 산수리	143-4	169	143-4	169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	주*순				
7	율촌면 산수리	416	846	416-1	327	답	일부 도로 일부 답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봉두*길 **-*	황*엽				
8	율촌면 산수리	417-3	30	417-3	30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	김*현				
9	율촌면 산수리	산256-13	1638	산256-21	60중 165/1638	임야	임야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번길 **, ***동 ***호 (동상동, 롯데캐슬가야아파트)	하*숙				
9-2	율촌면 산수리	산256-13	1638	산256-21	60중 365/1638	임야	임야	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산로*번길 **, 601호(남천동, 화남밴빌라)	김*아				
10	율촌면 산수리	1482-10	14661	1482-38	84	구거	구거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2길 33	한국농어촌공사				
10-1	율촌면 산수리	1482-10	14661	1482-40	152	구거	구거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2길 33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구분지상권	
11	율촌면 산수리	122-3	26	122-6	18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	주*렬				
12	율촌면 산수리	122-2	132	122-8	2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길 **(국동)	이*순				
13	율촌면 산수리	118-1	486	118-5	36	도로	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대곡리 **	이*현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공사 편입 토지 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	편입(분할 후)		지목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번	면적 (㎡)			주소	성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4	율촌면 산수리	118-1	486	118-6	140	도로	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대곡리 **	이*현				
15	율촌면 산수리	132-3	26	132-3	26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	주*배				
16	율촌면 산수리	132-2	212	132-2	212중 72/8379	도로	도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암동 ***-**	황*인				
16-1	율촌면 산수리	132-2	212	132-2	212중 16/8379	도로	도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길 **, ***호(서초동, 동신아트빌라)	황*원				
16-2	율촌면 산수리	132-2	212	132-2	212중 16/8379	도로	도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로 **, ****동 ****호(동백동, 백현마을한라비발디)	황*국				
16-3	율촌면 산수리	132-2	212	132-2	212중 16/8379	도로	도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마을로 **, ****동 ****호(상현동, 광교자이더클래스)	황*룡				
17	율촌면 산수리	산270-1	99	산270-1	99	도로	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하사리 **	장*수				
18	율촌면 산수리	135-2	53	135-2	53	도로	도로		사정(미등기)	이*금		토지대장상 소유자	
19	율촌면 산수리	134-2	595	134-2	595	도로	도로	미협의	국토교통부				
20	율촌면 산수리	134-4	159	134-4	159	도로	도로	미협의	국토교통부				
21	율촌면 산수리	산271	951	산271-2	34중 330/951	임야	임야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번길 **-*(연산동)	김*라				
21-1	율촌면 산수리	산271	951	산271-2	34중 324/951	임야	임야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번길 **, ***동 ***호(연산동, 현대아파트)	박*영				
21-2	율촌면 산수리	산271	951	산271-2	34중 99/951	임야	임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번길 *, 지*호(은행동)	임*정				
21-3	율촌면 산수리	산271	951	산271-2	34중 132/951	임야	임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 ***동 ****호(양정동,현대아파트)	홍*연				
21-4	율촌면 산수리	산271	951	산271-2	34중 66/951	임야	임야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로 **, ***동 ****호(장전동, 래미안장전)	신*경				
22	율촌면 산수리	산270-11	920	산270-19	14중 67/920	임야	임야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로 ***, ***동 ****호(삼계동, 화정마을부영아파트)	권*진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공사 편입 토지 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	편입(분할 후)		지목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번	면적 (㎡)			주소	성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2-2	율촌면 산수리	산270-11	920	산270-19	14중 93/920	임야	임야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해빛*로 ** ***동 ***호(일광 한신더휴 센트럴포레 2단지)	최*미				
23	율촌면 산수리	산270-2	298	산270-2	298	도로	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하사리 **	장*수				
24	율촌면 산수리	417-1	10	417-1	10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	김*현				
25	율촌면 산수리	419	377	419-5	341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	위*기				
26	율촌면 산수리	415-4	13	415-4	13	도로	도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	김*수				
27	율촌면 산수리	415-3	2	415-3	2	도로	도로		사정(미등기)	위*량		토지대장상 소유자	
28	율촌면 산수리	400-3	179	400-9	162	답	답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길 *** ***동 ****호(창동, 동아청솔아파트)	김*준				
29	율촌면 산수리	300-5	13	300-5	13중 1/4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	대**량				
29-1	율촌면 산수리	300-5	13	300-5	13중 1/4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	대**량				
29-2	율촌면 산수리	300-5	13	300-5	13중 1/4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	대**구				
29-3	율촌면 산수리	300-5	13	300-5	13중 1/4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	대**량				
30	율촌면 산수리	297-1	8688	297-6	1727중 1542/1727	임야	임야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왕바위길 ***	산*리				
31	율촌면 산수리	산280-1	793	산280-13	786	도로	도로		사정(미등기)	위*현		토지대장상 소유자	
32	율촌면 산수리	413-2	215	413-2	215	도로	도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	위*기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구분지상권	
33	율촌면 산수리	412-1	43	412-1	43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	김*순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구분지상권	
34	율촌면 산수리	411-4	16	411-4	16	도로	도로	미협의	국토교통부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공사 편입 토지 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	편입(분할 후)		지목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번	면적 (㎡)			주소	성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5	율촌면 산수리	400-4	72	400-4	72	도로	도로	미협의	기획재정부				
36	율촌면 산수리	399-2	152	399-2	152	도로	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동 ***	허*덕				
37	율촌면 산수리	398-2	16	398-2	16	도로	도로		사정(미등기)	위*근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	토지대장상 소유자	
38	율촌면 산수리	317-1	10	317-9	4	답	답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번지	김*수				
39	율촌면 산수리	317-4	36	317-4	36중 1/2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	정*현				
40	율촌면 산수리	397-4	56	397-4	56	도로	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금곡동 **	이*준				
41	율촌면 산수리	396-2	254	396-8	199	도로	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대수동 **-*	양*련(양*연)				
42	율촌면 산수리	396-4	169	396-4	169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	위*량				
43	율촌면 산수리	1499	6149	1499-3	91	도로	도로	일부 무상귀속 대상 82㎡	국토교통부				
44	율촌면 산수리	1499	6149	1499-5	388	도로	도로	일부 무상귀속 대상 375㎡	국토교통부				
45	율촌면 산수리	1499	6149	1499-7	507	도로	도로	일부 무상귀속 대상 406㎡	국토교통부				
46	율촌면 산수리	384-2	112	384-5	19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봉두*길 **-*	김*수				
47	율촌면 산수리	322-2	109	322-7	47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	위*민				
48	율촌면 산수리	324-4	446	324-7	34중 27/446	대	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길 **, ***동 ****호(중계동, 중계현대6차아파트)	양*열				
48-1	율촌면 산수리	324-4	446	324-7	34중 196/446	대	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길 **, **동 ***호(오금동, 현대아파트)	위*권				
48-2	율촌면 산수리	324-4	446	324-7	34중 223/446	대	대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서부로 ****	김*순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공사 편입 토지 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	편입(분할 후)		지목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번	면적 (㎡)			주소	성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9	율촌면 산수리	324-5	10	324-5	10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	위*시				
50	율촌면 산수리	325-4	66	325-4	66	도로	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행동 **-*	양*련				
51	율촌면 산수리	304-4	40	304-4	40	도로	도로		사정(미등기)	위*		토지대장상 소유자	
52	율촌면 산수리	300-3	13	300-3	13중 1/4	임야	답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	위*구				
52-1	율촌면 산수리	300-3	13	300-3	13중 1/4	임야	답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	위*량				
52-2	율촌면 산수리	300-3	13	300-3	13중 1/4	임야	답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	위*량				
52-3	율촌면 산수리	300-3	13	300-3	13중 1/4	임야	답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	위*량				
53	율촌면 산수리	300-4	443	300-4	443중 1/4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	대**량				
53-1	율촌면 산수리	300-4	443	300-4	443중 1/4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	대**량				
53-2	율촌면 산수리	300-4	443	300-4	443중 1/4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	대**구				
53-3	율촌면 산수리	300-4	443	300-4	443중 1/4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	대**량				
54	율촌면 산수리	302-3	711	302-3	711중 1/4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	위*구				
54-1	율촌면 산수리	302-3	711	302-3	711중 1/4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	위*량				
54-2	율촌면 산수리	302-3	711	302-3	711중 1/4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	위*량				
54-3	율촌면 산수리	302-3	711	302-3	711중 1/4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	위*량				
55	율촌면 산수리	302-2	63	302-2	63중 1/4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	위*구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공사 편입 토지 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	편입(분할 후)		지목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번	면적 (㎡)			주소	성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5-1	율촌면 산수리	302-2	63	302-2	63중 1/4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	위*량				
55-2	율촌면 산수리	302-2	63	302-2	63중 1/4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	위*량				
55-3	율촌면 산수리	302-2	63	302-2	63중 1/4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	위*량				
56	율촌면 산수리	293-1	16	293-1	16	전	도로		미등기	위*환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	토지대장상 소유자	
57	율촌면 산수리	293-2	307	293-2	307	도로	도로		사정(미등기)	위*근		토지대장상 소유자	
58	율촌면 산수리	293-4	169	293-4	169	도로	도로		사정(미등기)	위*근		토지대장상 소유자	
59	율촌면 산수리	295-1	36	295-1	36	도로	도로		사정(미등기)	위*근		토지대장상 소유자	
60	율촌면 산수리	296-4	56	296-4	56	도로	도로		사정(미등기)	위*근		토지대장상 소유자	
61	율촌면 산수리	296-1	1	296-1	1	도로	도로		사정(미등기)	위*		토지대장상 소유자	
62	율촌면 산수리	297-2	1220	297-2	1220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왕바위길 ***	산*리				
63	율촌면 산수리	297-4	13	297-4	13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왕바위길 ***	산*리				
64	율촌면 산수리	241-3	16	241-3	16	도로	도로	미협의	국토교통부				
65	율촌면 산수리	241-2	53	241-2	53	도로	도로	미협의	국토교통부				
66	율촌면 산수리	243-1	93	243-1	93중 1/3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	김*석				
66-1	율촌면 산수리	243-1	93	243-1	93중 1/3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	김*식				
66-2	율촌면 산수리	243-1	93	243-1	93중 1/3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	김*현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공사 편입 토지 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	편입(분할 후)		지목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번	면적 (㎡)			주소	성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7	율촌면 산수리	239-2	430	239-2	430	도로	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운평리 ***	정*봉				
68	율촌면 산수리	239-4	53	239-4	53	도로	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운평리 ***	정*봉				
69	율촌면 산수리	1490	2109	1490-2	65	구거	구거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2길 33	한국농어촌공사				
70	율촌면 산수리	238-3	172	238-3	172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	김*석				
71	율촌면 산수리	238-2	499	238-2	499	도로	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동외동 ***	정*례(정*예)				
72	율촌면 산수리	237-3	7	237-3	7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	위*종				
73	율촌면 산수리	297-5	106	297-5	106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왕바위길 ***	산*				
74	율촌면 산수리	243-7	40	243-7	40중 1/3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	김*석				
74-1	율촌면 산수리	243-7	40	243-7	40중 1/3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	김*식				
74-2	율촌면 산수리	243-7	40	243-7	40중 1/3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	김*현				
75	율촌면 산수리	239-5	132	239-5	132	도로	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운평리 ***	정*봉				
76	율촌면 산수리	1501	801	1501-2	159	도로	도로	일부 무상귀속 대상 92㎡	국토교통부				
77	율촌면 산수리	산269-14	331	산269-15	123중 165/331	임야	임야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 ****호(하단동, 섬진아파트2차)	어*아				
78	율촌면 산수리	419	36	419-6	30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	위*기				
79	율촌면 산수리	242-4	5	242-4	5	전	전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서부로 ****	유*숙				
80	율촌면 산수리	242-3	3	242-3	3	대	대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서부로 ****	유*숙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공사 편입 토지 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	편입(분할 후)		지목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번	면적 (㎡)			주소	성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1	율촌면 산수리	243-5	939	243-10	3	답	답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봉두*길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봉두*길 **-**	광산김씨*우공문중 (대표자 김*철)				
82	율촌면 산수리	401	1451	401-1	1중 1/2	답	답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 ***동 ***호 (중동, 태영아파트)	김*광				
82-1	율촌면 산수리	401	1451	401-1	1중 1/2	답	답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길 ***, ***동 ****호 (창동, 동아청솔아파트)	김*준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공사 편입 토지 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	편입(분할 후)		지목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번	면적 (㎡)			주소	성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159필지												
1	율촌면 가장리	1832	1818	1832-3	390	도로	도로	일부 무상귀속 대상 245㎡	국토교통부				
2	율촌면 가장리	385-3	142	385-3	142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	김*수				
3	율촌면 가장리	386-2	367	386-2	367	도로	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하사리 **	최*만				
4	율촌면 가장리	386-4	16	386-4	16	도로	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하사리 **	최*만				
5	율촌면 가장리	386-1	105	386-7	3	답	답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사배죽동길 **	최*림				
6	율촌면 가장리	526-2	102	526-5	41중 1/4	도로	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하사리 ***	최*수				
6-1	율촌면 가장리	526-2	102	526-5	41중 1/4	도로	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하사리 ***	최*학				
6-2	율촌면 가장리	526-2	102	526-5	41중 1/4	도로	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하사리 ***	최*호				
6-3	율촌면 가장리	526-2	102	526-5	41중 1/4	도로	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하사리 ***	최*호				
7	율촌면 가장리	525-2	294	525-5	227	도로	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하사리 ***	최*우				
8	율촌면 가장리	529-2	483	529-5	313	도로	도로		사정(미등기)	최*철		토지대장상 소유자	
9	율촌면 가장리	529-2	483	529-7	8	도로	도로		사정(미등기)	최*철		토지대장상 소유자	
10	율촌면 가장리	535-2	7	535-2	7	도로	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죽동리 ***	최*모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공사 편입 토지 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	편입(분할 후)		지목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번	면적 (㎡)			주소	성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1	율촌면 가장리	523-1	16	523-1	16	도로	도로		사정(미등기)	최*철		토지대장상 소유자	
12	율촌면 가장리	520-1	86	520-1	86	도로	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내리 ***	최*익				
13	율촌면 가장리	395-1	16	395-1	16	도로	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옥천동 ***	우*환				
14	율촌면 가장리	394-1	384	394-1	384	도로	도로	미협의	국토교통부				
15	율촌면 가장리	393-1	11	393-3	1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송정길 **	이*업				
16	율촌면 가장리	1819	2000	1819-1	114	구거	도로	일부 무상귀속 대상 104㎡	국토교통부				
17	율촌면 가장리	522-1	513	522-2	117	답	답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 ***호 (민락동, 동백맨션)	김*호				
18	율촌면 가장리	1832-2	1682	1832-4	612	도로	도로	일부 무상귀속 대상 401㎡	국토교통부				
19	율촌면 가장리	519-1	122	519-3	80	도로	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하사리 ***	최*삼				
20	율촌면 가장리	518-1	23	518-1	23	도로	도로		사정(미등기)	최*호		토지대장상 소유자	
21	율촌면 가장리	513-2	754	513-3	170중 66/754	답	답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낙조*길 ***, ***동 ****호 (다대동, 다대동롯데캐슬몰운대아파트)	안*연				
21-1	율촌면 가장리	513-2	754	513-3	170중 35/754	답	답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로 ***, ***동 ****호 (신호동, 부산신호사랑으로부영5차)	오*원 (오*순)				
21-2	율촌면 가장리	513-2	754	513-3	170중 66/754	답	답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번길 **, ****동 ****호(무계동, 석봉마을 대동아파트)	박*경				
21-3	율촌면 가장리	513-2	754	513-3	170중 33/754	답	답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 ***동 ****호 (금곡동, 동원역삼정그린코아아파트)	조*희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공사 편입 토지 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	편입(분할 후)		지목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번	면적 (㎡)			주소	성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1-4	율촌면 가장리	513-2	754	513-3	170중 66/754	답	답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번길 **, ***동 ****호(연산동, 연산자이아파트)	황*숙				
22	율촌면 가장리	548-2	301	548-2	301	도로	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생목동 **-*	손*심				
23	율촌면 가장리	573-1	588	573-1	588	도로	도로	미협의	국토교통부				
24	율촌면 가장리	549-2	56	549-7	10	도로	도로	미협의	국토교통부				
25	율촌면 가장리	570-2	717	570-6	578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동정 ****	이*헌				
26	율촌면 가장리	567-2	612	567-2	612	도로	도로		사정(미등기)	이*준	전라남도 순천시 청수리	토지대장상 소유자	
27	율촌면 가장리	584-1	10	584-1	10	도로	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대호정 **	김*규				
28	율촌면 가장리	584-2	10	584-2	10	도로	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대수정 **	김*규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지상권	
29	율촌면 가장리	1839	152	1839-1	5	도로	도로	미협의	국토교통부				
30	율촌면 가장리	1810-6	14363	1810-56	141	구거	도로	일부 무상귀속 대상 122㎡	농림축산식품부				
31	율촌면 가장리	1840	36	1840-1	2	도로	도로	미협의	기획재정부				
32	율촌면 가장리	1841	443	1841	138	도로	도로	일부 무상귀속 대상 120㎡	국토교통부				
33	율촌면 가장리	637-2	1	637-2	1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박*연				
34	율촌면 가장리	1810-13	159.8	1810-13	159.8	구거	임야	유상매입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공사 편입 토지 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	편입(분할 후)		지목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번	면적 (㎡)			주소	성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5	율촌면 가장리	1810-14	751	1810-63	201.7	구거	구거	일부 무상귀속 대상 124㎡	농림축산식품부				
36	율촌면 가장리	570-5	215	570-5	215중 116/215	답	답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로 ***, ***동 ****호 (신호동, 부산신호사랑으로부영5차)	오*원 (오*순)				
37	율촌면 가장리	1838	195	1838-1	37	도로	도로	미협의	국토교통부				
38	율촌면 가장리	624-2	301	624-2	301	도로	도로	미협의	국토교통부				
39	율촌면 가장리	625-1	46	625-1	46	도로	도로	유상매입 대상	기획재정부				
40	율촌면 가장리	636-2	347	636-2	347	도로	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하사리 **	주*립(주*입)				
41	율촌면 가장리	633-1	126.8	633-1	126.8	도로	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하사리 ***	최*호				
42	율촌면 가장리	634-2	328	634-2	328	도로	도로	미협의	국토교통부				
43	율촌면 가장리	669-1	89.5	669-1	89.5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유*년				
44	율촌면 가장리	651-2	229.3	651-2	229.3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박*복				
45	율촌면 가장리	668-2	1727.4	668-4	76.6중 24/628	전	전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손*석				
46	율촌면 가장리	668-1	88	668-1	88중 24/628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손*석				
46-1	율촌면 가장리	668-1	88	668-1	88중 604/628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박*근				
47	율촌면 가장리	667-1	39.3	667-1	39.3	도로	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하사리 ***	최*상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공사 편입 토지 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	편입(분할 후)		지목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번	면적 (㎡)			주소	성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8	율촌면 가장리	653-2	401.5	653-2	401.5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박*식				
49	율촌면 가장리	667-3	35.7	667-3	35.7	도로	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하사리 ***	최*상				
50	율촌면 가장리	1810-11	600	1810-61	27.3	구거	전	미협의	기획재정부				
51	율촌면 가장리	1810-12	303	1810-62	284.9	구거	도로	일부 무상귀속 대상 276㎡	농림축산식품부				
52	율촌면 가장리	664-2	536	664-2	536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김*영				
53	율촌면 가장리	664-3	629	664-7	267.7	하천	일부 하천 일부 전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김*영				
54	율촌면 가장리	722-2	말소	722-6	9.2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김*수				
55	율촌면 가장리	719-8	6.3	719-8	6.3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박*기				
56	율촌면 가장리	721-4	말소	721-22	19.7	대	대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박*기				
57	율촌면 가장리	728-1	40.6	728-1	40.6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정*길				
58	율촌면 가장리	732-2	325.9	732-2	325.9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김*영				
59	율촌면 가장리	733-2	296.6	733-2	296.6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유*호				
60	율촌면 가장리	2014-3	565.7	2014-9	59.2	도로	도로	미협의	농림축산식품부				
61	율촌면 가장리	734-2	456.6	734-2	456.6	도로	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옥천동 ***	박*연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공사 편입 토지 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	편입(분할 후)		지목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번	면적 (㎡)			주소	성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2	율촌면 가장리	1824-8	2408	1824-12	166.1	도로	도로	일부 무상귀속 대상 57㎡	국토교통부				
63	율촌면 가장리	1825-1	4086	1825-5	155.9	구거	도로	일부 무상귀속 대상 138㎡	국토교통부				
64	율촌면 가장리	791-2	156.2	791-2	156.2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유*년				
65	율촌면 가장리	1845	349.2	1845	349.2	도로	도로	일부 무상귀속 대상 332㎡	국토교통부				
66	율촌면 가장리	788-1	119.3	788-1	119.3중 1/5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손*오				
66-1	율촌면 가장리	788-1	119.3	788-1	119.3중 1/5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문*석				
66-2	율촌면 가장리	788-1	119.3	788-1	119.3중 1/5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손*백				
66-3	율촌면 가장리	788-1	119.3	788-1	119.3중 1/5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양*경				
66-4	율촌면 가장리	788-1	119.3	788-1	119.3중 1/5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양*교				
67	율촌면 가장리	789-2	84.4	789-2	84.4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지*종				
68	율촌면 가장리	825-2	401.8	825-2	401.8	도로	도로		사정(미등기)	김*근		토지대장상 소유자	
69	율촌면 가장리	869-1	12.1	869-1	12.1	도로	도로	미협의	국토교통부 (건설교통부)				
70	율촌면 가장리	836-4	말소	836-8	2.4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지*명				
71	율촌면 가장리	847-2	129.2	847-2	129.2	도로	도로	미협의	국토교통부 (건설교통부)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공사 편입 토지 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	편입(분할 후)		지목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번	면적 (㎡)			주소	성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2	율촌면 가장리	847-4	315.3	847-6	119.1	대	대	전라남도 순천시 비봉*길 **-*, ***호(조례동)	박*희				
73	율촌면 가장리	847-5	84.1	847-7	12.6	대	대	전라남도 순천시 비봉*길 **-*, ***호(조례동)	박*희				
74	율촌면 가장리	1810-8	5143	1810-57	32.9	구거	구거	일부 무상귀속 대상 27㎡	농림축산식품부				
75	율촌면 가장리	863-1	21.4	863-1	21.4	전	전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지*식				
76	율촌면 가장리	862-7	말소	862-27	1.2	도로	도로		미등기	지*인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토지대장상 소유자	
77	율촌면 가장리	861-3	29.4	861-3	29.4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지*찬				
78	율촌면 가장리	860-3	말소	860-7	43.8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최*규				
79	율촌면 가장리	719-2	951.5	719-2	951.5	도로	도로	미협의	국토교통부 (건설교통부)				
80	율촌면 가장리	721-9	말소	721-24	18.8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박*기				
81	율촌면 가장리	721-2	483	721-2	483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김*영				
82	율촌면 가장리	721-10	311.6	721-25	185.3중 1/2	대	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중산간동로 ****-*	최*윤	주*숙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 ***동 ****호(중흥에스-클래스5단지)	가압류	
										삼성카드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태평로2가)	가압류	
										기술보증기금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 **층(문현동)	가압류	
										재단법인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 *, *, *층(역삼동, 새롬빌딩)	가압류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공사 편입 토지 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	편입(분할 후)		지목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번	면적 (㎡)			주소	성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3	율촌면 가장리	728-5	말소	728-7	32	대	일부 대 일부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정*길				
84	율촌면 가장리	728-6	56.4	728-8	72.3	대	일부 대 일부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정*길				
85	율촌면 가장리	730-2	말소	730-4	35.7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박*기				
86	율촌면 가장리	731-2	말소	731-4	4.1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유*선				
87	율촌면 가장리	754-2	41.9	754-2	41.9	도로	도로	미협의	기획재정부				
88	율촌면 가장리	755-1	22.8	755-1	22.8	도로	도로		사정(미등기)	김*영		토지대장상 소유자	
89	율촌면 가장리	1842	말소	1842-1	57.6	도로	도로	일부 무상귀속 대상 15㎡	국토교통부				
90	율촌면 가장리	870-2	1390	870-4	300.2중 10/297	전	전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75길 **, ***동 ****호 (염창동, 강변현대홈타운아파트)	김*문				
91	율촌면 가장리	870-1	92.3	870-1	92.3	도로	도로	미협의	국토교통부 (건설교통부)				
92	율촌면 가장리	871-1	15.1	871-1	15.1중 1/31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박*수				
92-1	율촌면 가장리	871-1	15.1	871-1	15.1중 1/31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박*백				
92-2	율촌면 가장리	871-1	15.1	871-1	15.1중 1/31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유*환				
92-3	율촌면 가장리	871-1	15.1	871-1	15.1중 1/31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유*기				
92-4	율촌면 가장리	871-1	15.1	871-1	15.1중 1/31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박*식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공사 편입 토지 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	편입(분할 후)		지목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번	면적 (㎡)			주소	성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2-5	율촌면 가장리	871-1	15.1	871-1	15.1중 1/31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유*안				
92-6	율촌면 가장리	871-1	15.1	871-1	15.1중 1/31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유*열				
92-7	율촌면 가장리	871-1	15.1	871-1	15.1중 1/31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유*석				
92-8	율촌면 가장리	871-1	15.1	871-1	15.1중 1/31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박*기				
92-9	율촌면 가장리	871-1	15.1	871-1	15.1중 1/31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유*열				
92-10	율촌면 가장리	871-1	15.1	871-1	15.1중 1/31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유*수				
92-11	율촌면 가장리	871-1	15.1	871-1	15.1중 1/31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김*백				
92-12	율촌면 가장리	871-1	15.1	871-1	15.1중 1/31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문*환				
92-13	율촌면 가장리	871-1	15.1	871-1	15.1중 1/31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유*석				
92-14	율촌면 가장리	871-1	15.1	871-1	15.1중 1/31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김*석				
92-15	율촌면 가장리	871-1	15.1	871-1	15.1중 1/31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유*덕				
92-16	율촌면 가장리	871-1	15.1	871-1	15.1중 1/31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김*옥				
92-17	율촌면 가장리	871-1	15.1	871-1	15.1중 1/31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유*열				
92-18	율촌면 가장리	871-1	15.1	871-1	15.1중 1/31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유*수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공사 편입 토지 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	편입(분할 후)		지목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번	면적 (㎡)			주소	성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2-19	율촌면 가장리	871-1	15.1	871-1	15.1중 1/31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유*규				
92-20	율촌면 가장리	871-1	15.1	871-1	15.1중 1/31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유*선				
92-21	율촌면 가장리	871-1	15.1	871-1	15.1중 1/31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유*길				
92-22	율촌면 가장리	871-1	15.1	871-1	15.1중 1/31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유*석				
92-23	율촌면 가장리	871-1	15.1	871-1	15.1중 1/31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유*지				
92-24	율촌면 가장리	871-1	15.1	871-1	15.1중 1/31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유*암				
92-25	율촌면 가장리	871-1	15.1	871-1	15.1중 1/31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유*수				
92-26	율촌면 가장리	871-1	15.1	871-1	15.1중 1/31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유*량				
92-27	율촌면 가장리	871-1	15.1	871-1	15.1중 1/31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유*매				
92-28	율촌면 가장리	871-1	15.1	871-1	15.1중 1/31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유*석				
92-29	율촌면 가장리	871-1	15.1	871-1	15.1중 1/31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유*열				
92-30	율촌면 가장리	871-1	15.1	871-1	15.1중 1/31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유*조				
93	율촌면 가장리	826-2	311.2	826-2	311.2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유*열				
94	율촌면 가장리	869-10	4.2	869-10	4.2	도로	도로	미협의	기획재정부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공사 편입 토지 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	편입(분할 후)		지목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번	면적 (㎡)			주소	성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5	율촌면 가장리	869-2	165.8	869-2	165.8	도로	도로	미협의	국토교통부 (건설교통부)				
96	율촌면 가장리	868-4	말소	868-6	7.8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봉두*길 **-*	유*상				
97	율촌면 가장리	868-2	216.6	868-2	216.6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손*홍				
98	율촌면 가장리	867-1	155.3	867-1	155.3	도로	도로	미협의	국토교통부				
99	율촌면 가장리	865-2	621.4	865-6	106.5	전	전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봉두*길 **-*	유*상				
100	율촌면 가장리	865-3	말소	865-7	35.6	구거	구거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봉두*길 **-*	유*상				
101	율촌면 가장리	904-6	말소	904-27	29.1	구거	구거		미등기	류*호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토지대장상 소유자	
102	율촌면 가장리	904-21	1.9	904-21	1.9	도로	도로		사정(미등기)	류*호			
103	율촌면 가장리	904-12	말소	904-28	15.8	도로	도로		미등기	류*호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토지대장상 소유자	
104	율촌면 가장리	862-3	말소	862-26	285.3	도로	도로		미등기	지*인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토지대장상 소유자	
105	율촌면 가장리	904-1	말소	904-24	78.3	도로	도로		미등기	류*호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토지대장상 소유자	
106	율촌면 가장리	863-2	말소	863-5	347.1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지*인				
107	율촌면 가장리	862-4	168.8	862-4	168.8	도로	도로		미등기	지*인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108	율촌면 가장리	861-2	44.2	861-2	44.2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지*찬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공사 편입 토지 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	편입(분할 후)		지목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번	면적 (㎡)			주소	성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09	율촌면 가장리	906-7	6.1	906-7	6.1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지*인				
110	율촌면 가장리	906-3	말소	906-9	4.9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지*인				
111	율촌면 가장리	1410-2	48.1	1410-2	48.1	도로	도로	미협의	국토교통부				
112	율촌면 가장리	1384-1	154	1384-1	154중 7/42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서부로 ****	유*상				
112-1	율촌면 가장리	1384-1	154	1384-1	154중 7/42	도로	도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가길 **	유*상				
113	율촌면 가장리	1404-2	71.5	1404-2	71.5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이*례				
114	율촌면 가장리	1443-3	30	1443-3	30	도로	도로	미협의	기획재정부				
115	율촌면 가장리	1443-1	106	1443-1	106	도로	도로	미협의	국토교통부				
116	율촌면 가장리	1442-1	3	1442-1	3	도로	도로	미협의	국토교통부				
117	율촌면 가장리	1851-4	33	1851-4	33	도로	도로	미협의	국토교통부				
118	율촌면 가장리	906-1	97.9	906-1	97.9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지*인				
119	율촌면 가장리	1376-1	12.1	1376-1	12.1	도로	도로	미협의	국토교통부				
120	율촌면 가장리	1377-1	96.7	1377-1	96.7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박*순				
121	율촌면 가장리	1385-1	287	1385-1	287중 1/2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박*순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공사 편입 토지 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	편입(분할 후)		지목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번	면적 (㎡)			주소	성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21-1	율촌면 가장리	1385-1	287	1385-1	287중 1/2	도로	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지*병				
122	율촌면 가장리	1394-2	185	1394-3	59	하천	하천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	이*우				
123	율촌면 가장리	1810-4	23463	1810-66	388	구거	구거	미협의	농림축산식품부				
124	율촌면 가장리	1443-2	49	1443-2	49	전	전	유상매입 대상	기획재정부 (재정경제원)				
125	율촌면 가장리	1438	493	1438-1	22	답	대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난화길 **	이*기				
126	율촌면 가장리	1873-8	422	1873-19	72	답	답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중산안길 *	지*근				
127	율촌면 가장리	1874	426	1874-7	114	도로	답	유상매입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부)				
128	율촌면 가장리	1884-3	661	1884-10	15	답	답	전라남도 여수시 시전*길 *-*(신기동)	서*기	여수시		압류	
										여수서부 새마을금고	여수시 문수로 157-1	근저당권 지상권	
129	율촌면 가장리	1851-6	1539	1851-13	540	도로	도로	일부 무상귀속 대상 260㎡	국토교통부				
130	율촌면 가장리	1886	625	1886	625	구거	구거	미협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부)				
131	율촌면 가장리	1893	275	1893-1	43	구거	구거	일부 무상귀속 대상 35㎡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부)				
132	율촌면 가장리	1895	347	1895-1	288	구거	일부 구거 일부 도로	미협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부)				
133	율촌면 가장리	1577-2	334	1577-2	334중 1/8	답	답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하사리 ***	최*용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공사 편입 토지 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	편입(분할 후)		지목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번	면적 (㎡)			주소	성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33-1	율촌면 가장리	1577-2	334	1577-2	334중 1/8	답	답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하사리 ***	최*영				
133-2	율촌면 가장리	1577-2	334	1577-2	334중 1/8	답	답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하사리 ***	최*진				
133-3	율촌면 가장리	1577-2	334	1577-2	334중 1/8	답	답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하사리 ***	최*호				
133-4	율촌면 가장리	1577-2	334	1577-2	334중 1/8	답	답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하사리 ***	최*림				
133-5	율촌면 가장리	1577-2	334	1577-2	334중 1/8	답	답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하사리 ***	최*옥				
133-6	율촌면 가장리	1577-2	334	1577-2	334중 1/8	답	답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하사리 ***	최*수				
133-7	율촌면 가장리	1577-2	334	1577-2	334중 1/8	답	답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하사리 **	최*수				
134	율촌면 가장리	1897-10	1696	1897-18	88	답	답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	학교법인 학당학원				
135	율촌면 가장리	1897	833	1897-14	127	구거	구거	일부 무상귀속 대상 9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부)				
136	율촌면 가장리	1897-11	347	1897-19	9	답	답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길 **, ***호(신당동, 노블레스하우스)	조*영				
137	율촌면 가장리	1593	1434	1593-3	9중 358/1808	답	답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2길 33	한국농어촌공사				
138	율촌면 가장리	1580-1	442	1580-19	3중 808/1107	답	답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학천로 **(죽도동)	김*희				
138-1	율촌면 가장리	1580-1	442	1580-19	3중 299/1107	답	답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2길 33	한국농어촌공사				
139	율촌면 가장리	546-3	106	546-3	106	도로	도로	미협의	국토교통부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공사 편입 토지 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	편입(분할 후)		지목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번	면적 (㎡)			주소	성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40	율촌면 가장리	393-2	1	393-2	1	목장용지	목장용지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송정길 **	최*근				
141	율촌면 가장리	1810-65	42.9	1810-65	42.9	구거	구거	미협의	농림축산식품부				
142	율촌면 가장리	1810-7	627.8	1810-68	2.3	구거	구거	미협의	국토교통부				
143	율촌면 가장리	1810-59	249.3	1810-59	249.3	구거	구거	미협의	농림축산식품부				
144	율촌면 가장리	1848-4	819.4	1848-4	819.4	도로	도로	미협의	국토교통부				
145	율촌면 가장리	1851-15	155	1851-18	6	도로	도로	미협의	국토교통부				
146	율촌면 가장리	1897	371	1897-16	9	구거	구거	미협의	농림수산부				
147	율촌면 가장리	1897-9	1309	1897-17	5	답	답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해룡로 **-*	박*수				
148	율촌면 가장리	1575-2	87	1575-6	5	답	답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사배죽동길 **/전라남도 순천시 용당삼산로 **, ***동 ****호(용당동, 덕진 순천의 봄)	전주최씨*포공파종중(대표자 최*룡)				
149	율촌면 가장리	1578	570	1578-4	149	답	답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정로 **, ***동 ***호(행신동, 서정마을 중흥에스클래스타운하우스)	이*순				
150	율촌면 가장리	1594	1600	1594-2	48중 165/1600	답	답	부산광역시 중구 망양로***번길 **, *동 A***호(보수동1가, 보수아파트)	지*옥				
150-1	율촌면 가장리	1594	1600	1594-2	48중 165/1600	답	답	부산광역시 수영구 무학로**번길 **(광안동)	유*숙				
150-2	율촌면 가장리	1594	1600	1594-2	48중 443/1600	답	답	부산광역시 북구 의성로***번길 **, ***호(덕천동, 진흥맨션)	장*리				
150-3	율촌면 가장리	1594	1600	1594-2	48중 165/1600	답	답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리로 *, ***동 ***호(동삼동, 주공아파트)	강*서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공사 편입 토지 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	편입(분할 후)		지목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번	면적 (㎡)			주소	성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50-4	율촌면 가장리	1594	1600	1594-2	48중 331/1600	답	답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시장길 *, ****호(충무동1가, 헤리츠아파트3차)	신*옥				
150-5	율촌면 가장리	1594	1600	1594-2	48중 331/1600	답	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 ***동 ***호(좌동 해운대좌동롯데캐슬마스터1)	안*익				
151	율촌면 가장리	1593	1425	1593-4	46중 1450/1808	답	답	전라남도 순천시 봉화*길 ***, ***동 ****호(조례동, 대림아파트)	박*열				
151-1	율촌면 가장리	1593	1425	1593-4	46중 358/1808	답	답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2길 33	한국농어촌공사				
152	율촌면 가장리	1578-3	58	1578-5	50	답	답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정로 **, ***동 ***호(행신동, 서정마을 중흥에스클래스타운하우스)	이*순				
153	율촌면 가장리	1592	586	1592-5	74	답	답	전라남도 광양시 공영로 **, ***동 ****호(중동, 호반리젠시빌아파트)	심*자				
154	율촌면 가장리	1590-3	145	1590-7	9중 534/746	답	답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2길 33	한국농어촌공사				
154-1	율촌면 가장리	1590-3	145	1590-7	9중 212/746	답	답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기두*길 **	배*중				
155	율촌면 가장리	835-1	599.8	835-6	5.3	대	대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로 **번길 *(양림동)	유*진				
156	율촌면 가장리	836-1	1813.8	836-9	44.4	전	전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전라남도 순천시 생목길 *, ***동 ***호(생목동, 벽산첼시빌)	중산충주지씨*대공후종중(대표자 지*훈)				
157	율촌면 가장리	1576-2	206	1576-5	10	전	전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서부로 ****	장*순				
158	율촌면 가장리	1575-1	148	1575-5	24	답	답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서부로 ****	장*순				
159	율촌면 가장리	1832-2	1682	1832-7	13	도로	도로	미협의	국토교통부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공사 편입 물건 조서

연번	소재지	편입지번 (당초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보상비 산정액(원)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단가(원)	금액(원)	단가(원)	금액(원)	단가	금액	주소	성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12건																	
1	율촌면 산수리	143-1	간판		1	식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 ***호 (운암동, 운암대라수아파트)	손*열				
	소계																	
2	율촌면 산수리	300-10	분묘	유연단장	1	기							전라남도 여수시 여순로 ****, ***동 ***호 (율촌면, 동양엔파트)	위*량				
			상석세트		1	식												
			반월석		1	식												
			둘레석		1	식												
	소계																	
3	율촌면 산수리	297-6 (297-1)	분묘		1	기												
	소계																	
4	율촌면 가장리	522-2 (522-1)	관정	소형, 관정고(블록)	1	식												
	소계																	
5	율촌면 가장리	664-2	표지석		1	식								원가장 청년회				
	소계																	
6	율촌면 가장리	721-25 (721-10)	주택1	시멘트블록 패널	84중 1/2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중산간동로 ****-*	최*윤	삼성카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태평로2가)	가압류	
			가추(창고)	시멘트블록 패널 (5m * 3m)	15중 1/2	㎡									기술보증기금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10층(문현동)	가압류	
			주택2	시멘트블록 슬레이트 (11.5m * 5m)	57.5중 1/2	㎡									재단법인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51, 4, 5, 6층(역삼동, 새롬빌딩)	가압류	
	소계																	
			가옥 (주택)	벽돌구조 (시멘트벽돌)	76.54	㎡												
			황토방	황토구들조 간넬 (3m * 6.7m)	20.1	㎡												
			화장실 및 창고	벽돌조슬래브 (7.5m * 3m)	22.5	㎡												
			닭장	(4.6m * 6.5m) (3.1m * 1.7m)	35.17	㎡												
			담장	벽돌 (18m * 2m)	36	㎡												
			철제계단		10	단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공사 편입 물건 조서

연번	소재지	편입지번 (당초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보상비 산정액(원)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단가(원)	금액(원)	단가(원)	금액(원)	단가	금액	주소	성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	율촌면 가장리	847-6 (847-4) 847-7 (847-5)	차양	철파이프판넬 (1.9m * 10.2m)	19.38	㎡							전라남도 순천시 비봉*길 **-*, ***호	박*희				
			바닥포장	(1.9m * 10.2m) (16m * 5.5m)	107.38	㎡												
			대문	목재	1	식												
			수도계량기		1	식												
			전기계량기		1	식												
			정화조		2	식												
			우물		1	식												
			차양	렉산 (2m * 1.5m)	1	식												
			백일홍		9	주												
			사과나무		2	주												
			산수유		2	주												
			동백나무		2	주												
			종려나무		1	주												
			남천		1	군												
			감나무		3	주												
			철쭉		11	주												
			노나무		1	주												
			사철나무		1	주												
			조경석		1	식												
			태양광장비		1	식												
	소계																	
8	율촌면 가장리	862-29 (862-15)	주택	시멘트블록 슬레이트	78.29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서부로 ****	조*조 (조*익)				
	소계																	
			주택	벽돌구조	86.15	㎡												
			상가 (점포)	벽돌구조	43	㎡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공사 편입 물건 조서

연번	소재지	편입지번 (당초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보상비 산정액(원)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단가(원)	금액(원)	단가(원)	금액(원)	단가	금액	주소	성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	율촌면 가장리	860-8 (860-4)	아래채	블럭조/슬레이트	47.17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서부로 ****	채*심				
			창고	슬레이트	20.97	㎡												
			닭장		1	식												
			담장		5	m												
			대문		1	식												
			감나무		2	주												
	소계																	
10	율촌면 가장리	324-6 (324-3) 325-6	창고	조립식판넬 (6.3m*10m)	63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서부로 ****	김*순				
			창고	블럭 (6m*6m)	36	㎡												
			비닐하우스	(11m*5.5m)	60.5	㎡												
			담장	블록 (12m*1.8m)	21.6	㎡												
			정화조		1	식												
			동산이전비		1	식												
			오수통	철재	1	식												
			화단1	블록 (2m*0.8m)	1.6	㎡												
			화단1	블록 (8m*3m)	24	㎡												
			비파나무	R20, H5.0	1	주												
			홍가시나무	R20, H2.5	1	주												
			사과나무	R8~12, H2.0~3.0	3	주												
			살구나무	R30, H4.0	1	주												
			탱자울타리		1.5	㎡												
			측백나무	R30, H5.0	1	주												
			박태기나무	R5, H1.2	1	주												
			종려나무	R20, H6.0	1	주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공사 편입 물건 조서

연번	소재지	편입지번 (당초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보상비 산정액(원)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단가(원)	금액(원)	단가(원)	금액(원)	단가	금액	주소	성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엄나무	R10, H3.0	1	주												
			두릅나무		8	주												
			무화과	R20, H2.0	1	주												
			천리향	H0.3~0.6 W0.2~1.0	6	주												
			사철나무	R1, H0.3	5	주												
			철쭉	H0.8, W1.0	6	주												
			병꽃나무	H0.8, W1.0	1	주												
			동백나무	R5, H2.0	1	주												
			남천		1	군												
			광나무	R40, H3.0	1	주												
			능소화		3	주												
			소나무	R15, H3.0	1	주												
			방풍나물		18	m'												
	소계																	
11	율촌면 가장리	867-12	비닐하우스	(7.5m*62m)	1	식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봉두*길 **-*	유*상				
	소계																	
12	율촌면 가장리	400-8 (400-1)	비닐하우스	(8.5m*42m)	1	식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봉두*길 **-*	김*희				
	소계																	

의 견 서

사 업 명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확장공사	
신 청 인	성 명 (명 칭)	
	주 소	
사 업 시 행 자	성 명 (명 칭)	여수시장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대 상 토지 및 물건		
내 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열람에 따른 조서 내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여수시 공고 제2026-582호

여수시 재활용품 선별장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안)

2026년도 여수시 재활용품 선별장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여 수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신분	채용예정부서	채용예정인원	근무기간
기간제근로자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가게)	3명(트럭운전 가능자 2명이상) (예비합격자 3명)	2026. 4. 1. ~ 2026. 11. 30. (기간중 8개월, 혹서기 및 혹한기 제외, 사업착수 전 제외) (09:30 ~ 16:00 / 1일 6시간 30분 (휴게시간 30분 포함)

주요 업무	○ 자원순환가게 재활용품 선별 및 접수(시스템입력, 가입지원, 시스템 안내) ○ 이동식 자원순환가게 설치, 재활용품 운송, 재활용품 수집 ○ 재활용품 행사지원, 재활용품 업사이클링 제품 행사 운영, ○ 차량운행(트럭) 등 ○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 이용 재활용품 데이터 관리

※ 채용 후 65세 이상은 재계약 불가

2 급여수준

보수	기타
시급 11,340원,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한 금액이며 보수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과」「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에 따름

❍ 시간 외 근무 및 휴무일 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 시 대체휴무 제공 또는 근무수당을 지급함.

3 응시 자격 및 가산점 요건

응시 자격요건	관련분야 : 자원순환가게 등 재활용품 선별작업 및 재활용품 운송, 재활용 행사지원 등	
	자격	○ 공고일 기준 55세 이상(1971.2.13.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하 근로 능력자로서 우리 시 거주자이며, 공고시작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여수시로 되어있는 자 (고령자 친화직종)
	경력	○ 해당없음
	학위	○ 해당없음
우대요건		○ 자동차 운전면허(1종) (5점)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분야별 우대요건

□ 가산점 요건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서류, 면접 각각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등 가점은 최대점수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가점" 과 우대요건 가점은 개별 합산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서류, 면접 각각 적용)	
분야별 우대요건	우대요건 참조	

* 가점 항목별로 중복가점은 불가하며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4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2. 13.(금) ~ 2026. 2. 27.(금)

나. 접수기간 : 2026. 2. 23.(월) ~ 2026. 2. 27.(금) (근무시간 내)

다. 접 수 처 : 여수시 시청동1길 23, 3층 자원순환과(자원활용팀)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전자우편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전자우편은 접수기간 종료 전 반드시 061-659-3839로 전화해서 제출확인

※ 전자우편의 경우 접수기간 이내(2026.2.27.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접수메일 : ekrxj21@korea.kr)

5 응시제한

가.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출 또는 회피하여 공정한 채용시험을 방해하는 등 비정규직 채용 응시제한을 받은 자(해당 응시일을 기준으로 3년간 응시 제한)

6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여부 판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2. 27.(금) 이후,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2026. 3. 5.(목) 14:00 예정 * 일정 변동 시, 개별 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면접시험 평정표

평 가 항 목(5개항목)	점 수	비 고
계	50점	서류전형 합격자
가. 공공업무 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라.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 면접시험 시 평가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중" 이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중" 이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서류전형 심사점수와 면접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

※ 본 채용의 서류전형은 적격 여부만 판단하나, 최종 점수 합산시 서류전형 적격자의 심사 점수는 50점+가산점 적용함

※ 면접시험 점수는 면접위원별로 합산 후 면접위원 수로 나눈 뒤(만점 50점) 가산점을 합산

→ 총점수 : [서류전형 50점(적격시 일괄 50점) + 가산점] + [면접시험 50점(최대) + 가산점]

※ 동점 시 면접 평정항목의 「상」(면접위원 점수표별 갯수 합계, 상상·중상 동일) 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로 결정, 상 개수가 동일할 시 "공공업무 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 고점자로 결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3. 9.(월) 이후 예정 /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지

7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 양식을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 1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붙임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라.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 생년월일만 표시)
마. 경험 및 경력기술서 1부
바.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확인서 1부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관계 해당 사항이 있음에도 미제출 또는 회피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됨)
사. 자격증 사본(또는 자격증명서) 각 1부(원본 제시, 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확인된 것만 인정함.
아.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자.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결과서 1부(최종 합격자에 한함)
※ 양식은 우리 시 홈페이지 www.yeosu.go.kr 에서 내려 받아 작성 가능함

차.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응시자 스스로 기재된 사항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채용 선발을 위해 여수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있음에도 미제출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해당 채용 합격이 취소** 됩니다. **또한, 해당 응시일로부터 3년간 여수시 비정규직 채용 응시에 제한**됩니다.

라.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되 학위 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유효기간이 없는 증빙서류는 공고일 전 기준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여부 확정된 날의 14일 이후부터 구직자의 요구 시 30일 이내에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6개월 후 파기합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예비합격자)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결격사유 발생, 중도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 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소수점 이하는 1명)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습니다.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분야의 다음번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합니다.

사.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자원순환과 자원활용팀(☏ 061-659-3839)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 시 원 서

채용분야		접수번호	채용담당자 기재

1.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지원직무	
현 주 소	도로명주소 번호 앞까지만 기재(동호수 등 세부내역은 미기재)		
연 락 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가점항목	□ 취업지원대상자 □ 기타 *(해당자만 체크)*		

2. 교육사항(1)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		
교육 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학교교육 □직업훈련 □기타		

교육사항(2) **지원자격 요건상 학위 취득이 필수적인 경우*		
전공분야	학위 취득일	학위 종류
00학	*0000년 00월 00일*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3. 자격사항 **직무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기입*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4. 경력사항 **직무관련 경력사항만 기입*				
구분	소속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역
□경험 □경력				

직무관련 주요내용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응시원서 등 제반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뒷면>

1. 응시원서 및 제반서류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기재착오 또는 누락은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2. 인적사항은 서류전형을 위한 필수정보이며, 나머지 항목은 선택적으로 활용합니다.

3. '제반서류'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성요령 】

① **응시원서** : 접수번호를 제외하고 인적사항은 필수로 기재하되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하며 응시자 이름과 (인) 부분에 서명하여 제출
② 이력서 : 인적사항 및 해당사항 전부 입력
③ 자기소개서 : 본문 안 작성요령 확인
④ 직무수행계획서(해당분야) : 본문 안 작성요령 확인
⑤ 경험 및 경력기술서(해당분야) : 본문 안 작성요령 확인
⑥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동의 체크 및 본인 서명
⑦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확인서 : 친인척 기준을 확인한 후 반드시 기입

【 붙임서류 】

1.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 생년월일만 표시)
2. 경력증명서 각 1부(경력보유자, 경력별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3. 자격증 사본(또는 자격증명서) 각 1부(원본제시, 자격별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붙임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 응시원서에 기입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음

【붙임 2】

이 력 서

(1쪽)

<필수>

성 명	(한글)		
주 소 (현거주지)	(우편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 요 경력사항	회사명	담당 업무(직무내용)	근무기간(연, 월)
			년 월 ~ 년 월

자격증 및 특기사항	자격종목	자격증번호	취 득 일
			(년 월 취득)
			(년 월 취득)
			(년 월 취득)
	(기타실적, 능력 등)		

장애인 여부	장애종별	등급	장애인등록번호

취업대상자 및 저소득층 여부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번호작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자

※ 취업대상자 및 저소득층여부는 해당항목에 ‘○’로 표시 후 증빙자료 첨부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 각 항목에 대하여 600자 이내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칸을 별도로 늘려 활용 가능>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본 항목에 따라 기술하고 지원동기, 성격 및 가치관, 업무의 전문성, 앞으로의 다짐 등 자신의 생각 등이 잘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작성 분량은 2매 이내로 하고 학교명, 출신지, 예전 직장, 부모직업 등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특정 분야에서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 시키거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여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갑작스럽게 발생한 주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활용한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 소 개 서

3. 과거 업무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과 이견이 있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와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원자 본인이 지원한 업무에 대해 가장 적합한 인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와 근거를 제시하고 앞으로의 다짐에 대해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4】

경험 및 경력기술서

(4쪽)

○ 작성요령

- 이력서에 기재한 직무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술
-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 대리 작성, 허위 작성 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음

1) 소속 조직 / 본인이 맡은 주요 역할

2) 주요 활동 내용 및 성과(정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을 나누어 작성 기재)

3) 활동 성과를 높이기 위해 본인이 기울인 노력과 행동

4) 본인의 성과(업무 추진)으로 인해 조직에 기여한 내용 및 기여 정도

5) 지원분야 업무 수행 시, 본인의 강점과 기여할 수 있는 측면

【붙임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여수시는 자원순환가게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 · 경력 · 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에만 보유, 이용 후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 제한, 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붙임 6】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관계 확인서

○ 성　　명 :

○ 응시번호 :

○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현황

* 배우자, 본인의 4촌 이내 친족,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별첨 참조)

연번	친인척 성명	친인척 직급(생년월일)	본인과의 관계
1			
2			
3			
해당 없음			

상기 본인은 공정한 채용시험 응시를 위하여 시청 내 친인척현황 조사에 동의합니다.

본인이 작성한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발견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채용이 취소되어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으며 해당응시일로부터 3년간 여수시 비정규직 채용에 응시가 제한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확인하며 서약합니다.

2026.　.　.

작성자 :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 6-1】

작성 대상 친족 기준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0촌</th><th>1촌</th><th>2촌</th><th>3촌</th><th>4촌</th></tr>
<tr><td rowspan="2">본인</td><td>친가</td><td rowspan="5">부부</td><td>ㅇ부모
ㅇ자녀</td><td>ㅇ조부모
ㅇ형제 및 그 배우자</td><td>ㅇ백부,숙부, 고모 및 그 배우자
ㅇ형제의 자녀 (조카)</td><td>ㅇ백부,숙부, 고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td></tr>
<tr><td>외가</td><td></td><td>ㅇ외조부모</td><td>ㅇ외백부, 외숙부, 이모 및 그 배우자</td><td>ㅇ외백부, 외숙부, 이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td></tr>
<tr><td rowspan="2">배우자</td><td>친가</td><td>ㅇ부모</td><td>ㅇ조부모
ㅇ형제 및 그 배우자</td><td>ㅇ백부,숙부, 고모 및 그 배우자
ㅇ형제의 자녀 (조카)</td><td>ㅇ백부, 숙부, 고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td></tr>
<tr><td>외가</td><td></td><td>ㅇ외조부모</td><td>ㅇ외백부, 외숙부, 이모 및 그 배우자</td><td>ㅇ외백부, 외숙부, 이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td></tr>
</table>

【붙임 9】 – 최종합격자에 한함(필수)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자원순환가게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표준기준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여수시장 귀하

여수시 공고 제2026 -584호

2026년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숲가꾸기패트롤)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2차)

2026년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숲가꾸기패트롤)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일

여 수 시 장

1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2026. 2. 13.(금) ~ 2026. 2. 23.(월)

나. 접수기간: 2026. 2. 19.(목) ~ 2026. 2. 23.(월) 18:00까지(근무시간 내)

다. 접수방법: 방문 접수, 전자우편 접수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라. 접 수 처

- 방문접수 시: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49(신기동, 망마경기장) 산림과 산림조성팀
- 전자우편 접수 시: ji0718a@korea.kr

2 채용 및 근무조건

가. 채용직무

채용예정부서	채용분야	채용 예정인원	근무기간
산림과 (기간제근로자)	숲가꾸기패트롤	1명	2026. 3. 4. ~ 12. 31. ※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09:00 ~ 18:00 / 1일 8시간 월~금)

나. 근로자 보수

보수		기타
숲가꾸기 패트롤	일 90,560원/일	○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한 금액이며 보수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에 따름

3 근무내용(직무기술)

가. 근무내용

주요 업무	○ 주요 가시권 도로변 및 산림 내 덩굴류, 고사목 제거 등 산림정비 ○ 주택, 농경지 주변 등 생활권 산림 피해목 제거 등 산림 정비 ○ 산림사업과 관련된 각종 현장 민원처리 및 산림재해 예방·복구 활동 ○ 현장 활동 기록 유지 및 기타 사업기관이 지시한 제반 산림업무 등

필요 역량	○ (공통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시민지향 마인드 ○ (직무역량) 숲가꾸기 관리 기본지식 ○ (개인역량) 근면하고 성실한 업무 태도

나. 자격요건

자격	○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자 ○ 공고일 기준 관내 거주 및 주민등록을 필한 자 ※ 우선 선발 순위 ① 기계톱 등 임업장비 활용이 가능한 자 ② 위험목 제거 관련 자격증 취득자 ③ 관련 업무 경험자 ④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신청 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음 - 산림에서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중노동임을 고려하여 작업 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 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 다만, 야간대학생은 제외한다. -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 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4 세부일정 및 평가

가. 채용절차

채용공고	⇨	신청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실기	⇨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2. 13.(금) ~ 2. 23.(월)		2. 19.(목) ~ 2. 23.(월)		2. 24.(화)		2. 25.(수)		2. 26.(목)

나. 1차 서류심사

1) 내 용 : 자격요건 등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여부 및 평가표에 따른 서면심사. 단, 응시인원이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까지 합격자로 결정

2) 서류심사 기준(30%)

- 임업장비 활용 가능자(10점)
- 위험목 제거 관련 자격증 취득자(10점)
- 관련업무 경험자(5점)
-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5점)

다. 2차 면접심사 및 실기시험

1) 면접심사

가) 일 시: 2026. 2. 25.(수) 14:00 ~ 15:00

나) 장 소: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49(신기동, 망마경기장)

다) 면접시험 평정표(30%)

평 가 항 목(3개항목)	점 수	비 고
계	30점	
가. 공공업무 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	상상(10~9점), 중상(8~7점), 중(6~5점), 하중(4~3), 하(2~1점)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상상(10~9점), 중상(8~7점), 중(6~5점), 하중(4~3), 하(2~1점)	
다.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상상(10~9점), 중상(8~7점), 중(6~5점), 하중(4~3), 하(2~1점)	

2) 실기시험

가) 일　　시: 2026. 2. 25.(수) 15:00 ~ 16:00

나) 장　　소: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49(신기동, 망마경기장)

다) 평가기준 및 방법: 장비 시연(40%)

시연장비	평 가 사 항	점　　수	비 고
계		40점	
가. 예초기	장비를 활용한 작업 숙련도	상(20~15점), 중(14~5점), 하(4~0)	
나. 기계톱		상(20~15점), 중(14~5점), 하(4~0)	

라. 합격자 발표(예정)

1) 심사기준: 서류전형과 면접·실기전형을 합산하여 분야별 고득점자순으로 필요인원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

-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여 결원 시 차점자 순으로 충원
- 심사위원 2인 이상에게 부적격 판정 받을 시 불합격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동점 시 면접 평정항목의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로 결정

2) 발 표 일: 2026. 2. 26.(목)

3) 방　　법: 시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5 제 출 서 류

가. 참여 신청서 1부(붙임 양식을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

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라. 자격증명서 각 1부(원본 제시, 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확인된 것만 인정함.
- 컴퓨터 관련 자격증 포함 제출

마.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바. 기술교육 이수증 1부(원본 또는 사본 각 1부 제출, 해당자에 한함)

사. 운전가능(차량보유)을 입증하는 증명서

아.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결과서(최종 합격자에 한함)

- 증빙자료 미제출시 해당 경력(자격) 인정안함
- 양식은 우리 시 홈페이지 www.yeosu.go.kr 에서 내려 받아 작성 가능함

6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응시자 스스로 기재된 사항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되 학위 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유효기간이 없는 증빙서류는 공고일 전 기준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접수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여부 확정된 날의 14일 이후부터 구직자의 요구 시 30일 이내에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6개월 후 파기합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 본 공고 이 외의 사항은「2026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릅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산림과 산림조성팀(☏061-659-460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공공산림가꾸기 작업단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동의( ) 미동의( )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이력사항				
과거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참여사업명	①	②	
	참 여 기 간	20 . . . ~ 20 . . .	20 . . . ~ 20 . . .	
그밖의 경력				

자격증 취득 여부	*위험목 제거 관련 자격증 기재		
사용가능 장비	①예초기	②기계톱	*해당하는 곳에 체크
구직등록 여부	등록 ( ), 미등록 ( )		
공무원 가족여부	*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1 본 신청서는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공공산림가꾸기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여수시장 귀하

1. 응시원서 및 제반서류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기재착오 또는 누락은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2. 인적사항은 서류전형을 위한 필수정보이며, 나머지 항목은 선택적으로 활용합니다.

3. '제반서류'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성요령 】

① **참여신청서** : 접수번호를 제외하고 인적사항은 필수로 기재하되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하며 응시자 이름과 (인) 부분에 서명하여 제출

②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동의 체크 및 본인 서명

【 붙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필수, 생년월일 및 현주소만 나온 자료)
2. 경력증명서 각 1부(경력보유자, 경력별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3. 자격증 사본 각 1부(원본제시, 자격별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4. 기술교육 이수증 1부(원본 또는 사본 제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붙임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 응시원서에 기입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음

여수시 공고 제2026 - 585호

주삼동주민센터 신축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여수시에서 시행하는『주삼동주민센터 신축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토지 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2. 19.

여 수 시 장 (인)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여수 주삼동주민센터 신축공사

나. 사업위치: 여수시 주삼동 289-1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3,406.6㎡

라. 사업기간: 2023. 9. ~ 2028. 6.

마. 사업시행자: 여수시장

2. 보상대상: 붙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참조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6. 2. 19. ~ 2026. 3. 5. (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여수시 회계과(청사관리팀)

- 주소: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2층 회계과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여수시 누리집에 게재하고, 우리 시 회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보상계획

가.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 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보상금 지급
- 협의가 불성립의 경우: 수용재결 → 재결금 지급 및 공탁 → 소유권 이전

나. 보상시기: 2026. 4. ~ 2026. 8.

다. 보상방법: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후 보상금 계좌 입금(현금보상)

라. 보상액 산정방법

- 보상가격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2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추천감정평가 업체명:

토지 소재지	당초 지번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소유자 확 인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	비고
			주 소	성 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일 경우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5. 기 타

가.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규정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기타 보상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회계과(☎061-659-3228)로 문의바랍니다. 끝.

토지 조서

주삼동주민센터신축사업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현실 이용	전체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원지번	편입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전	전	1503.8	1503.8	1/4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1/4	박세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OO, 9OO동 20OO호				
								1/4	박은O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OO, 2OO동 8OO호				
								1/4	박재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27OO호				
2	여수시 주삼동	293-4	293-1	전	전	1064.1	1064.1	1	김순O	여수시 무선로OO, 1OO동 21OO호				

지 장 물 조 서

주삼동주민센터신축사업

연번	소 재 지	지 번		물 건 명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 고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1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비닐하우스	25×8	200.0	㎡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
2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창고	경량철골 1.2x1.5	1.8	㎡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
3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동산이전비	물통 호스 로라기 냉장	1.0	식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
4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관정	소형 펌프포함	1.0	식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
5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농사용전기	-	1.0	식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
6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무화과	H0.5	60.0	주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
7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소나무1	H0.5-1	20.0	주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
8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소나무2	H3 R20	4.0	주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
9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소나무3	H1-1.5	10.0	주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
10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소나무4	묘목	30.0	주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
11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사철나무	묘목	260.0	주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
12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홍가시	H0.5-1	15.0	주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
13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무궁화	H1-1.2	2.0	주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
14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석류나무	H2 R15	1.0	주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
15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철쭉	H0.5	4.0	주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
16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감나무1	H2-2.5	12.0	주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
17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배롱나무	H1.5	1.0	주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
18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황금사철	묘목	85.0	주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
19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단풍	묘목	4.0	주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
20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측백1	H0.5	3.0	주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
21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무화과2	묘목	57.0	주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
22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무화과3	비닐하우스 내부	30.0	주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
23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오디나무	H2	1.0	주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
24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비파나무1	H1.2	2.0	주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
25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비파나무2	H0.5	1.0	주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
26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블루에로우	묘목	7.0	주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
27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측백2	묘목	13.0	주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
28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감나무2	H1	1.0	주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
29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포도나무	H0.5	5.0	주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
30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홍가시	H1내외	12.0	주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
31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꾸지뽕	H0.5	3.0	주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
32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영산홍	H 0.5	130.0	주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
33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철쭉	H0.5	55.0	주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
34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동백	묘목	82.0	주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
35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편백나무	H1	3.0	주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
36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소나무	H6 R30-40	10.0	주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
37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체리나무	H1.5-2 R5-10	2.0	주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
38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대추나무1	H1.5	1.0	주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
39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대추나무2	묘목	2.0	주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
40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팽나무	H3 R5-10	5.0	주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
41	여수시 주삼동	293-1	293-1	땅두릅	1*6	6.0	㎡	박정O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OOO, 10OO동 13OO호	-
42	여수시 주삼동	293-4	293-4	농막	2×2 강파이프조	4.0	주	김순O	여수시 무선로OO, 1OO동 21OO호	-
43	여수시 주삼동	293-4	293-4	관정	소형	1.0	식	김순O	여수시 무선로OO, 1OO동 21OO호	-
44	여수시 주삼동	293-4	293-4	농사용전기	-	1.0	식	김순O	여수시 무선로OO, 1OO동 21OO호	-
45	여수시 주삼동	293-4	293-4	동산이전비	물통 로라기 집기일체	1.0	식	김순O	여수시 무선로OO, 1OO동 21OO호	-
46	여수시 주삼동	293-4	293-4	감나무	H4 R15-20	19.0	주	김순O	여수시 무선로OO, 1OO동 21OO호	-

동 의 서

① 사 업 명	주삼동주민센터 신축공사			
② 대상위치	전남 여수시 주삼동 293-1번지			
③ 동 의 인 (토지소유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010 - -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010 - -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010 - -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010 - -		
④ 동의 내용	○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293-1번지 토지 소유자(____, ____, ____, ____)는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으며, ○ 토지보상을 위하여 여수시에서 2026년 3월 중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동의하며, ○ 감정평가업자 미추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에 위임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감정평가업자 추천 유무 : 추천 / 미추천

추천감정평가 업체명 :

추천감정평가 업체 주소 :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일 경우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장 귀하

이 의 신 청 서

① 사 업 명	주삼동주민센터 신축공사			
② 사 업 위 치	전남 여수시 주삼동 293-1번지			
③ 사 업 시 행 자	여수시장(여수시청 회계과)			
④ 이 의 신 청 제 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⑤ 이의신청 내용	이의내용 (누락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	.		
	기타 건의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보상계획 열람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장 귀하

동 의 서

① 사 업 명	주삼동주민센터 신축공사			
② 대상위치	전남 여수시 주삼동 293-4번지			
③ 동 의 인 (토지소유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010 - -		
④ 동의 내용	○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293-4번지 토지 소유자(_____)는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으며, ○ 토지보상을 위하여 여수시에서 2026년 3월 중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동의하며, ○ 감정평가업자 미추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에 위임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감정평가업자 추천 유무 : 추천 / 미추천

추천감정평가 업체명 :

추천감정평가 업체 주소 :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일 경우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장 귀하

이 의 신 청 서

① 사 업 명	주삼동주민센터 신축공사			
② 사 업 위 치	전남 여수시 주삼동 293-4번지			
③ 사 업 시 행 자	여수시장(여수시청 회계과)			
④ 이 의 신 청 제 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⑤ 이의신청 내용	이의내용 (누락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	.		
	기타 건의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보상계획 열람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장 귀하

여수시 고시 제2026-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2. 13.

여 수 시 장 (인)

1. 도로명주소(부여·변경)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부여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민원출장소 주소정보팀(☎061-659-3355 ~ 335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3.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업무구분	종전주소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폐지)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45-3, 45-2	소호1길 50	20260213	건축물 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손죽리 산1246	전라남도 여수시 손죽새터길 18-4	20260213	건축물 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 45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3길 10-3	20260213	건축물 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개도리 337	전라남도 여수시 신흥길 38	20260213	건축물 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을 고려	